

북한인권백서 1997

인쇄/1997년 5월 13일

발행/1997년 5월 16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북한인권정보센터

등록/제2-2361호(97.4.23)

(100-392)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대표)234-9113 (직통)232-9252 팩시밀리 235-5270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232-5614

ISBN 89-87509-00-1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민족통일연구원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연구·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人權情報센터

김 병 로(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송 정 호(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序 文

참다운 인권 보장의 실현을 위한 인류의 노력은 오늘날 세계사 흐름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이고,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공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의미에서 기본권 또는 기본적 인권이라고도 한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즘과 파시즘이 보여준 인간 박해는 인류에게 인권존중의 소중한 교훈을 남겼고, 세계평화를 위해 탄생한 국제연합(UN)은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왔다.

유엔에서 결의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대적 인권사상을 집약하고 있다. 이 선언에서 천명된 기본적 인권의 내용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66년 12월 제21차 유엔총회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이 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B규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등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1976년에 발효되었다.

주지하다시피 「A규약」과 「B규약」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대립이 첨예하던 냉전시기에 추진됨으로써 불가피하게

두 개의 규약으로 체결되었다. 자본주의국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B규약」)의 우선을 중시한 반면, 사회주의국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A규약」)의 우선적 실현을 중시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독립된 인권규약은 교차승인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제정한 이 국제인권규약은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법규로서 인권존중의 국제화시대를 열어 놓았으며, 특히 소련·동구권 붕괴 이후 이 규약이 다룬 인권보호의 내용은 국제관계에서 점차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권의 보호·증진을 통한 국제질서 및 평화의 유지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헌법도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게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에서도 인권을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인의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통일된 조국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존중 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제도상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제적인 인권운동을 외면하고 자국민을 탄압하는 사례들이 국제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그런 국가들 중 '인권의 사각지대', '인권의 동토'의 대표격으로 거명되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를 비롯한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미명하에 그들 사회를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이 행복한 생활을 고루 누리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인권상황 개선과 민주화가 선행하지 않는 한 민족공동체 형성은 달성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해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민주화가 전제된 평화통일만이 민족의 번영 발전을 이룩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당원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조사·수집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연례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하게 되는 금번 『'97 북한인권백서』에서는 「국제인권규약」이 추구하고 있는 인권보호의 기준에 따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분야로 구분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주요 인권사안을 정리·분석하였다.

본 백서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존엄성과 권리를 향유하는 평화통일의 성취가 우리 민족의 절실한 과제라는 인식하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많은 귀순자 인터뷰를 토대로,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며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 장애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본 백서가 남북한 통일문제를 연구

하는 사계의 전문학자들과 통일정책 입안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7. 5

民族統一研究院

院長：丁世鉉

목 차

| | |
|--------------------------------|-----|
| I. 개 관 | 1 |
|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인권개념 | 1 |
| 2. 1996년도 북한인권상황 개요 | 7 |
|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 18 |
| 1. 생명권 | 18 |
| 2. 평등권 | 39 |
| 3. 자유권 | 57 |
| 4. 참정권 | 86 |
|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 90 |
| 1. 생존권 | 90 |
| 2. 사회보장권 | 98 |
| 3. 환경권 | 102 |
| 4. 소유권 | 110 |
| 5. 근로권·휴식권 | 116 |
| 6. 직업선택의 자유 | 120 |
| 7. 교육을 받을 권리 | 122 |

| | |
|--------------------------|-----|
| IV.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실태 | 128 |
|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 128 |
| 2. 남북억류자 실태 | 148 |
| 3.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 152 |
| 4.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 169 |
| | |
| <부록> 남북억류자 명단 | 185 |

I. 개 관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인권개념

북한의 인권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통치이념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당독재체제'이자 '수령의 유일적 지배체제'로서 수령과 당의 영도가 강조되는 당-국가체제이며, 통치이념은 주체사상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1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체사상과 노동당 우위의 정치체제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체제가 수령에 의한 유일지배체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의 주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르주아를 제외한 근로인민대중만을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 "수령의 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근로인민대중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수령론을 그 기본 핵심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수령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르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적 역할’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중심인 수령이, 중추의 기능은 당이 담당하게 된다. 즉 북한은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하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하게 되고 영생의 자주적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개별적인 사람들의 생명중심에 뇌수가 있듯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그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모체는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이며, 인간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성원으로서 수령과 혈연적으로 연결된다. 개인과 집단을 생명유기체에 비유하는 이론은 세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세포들, 특히 두뇌와의 연결 속에서만 생명을 유지하듯이, 사람도 뇌수인 수령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바꾸어 말해서 당과 수령의 지도하에 조직사상적으로 통일 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인민대중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여 그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의 지시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따를 때에만 사회정치적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수령인 김일성·김정일에 대해 무조건 충성하는 것만이 혁명적 수령관을 뚜렷히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이론화하고 있다.

수령론에 기초하여 수령에 대한 개인들의 생활수칙을 성문

화한 것이 바로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다. 「10대원칙」은 강요된 사회규범으로 법이나 당 정책이 규율하지 못하는 부분의 주민생활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이 원칙에 의하면, 지도자와 일반인민은 수령과 전사의 관계로 전사가 수령의 명령을 무조건 수행하듯이 인민대중도 수령의 지시를 무조건 관철해야 하고, 수령을 위해 생명조차도 초개와 같이 버려야 한다. 따라서 수령을 비방하는 행위는 수령에 대한 모독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가장 극악한 정치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결국 북한에서의 인권의 범위와 실현 정도는 당과 수령의 이익에 따라 측정되며, 당과 수령의 지도적 의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개념과 인권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강한 정치성을 띠고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규약」이 헌법의 상위규범임을 명시하고 있는 독특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헌법에 우선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노동당의 결정과 지시는 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은 모든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궁극적인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개념은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강한 정치성을 띠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개인의 천부적이며 절대적인 권리보다는 집단이익을 우선시하는 불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은 헌법 제63조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82조에서는 “집단주의는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권보장의 대전제로서 집단주의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은 집단주의원칙을 벗어나 행사될 수 없으며, 집단이익의 옹호를 위해 얼마든지 침해될 수 있다. 예컨대 계급적으로 인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민족반역자나 반혁명분자와 같이 북한체제에 위해가 되는 ‘반동분자’들의 인권은 인정·보장되지 않는다.

셋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이라는 개념 대신에 ‘국민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개념으로서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의무를 다하는 인간에게만 인권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해서 집단의 구성원은 소속집단 또는 그 집단의 대표인 수령(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만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같이 북한에서는 ‘인민의 권리는 곧 의무’라는 논리에 의해 인권이 의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고도의 자각성에 기초하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야 한다. 따라서 당 및 정권기관의 통제와 사적 생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법화된 모든 법의 기본권은 권리보다는 의무를 증시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넷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북한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개념으로서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에 게재하여 ‘우리식 인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님을 스스로 밝혔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반혁명분자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자들은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을 배반한 반역자, 매국노들이며 인권을 유린한 인간쓰레기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인권이란 말은 당치 않다. 사회주의 사회는 결코 반혁명분자들에게까지 선의를 베푸는 초계급적인 사회가 아니며 사회주의 사회에는 이런 자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우리는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는 것처럼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니다.……인민대중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수의 계급적 원썩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이다.(『로동신문』, 1995.6.24)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인권’이란 “자기 당과 영도자를 충성으로 받들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

되는 불평등한 인권개념이다. 북한은 『정치용어사전』에서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며,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계급적 원수’ 또는 ‘적대분자’로 규정하여 철저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유와 권리는 원천적으로 박탈되고 이들의 인권은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내세워 집단주의원칙과 조직위주의 인권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1996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북한대표는 “사회와 집단을 떠난 개인이 있을 수 없듯이 집단의 인권을 떠난 개인의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내세워 개인이 집단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하며, 개인이 ‘계급적’ 집단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시민적 자유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권이 보편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인권의 내용이다. 북한은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해서 선거권 이외에는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권리와 자유의 실질적 보장’, ‘물질적 행복추구’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에 대한

요구를 주권침해 내지는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3세계가 주장하는 '개발권(the right to development)'과 정치문화의 상대주의 논리를 인권개념에 적용하여 인권문제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시도하고 있다. 즉 북한은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경제발전없이는 인권보장이 어렵다는 개발권 논리에 편승하고 있으며, 인권문제는 국가주권사항으로서 "매개 나라와 인민이 선택한 정치·경제제도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나라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치문화의 상대주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2. 1996년도 북한인권상황 개요

1996년 북한에서는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내에서의 인권 유린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분정책에 의한 차별, 거주이전의 제한, 언론·집회·출판·결사에 대한 통제, 참정권의 제한 등이 지속됨으로써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억압되었다. 또한 1995년에 이은 1996년의 흉수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더욱 악화되는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개선되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탈북주민의 증가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내 탈북주민들의 신변안전문제가 한층 심각해졌으며, 탈북주민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고조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나 월경 및 망명을 시

도하는 행위를 형법에 '반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왔다. 특히 가혹한 형벌중 하나인 공개처형은 생명권을 위협하는 인권유린의 극악한 방법으로서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신랄한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탈북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공개처형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1996년에도 계속되었다.

불법구금과 고문 역시 계속되었다. 「관리소」에 수용된 정치범들은 물론 일반 「교화소」의 경제사범들도 실형이 확정되기 전인 예심기간 동안 갖은 고문 등을 당하고 있으며, 예비·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받고 방조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고 있다.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위부 예심원이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관여없이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권유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1987년 형법개정을 통해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전반적으로 낮추었으며, 1992년과 1993년에는 각각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등 인권과 관련한 제도적 변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재판기관은 국가기관 체계상 여전히 최고인민회의,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등 국가기관의 사업지도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사법권의 독립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변호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부터의 변호활동의 독립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는 당과 국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주민 정치사업을 주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 의한 개인의 인권보호는 전혀 기

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북한은 이른바 '10계명'으로 불리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순교행위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초상화모시기' 사업의 하나로 화재발생과 같은 재난시에도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고 강요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때문에 성분차별 등 평등권의 침해는 구조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특히 '반혁명분자'로 분류된 복잡군중들에 대해서는 연좌제를 실시하여 그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1993년부터 김정일은 성분차별의 완화를 골간으로 하는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전개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책이 주민들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초급당비서, 부비서, 세포비서 등이 분기별로 성분심사를 실시하여 일반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이 격리 수용되고, 가정과 직장에서 성차별이 계속 진행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권의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사상·종교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 및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는 엄격히 제한되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여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물론 식량난의 악화로

여행증 대신 「식량배급카드」를 소지하고 불법적으로 이동하는 현상 등은 1995년도에 이어 1996년도에도 지속되었으나, 합법적인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불신자 및 신설공업지대나 탄광지대의 주민들을 강제로 집단이주시키는 조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언론·출판물은 사상교양의 전달과 대중선동의 수단으로만 인정되고 있고, 모든 출판물은 노동당에 의해 검열·통제되고 있다. 신문의 제1면에는 항시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만이 게재되며,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기본권의 침해 등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는 게재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결사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집단적 소요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 지고 있다. 당의 외곽조직으로서 대중의 사상교양 선도를 위해 정부가 조직한 각종 사회단체 이외에는 사적 조직은 철저히 금지되며, 동창회나 친목회와 같은 비정치적 모임조차도 금지되고 있다.

북한은 개정헌법에 신앙과 종교의식 거행 등의 자유를 규정하고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장충성당 등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누구든지 종교를 빙자하여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종교활동을 민족반역행위 혹은 반국가행위로 해석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설립된 종교시설에서도 특정시기에 형식적인 종교의식만이 거행될 뿐이다.

선거과정에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투표방식이 반대일 경우에만 투표장에 비치된 펜으로 반대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반대의사의 노출과 처벌의 두려움으로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선거의 결과는 북한당국이 자랑하듯이 100% 투표에 100% 찬성으로 나타난다.

북한은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이 의회선거에 복수후보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 정권을 '반동'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주권기관 선거에 경쟁선거와 같은 방법을 도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권 보장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면서 정부에 의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권의 보장으로 일반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화를 억제하고 사회주의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

「유엔인도국(DHA)」의 자료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기구(WFP)」의 평가에 의하면, 1996년의 흉수피해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은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였다. 정부는 1996년의 전반적인 기후상태와 미국측의 자료, 북한을 다녀온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보고서와 기타 방북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996년 북한의 총 곡물생산량을 370만톤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생산량인 345만톤

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평년작인 410만톤에 비해 40만톤이 감소한 것이며, 북한의 정상적인 연간 총 곡물소요량인 약 670만톤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이같은 경제적 위기로 인해 하루 평균 600g이던 배급량은 1996년도에 들어 300g으로 낮추어졌으며, 추수기 직전인 8월~9월경에는 일부지역에서 200g~250g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대부분의 생필품도 1996년도에는 배당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의 생존권은 크게 악화되었다.

더욱이 탈북주민들에 의하면, 의약품 부족, 치료시설의 낙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헌법상 무상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부족으로 외부로부터의 지원 없이는 치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형편에 놓여 있다.

북한에서 노동은 집단주의원칙에 의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전주민의 의무로 되어 있다. 16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살아 있는 동안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으며, “8시간 일하고, 8시간 학습하고, 8시간 휴식한다”는 원칙하에 기본일과 시간 이외에도 추가 노력동원과 각종 학습활동에 시달려야 한다.

직장배치는 중앙계획경제에 의해 집행되고 대개 ‘무리(집단)배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과 적성은 무시된다. 생활필수품조차 정부와 당이 통제하고 있으며, 여타 상품도 구매권이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의 소유권은 철저한 제약을 받고 있다. 교육내용은 김일성·김정일

의 이상화와 이념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며, ‘일하면서 배우자’라는 구호 아래 인민학교 어린이조차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실태 가운데 가장 신랄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정치범수용소이다. 북한이 『로동신문』을 통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는 자유를 박탈하고 제재를 가한다고 천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1996년에도 정치범에 대한 비인간적인 탄압은 계속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 농장관리국의 관할 아래 북한 전역에 「00호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는 반국가사범 또는 민족반역자로 분류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흔히 「통제구역」 혹은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로는 현재 평남 개천의 「14호 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 함북 화성의 「16호 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 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 등 10여 개가 있으며, 이곳에는 약 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송호리수용소」(1991. 1 폐쇄)의 경우처럼 위치나 비밀 탄로를 이유로 수용소가 계속 이동 내지는 통폐합되고 있어 정확한 수용소와 정치범의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들은 체포와 심문과정은 물론 수용기간 동안 고문과 일상적인 구타, 공개처형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권탄압을 당하고 있다.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척까지도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

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했던 북한이탈 주민에 의하면, 정치범들은 외곽 철책선과 철조망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용소에서 탈출하다 체포되면 공개총살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지고 있다. 따라서 수감자들은 외부세계와 철저히 차단된 채로 보위부원이나 경비대원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혹독한 취급을 받으면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휴전 이후 북한에 의해 강제 납치된 442명의 납북억류자들과 일본에서 복송된 교포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도 조직적인 탄압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당국은 체제선전을 위해 납북억류자들에게 강제로 '의거입북'을 자백 받고 있으며, 체제유지를 위해 상당수의 복송교포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탈북주민들의 인권상황 또한 크게 악화되어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약 1,500명의 탈북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탈북주민들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민족반역자'로 분류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 예컨대 1996년 5월 말에는 러시아 연해주지방에서 러시아의 지방정부에 의해 북한당국에 강제송환되었던 북한인 1명이 송환현장에서 즉결 처형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996년 9월 러시아내 탈북주민들의 인권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탈북주민들의 이같은 인권유린실태를 크게 우려하였다.

중국내 탈북주민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1960년대 초반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

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근거하여 탈북주민들을 강제송환시키고 있으며, 1996년 10월에도 중국과 북한은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주민들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특무나 조교(조선족 교포)에 의해서도 신변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홍콩이나 베트남과 같은 제3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이 “제국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반동적, 반인민적 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꾀변이며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유민주세계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를 사회주의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평화적 이행전략’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문제가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대외 인권외교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서방세계 및 한국정부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2년 평양에 「조선인권연구협회」를 설립하고, 이 기구를 통해 대외적인 인권공세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부재를 거듭 천명하는 한편 자본주의국가들의 인권압력 의도를 비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탈냉전시대에 들어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고립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비판여론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북한은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1996.3.18~4.26)에 이철 주제네바대사와 김성철 외교부 국제

기구과장을 비롯한 5명을 북한정부 대표단으로 파견하였으며, 「조선인권연구협회」 소장 김형일을 비롯한 김충진, 오송덕 등 3명을 「국제민주변호사회(IADL)」의 대표자격으로 참가시켰다. 또한 박성욱, 김호정, 진전용 등 3명을 「국제여성법조인연맹(IFWLC)」의 대표자격으로 각각 참석시켜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함과 함께 비정부기구들(NGOs)의 대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권을 행사하는 등 활발한 인권의교를 벌였다.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이태리와 여러 비정부기구가 북한의 정치적, 종교적 인권침해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EU 대표로 발언한 이태리는 북한을 포함한 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산가족문제 및 양심수 구금 등 북한내 다양한 인권침해 현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보고관 Hussain)은 보고서의 통해 북한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가까운 장래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함으로써 북한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간접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만을 반복하였다.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1996년 후반기에 들어 북한의 인권문제는 1996년 9월에 발생한 북한의 대남 잠수함 침투사건과 「4자회담」 논의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려나는 경향을 보였다. 1996년 유엔총회

에서는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해명 요구 등을 이유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거론이 자제되었다.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이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북한을 자극할 소지가 있는 요소는 가급적 피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1. 생명권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모든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람은 마땅히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초국가적 자연권으로서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은 1987년 제정된 신형법에서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고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침해하는 반국가범죄자들과 일반범죄자들에게 사회주의국가의 폭력적인 진압 및 제재수단으로서 형벌을 가한다고 설명한다. 신형법에는 사형, 노동교화형, 재산몰수형, 선거권박탈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1987년 신형법이 제정되기 이전 구형법에 근거하여 50여 종류에 달하는 광범위한 범죄행위에 사형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사상범으로 숙청되고 처형되었다. 특히 정치적 억압이 심했던 1956년 소위 「8월 종파사건」 이후와 1967~72년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당분자 또는 반혁명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다.

1987년 신형법은 최소한 세 종류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형에 해당되는 반국가범죄로는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등이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은 여전히 애매모호하고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 전복 음모 및 폭동을 부추긴 자, 주모자, 주동분자: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제44조)
2.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해 테러행위를 감행한 자: 사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제45조)
3.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자: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사형(제47조)
4. 민족해방운동과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하거나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 사형 또는 정상이 가벼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제52조)

북한은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정치범과 양심수들은 단순히 이념적·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처형당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관리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사형판결과 집행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탈북주민 처벌과

관련이 있는 북한형법 제47조가 1995년 개정되었다고 「국제 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통보하고도 개정된 조항의 정확한 규정에 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공개처형

공개처형은 시기에 따라 빈번하게 행해지며, 그 대상에는 정치범·홍악범뿐만 아니라 경제사범 등도 포함된다.

1993년 10월 AI는 북한관련 특별보고서에서 북한당국에 의한 공개처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사형은 북한에서 정치범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개적인 사형선고를 목격했던 사람들과 전에 수감되었던 사람들, 방북자들은 사형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경제범에 대한 사형이 증가하고 있고, 처형자도 매년 수십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형집행은 총살이나 교수형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사형판결을 받은 죄수는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노동자·학생들이 집결한 대중모임앞에 끌려나와……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97년 1월 AI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970년 이후 1992년까지 최소한 23명을 공개처형하였다. 대부분의 증언자들이 최소한 1건 이상의 공개처형을 목격한 점으로 보아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원산, 청진, 함흥,

신의주, 평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공개처형이 집행된 점으로 보아 전국적으로 공개처형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처형은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참혹하게 실시된다. 처형 방법으로는 보통 총살형이나 교수형이 선택되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시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혹은 대상자가 복잡계층에 속해 있다고 해서, 또는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다고 해서 임의로 공개처형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시범적으로 시행된 공개처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배우로 유명했던 우인희에 대한 공개처형 사건이다. 북한의 영화감독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던 미모의 영화배우 우인희는 한 재일교포와의 치정관계 때문에 1981년 공개처형되었다. 신상옥·최은희의 증언에 따르면, 우인희에 대한 공개처형 죄목은 '부화방탕죄'였으며, 전체 영화인이 소집된 가운데 공개총살이 집행되었다. 그후 그녀가 출연한 모든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었다.

AI의 보고서(1993.10)에 따르면, 1983년 '김지수'(당시 37세)와 다른 두 명의 광부들이 함경남도 검덕광산에서 공개처형되었다. 이들은 1982년 11월에 발생하였던 강제수용된 광부들의 반란에 참여한 죄로 기소되었으며, 기소 내용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2년간의 일방적인 수용기간 연장에 대한 항의였다.

귀순자 백영길(1994.3 입국)의 증언에 의하면, 1989년 9월 평남 안주 청천다리에서 협동농장원이었던 '고정갑'이 강냉이

60kg을 절취한 죄로 공개처형되었다. 또한 귀순자 여금주(1994.2 입국)에 의하면, 1991년 4월초 북청사범대 학생 4명이 북청사범대 뒷산에서 대학생과 주민 등 2,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총살되었다. 이 학생들은 1990년 8월 북청군 쌍립리 소재 옥수수 농장에서 옥수수 두 배낭(약 10kg)을 절취하는 중 경비원 1명을 전지가위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밖에도 북한에 체류했던 한 외국인 학생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1992년 11월 함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처형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처형집행은 사전에 함흥거리에 붙은 공고문을 통해 알려졌는데, 공고문에 나타난 죄목은 '폭력파 사상범'이었다. 이후 공개처형 대상은 '주순남'(당시 30세, 남자)으로 밝혀졌으며, 공개처형 공고문은 1994년 8월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국내신문에 공개되었다.

한편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995년말부터 1996년초까지 북한에서 집중적인 공개처형이 실시되었다. 1996년 5월 북한과학자 정갑열과 함께 입국한 방송작가 장해성은 1995년 하반기에 김정일의 '친필방침'에 따라 시·도별로 공개처형이 실시되었으며, 공개처형 대상에는 주로 살인 및 살인미수자, 상습절도범, 강도재범자 등이 포함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의 경우 1995년 한 해 동안 각 구역별로 4~5회의 공개처형이 실시되었으며, 1995년 7월에는 대동강 구역 건설건재대학 뒷편에서 살인 및 강도행위로 기소된 한 처녀와 부부 등 3명이 주민 수천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총살되었다.

이같이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 자주 실시되며, 체제단속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인간적인 공개처형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인식은 매우 낮다. 귀순자 정재광(1996.4 입국)은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자주 실시되고 있으나, 공개처형 대상이 대부분 살인자 등 흉악범죄자이거나 대형경제범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이들의 처형을 대체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당국은 공개처형을 체제에 대한 결속과 공포심의 내면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내에서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귀순자 안명철(1994.10 입국)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내에서는 약식 재판에 의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위부원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내에서 공개처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탈출하다가 체포되는 경우이다. 정치범수용소의 경비대원으로 근무(1983.5~86.6)한 경험이 있는 최동철(1994.12 입국)은 1985년 「11호 관리소」(함북 경성 소재)에서 할머니, 아들, 손자 3명 등 5명의 일가족이 도주하다 3일만에 체포되어 공개처형되었다고 밝혔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전체 정치범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가운데 기관총, 자동보총으로 무장한 경비대원들

의 삼엄한 경비속에서 어른 2명은 교수형, 아이들 3명은 총살형에 처해졌으며, 수용소의 보위부원들은 공개처형 직후 정치범들로 하여금 죽은 시체를 향해 들을 던지게 함으로써 “탈출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감을 조성했다.

또한 귀순자 안명철은 정치범의 체포·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3국(예심국)에서 행해지는 자의적인 비밀처형의 실상에 대해서는 7국(농장관리국)의 보위부원·경비대원 조차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람의 기름을 짜서 화장품을 만든다”든가 “사람의 힘줄로 채찍을 만든다”는 등의 3국내 인권유린 실상에 대한 소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그는 경비대원들 중에는 개인적인 공명심과 입신을 위해 정치범을 살해하고 이를 탈출기도로 조작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북한당국이 수용소에 관한 비밀유지와 경비대원들의 사상 무장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복무후 입당과 대학입학 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화소내에서의 공개처형 실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귀순자 이순옥(1995.12 입국)은 개천교화소에 수감(1987.12~92.12)되어 있는 동안 9번의 공개처형(남자 7명, 여자 2명)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공개처형은 교화소 부소장의 주관하에 수감자들을 집합시킨 가운데 교화소내 공장건물 구내마당에서 진행되었다. 1990년 평양 돌격대소속 취사원 출신인 ‘서영순’(당시 23세, 여자)은 파손된 생산품을 숨겼다가

적발되어 공개처형되었다. 서영순은 돌격대원들에게 정량보다 많은 배급을 주어 식량 부족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고, 신소후 다시 20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이었다. 또한 1988년에는 농장에서 채소를 절취한 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던 '최월령'(당시 39세)이라는 여인이 자식들(당시 7세, 5세) 걱정에 매일 울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되었다.

불법구금 및 고문

인신의 자유, 즉 신체의 자유라 함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인신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근원적인 요구인 동시에 인간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인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다.

이러한 신체의 자유로는 불법한 체포·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등의 차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불법구금, 고문, 비인도적 형벌 등 비인도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84년 12월 10

일 유엔총회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에 관한 금지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3년 「비엔나선언」은 어떠한 상황, 특히 전쟁 시에도 ‘고문방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유엔회원국들의 조속한 동 조약에의 가입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절차없이 피의자가 구금되거나 고문 등이 자행되는 비인간적인 처벌이 만연되어 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당 정책을 어겼을 때는 처벌의 가혹함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범죄용의자의 초보적 인권까지 유린하고 있다. 미국무부 『'93 각국 인권보고서』는 “믿을만한 보도에 의하면 1980년대 동안 수감자들은 일상적으로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았고, 많은 수형자는 고문·질병·기아 등으로 숨졌다”고 보고하였다.

정치범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더욱 가혹하다. 이들은 법에 의한 재판이나 형기에 관해 명확한 언급을 받지 못한 채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는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다. 수감자들은 입소한 날로부터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친지와 의 면회는 물론 서신연락도 금지당한 채 ‘구역’안에 있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불공정 재판절차

북한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범과 일부 경제범을 수감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

김일성은 “우리의 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법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국가주권의 법입니다”라고 법의 계급성을 명확히 밝혔고, 사회주의체제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요소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일반(특히 형사법)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예리한 무기’라고 규정하였다.

북한 형법학자 김근식이 저술한 『형법학』(1986)에는 형법이 “반혁명분자들을 진압하고 일반범죄자들의 제재를 목적으로 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형법의 주목적은 처음부터 정치범의 처벌에 있다. 국가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제2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형법의 기본 정신이며 원칙이기도 하다.

1987년 개정된 북한의 형법은 그들이 말하는 북한형법의 계급적 본질과 임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형법이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하는 ‘계급적 원썩’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실시하고 김일성 부자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요소라도 가장 단호한 징벌을 가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의 해석 및 적용

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구되므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입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형법의 성격 가운데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즉 형법 제10조에 “범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동일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그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협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운다”라고 규정하여 유추해석을 허용함으로써 주민들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범죄인으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북한형법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소급효를 인정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을 부인하고 있다. 형법 제42조에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해서는 앞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인은 죽는 날까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예비·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방조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형법 제15조에는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해서는 기수범과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8조에는 “(범죄를) 추진자와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정범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넷째, 김일성 부자를 비방하거나 저항하는 행위는 제44조부터 제55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무조건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되어 사형이나 전 재산 몰수형에 처해진다.

다섯째, 은닉범, 불신고범, 방임범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제54조, 제55조), 반국가범죄의 경우 이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연좌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형법의 반인권성·전근대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헌법에는 국가권력에 의한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권리 보장만이 약속되고 있을 뿐이고, 권리 침해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북한헌법에는 이른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는 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제도가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집단주의원칙에 의한 권리 관념을 바탕으로 한 평등권, 참정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함께 기타 여러 가지 권리들이 북한헌법에는 열거되어 있지만, 국가에 대항하여 이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에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주민의 청원권 역시 헌법(제69조)이나 형법(제127조)에 규정하고 있고, 변호인의 보호를 받을 권리도 형사소송법(제169조, 제174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신소와 청원을 할 경우, 신소자를 국가안전보위부나 사회안전부가 필적조사를 통해 색출하여 벌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신소나 청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당국은 신소자가

밝혀지면 “무엇때문에 신소를 하였는가? 왜 수령님께 근심을 끼쳤는가?”라는 식으로 심문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신소의 내용이 국가의 정책이나 지침에 대해 이의인 경우에는, 형법 제103조와 105조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다. 103조는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흠잡히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집단적 시위, 청원행위를 금지하였고, 제105조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1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여 항의나 신소를 억제하고 있다.

귀순자 김운학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친구였던 ‘김덕철’은 1988년 2월말 경에 중앙당 신소과에 “공화국 경제정책이 현실정에 맞지 않으며 경제발전을 하려면 개인기업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비밀투서를 하였고, 이로 인해 그는 얼마 후 검거되어 행방불명되었으며, 그의 조모, 가족, 삼촌 등 일가족도 통제구역으로 추방되었다.

한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에 대항하여 최종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권과 관련하여 변호업무의 중요성은 변호활동의 국가로부터의 독립 여부에 달려 있다. 재판의 공정을 기함에 있어 개인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형사소송법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영업자라기보다 당의 지도를

받는 변호사회의 직원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은 북한 변호사제도의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명목상 변호사들이 변호사회의 업무배분에 따라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주민들에 교육하고 선전하는 일종의 정치사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11조는 “변호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변호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변호업무가 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에게 정확하게 침투되어 실시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사실을 실토하도록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은 1992년 1월 15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을 선언하고(제4조), 과학적 ·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형사사건을 처리토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및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한편(제35조, 제36조),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에 신증성을 강조하는(제11조) 등 인권보장 측면에서 외형상 진일보한 면을 보였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적 요소가 개정 형사소송법에도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수사관과 예심원들의 증거조

사, 구속처분, 수색·압수 등의 강제처분시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전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제40조, 제100조, 제111조, 제129조). 다만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압수할 때에는 각각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속처분결정서나 수색·압수결정서를 제시하도록 하여(제107조, 제132조)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체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인민참심원제를 채택하여 형식상 배심원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인민참심원제는 객관적인 판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소자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인민참심원들의 역할에 대해 “재판심리에 노동자, 농민의 대표가 참가한 때에는 그가 먼저 피소자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게 한다”(제230조)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데서 그 본질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과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에 해당하는 정치범에 대해서는 국가보위기관의 예심원이 예심하도록 하고(제74조), 도·직할시 재판소를 제1심관할로 정하여(제181조) 일반형사범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부나 검찰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간첩이나 반당·반체제행위자 등 반국가범죄자를 검거했을 때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가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관여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유린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재판기관은 국가기관 체계상 최고인민회의,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부원을 상부구조로 하여 그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북한의 재판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의 사업지도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제대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만큼 인권침해 가능성도 매우 높다.

교화소내 인권유린

북한의 구금시설은 정치적 범죄와 경제적 범죄 등 정치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범죄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970년대 초 북한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사회안전부로부터 국가안전보위부(당시 정치보위부)를 독립시켰다. 즉 양기관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역할을 구분하고,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을, 사회안전부는 그외 범죄행위자를 취급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 등은 일반적인 감옥형태인 「교화소」에 수용된다. 교화소는 사회안전부 교화국에서 관리하며, 교화소, 노동교화소, 교양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반면 정치범들은 국가안전보위부 농장지도국이 관할하는 「관리소」에 수용된다. 이 관리소는 정치범수용소로 통상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린다. 사회안전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은 「관리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11호, 13호, 17호, 18호 등으

로 구분되는데, 11호는 현재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북한의 구금형태

| | | |
|------|---------------------|-------------|
| 범죄유형 | 경제범·강력범 등 | 정치범 |
| 관리기관 | 사회안전부 교화국 | 국가안전부 농장지도국 |
| 수용시설 | 교화소 노동교화소 교양소 | 관리소 |

「교화소」는 일반 교도소와 같은 형태의 감옥이며, 사회안전부가 관리하는 구금시설 가운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자를 수감하는 곳이며, 대략 도단위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교화소에 수용하기에는 미약한 범죄자들은 「노동교화소」에 보내 6개월~3년 동안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주로 철도, 집단생활 이탈자 등이 수용되는 노동교화소는 500~2,500명 정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도단위로 2~3개씩 전국에 약 12~16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 노동교화소에서는 공민증이 박탈되지 않는다.

「교양소」는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와 같이 교양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이들에게는 1~6개월의 수용기간 동안 무

보수노동(농사, 건설현장 등)과 교양을 실시한다. 교양소는 대부분의 시·군에 설치되어 있고, 각 시설은 100~200명 정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다. 학교생활 불량자 및 청소년 등이 많이 수용되기 때문에 「청소년교양소」라고도 불린다.

이외에도 북한에는 교화소와 유사한 형태로 「사회주의범무생활위원회」 등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설치한 「청소년구호소」,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불량아, 사건 계류자 등을 단기간 수용하는 「집결소」 등이 있다.

북한은 1995년 4월말 「평양축전」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한 「국제사면위원회」에 북한에는 「사리원교화소」를 포함하여 3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약 800~1,000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국가사범 약 240명은 「형산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이 국제사면위에 설명한 3개의 교화소는 아마도 「사리원교화소」, 「원산교화소」, 「증산교화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경제범을 그 유형에 따라 제1부류, 제2부류, 제3부류로 분리하여 이들 교화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교화소 중 증산교화소는 노동교화소와 유사하며, 통상 「증산노동교화소」로 불린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면위원회에 언급한 「형산교화소」는 교화소가 아니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맞은 편 금문산 기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안전부 검찰국과 재판국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안전부 검찰국과 재판국은 범죄자들의 예심을 담당

하는 곳이다.

일반주민들의 교화소내 생활과 인권유린실태에 대해서는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입국한 이순옥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개천교화소는 원래 국가안전보위부 관할 남신의주 소재 여자교화소가 1982년 3월 개천으로 옮겨오면서 사회안전부 관할 관리소로 바뀐 것이다. 북한내 최대규모중 하나인 개천교화소의 전체 수용능력은 600여 명(1개 감방에 20여 명)이다. 그러나 개천교화소에는 약 6,000명의 죄수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000여 명의 여성수감자도 포함되어 있다. 1개 감방(가로·세로 각각 약 8m, 6m)에는 보통 80여 명이 수감되어 있다. 수감자 대부분은 암거래·절도 등으로 인해 잡혀 온 경제범이며, 강도·살인범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수감자중 80% 이상이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가 수감되는 경우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처리가 된다.

개천교화소에는 남성수감자쪽에는 22개, 여성수감자쪽에 11개의 각종 공장이 있다. 각 공장은 1개 교화반(300명 내외)으로 구성되며, 그 밑에 조(40~50명), 분조(4~7명)가 있다. 여성수감자쪽의 공장으로는 구두공장, 포화공장(북한군 신발 생산), 피복공장, 일용공장, 수출공장, 재단공장 등이 있으며, 이 공장에서는 주로 사회안전부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피복, 구두, 가방, 혁대, 권총집, 군견 목걸이 및 입마개 등과 수출품으로 편물, 조화, 속옷(위탁 가공), 재털이 받침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같은 수감자의 노동으로 인해 전국 각지의 교화소를 관리하는 사회안전부 교화국의 전체 수입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수감자의 경우 출소할 때까지 한 공장에서 한 가지 품목의 생산에만 참여한다. 북한의 노동법상 규정은 일반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재소노동은 1일 10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수감자들은 오전 5시에 기상하여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하루 17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다.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전체 휴식시간은 하루 1시간에 불과하다. 교화소 외부지역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1년에 2회(봄·가을 각각 10일 정도, 파종 및 수확시) 정도이며, 신체건강한 사람만을 차출하여 내보낸다.

식사로는 강냉이 300g(규정은 700g)과 염장배추국이 제공되며, 작업량 미달시 240g, 3회 연속 미달시 180g, 독방·예심방 수감시 90g으로 배급이 줄어든다. 피복은 10년에 1벌 지급되고 있다.

교화소내에서 수감자가 '생활준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나 주어진 작업량을 3회 연속 미달했을 경우, 그리고 생산물품을 파손하거나 오작품을 생산했을 경우에는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독감방'(높이 1m, 가로·세로 60cm)에 수감되며, '미달밥'(1일 90g)이 배급된다. '예심방'은 계속해서 오작품을 생산하거나 생활준칙을 어기는 수감자들이 감금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사회주의 교화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벌(구타·고문)이 이루어지며, 심한 경우 처형이 결정된다.

교화소내 수감자 '생활준칙'은 다음과 같다.

1.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권위와 위신을 옹호하기 위해 자기의 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항상 가질 것.
2. 노동을 통해 자기사상을 개조할 것.

- ① 일별·월별·분기별로 과제를 무조건 수행할 것.
- ② 국가자재를 자기의 노동자와 같이 아낄 것.
- ③ 국가설비를 자기의 노동자와 같이 아낄 것.
- ④ 노동안전규율을 잘 지킬 것.
- ⑤ 작업시 오작품(오손)을 내지말 것.
3. 생활준칙을 어기지 말 것.
4. 모든 행동은 반조·분조단위로 할 것.
5. 사회안전원이 호명했을 때에는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대답할 것.
6. 작업에 필요한 말 이외에는 말을 하지 말 것.
7. 웃거나 콧노래를 부르지 말 것.
8. 자기 작업장을 이탈하지 말 것.

「증산교화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축산, 농사, 봉제 등과 관련된 강제노동이 행해지며, 특히 군복 등 상당한 양의 군수물자가 교화소 죄수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다. 이곳에는 주로 미성년자들과 여성들이 수감되며, 남녀의 비율은 거의 같다. 또한 「원산교화소」는 규모가 방대하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필품은 북한의 경공업 생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산교화소 산하에는 여러 지방교화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제사면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추정 한 ‘조호평’의 과거 수감장소인 「천내교화소」는 원산교화소 산하인 것으로 보인다.

2. 평등권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평등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차별금지, 기회균등 등이다.

세계인권선언 제6조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제7조에는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동등하며 아무런 차별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함은 물론이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따라서 평등권은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 누려온 천부적 권리이다. 평등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능 내지 방법으로서 기본권 전반에 공통으로 작용되어야 할 기능적·수단적 권리라는 특성을 갖는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고용, 임금, 근로조건, 과세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참여와 활동,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출신성분, 성별, 기타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문화적 영역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육의 기회균등은 물론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모든 사회 제반시설을 균등하

게 누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

북한은 헌법 제65조에 “공민은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형상 모든 주민의 평등한 권리 향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이 헌법상 규정된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1958년 8월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을 완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주민의 노동자화’를 목표로 그해 12월부터 전체 주민을 출신성분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는 전주민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소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북한이 시도한 사회주의적 계급정책이었다.

출신성분 구분작업으로는 1958년 12월~1960년 12월에 실시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1967년 3월에 실시한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1970년 6월에 걸쳐 조사한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그리고 1980년 4월~1980년 10월 걸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 1981년 1월~4월에 걸친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

되었다. 특히 1980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실시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에서는 13개의 부류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2> 주민성분 조사사업

| 사업명칭 | 시 기 | 내 용 |
|---------------------------------|---------------|---|
| 중앙당 집중지도 | '58.12~'60.12 |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이주 |
| 주민재등록 | '66.4~'67.3 | 100만 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 민성분을 분류(직계 3대·처가와 외가 6촌까지 내사) |
| 3개 계층 51개부류로 구분 | '67.4~'70.6 |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 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 하여 51개 부류로 재분류 |
| 주민요해 사업 | '72.2~'74 | 남북대화와 관련, 주민동태를 조 사·파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
| 공민증 검열사업 | '80.1~'80.12 |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 기능 강화 |
|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 '80.4~'80.10 |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자들 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
|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 '81.1~'81.4 |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 하여 동향 감시자료를 과학화 |
| 공민증 갱신사업 | '83.11~'84.3 |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

<출처> 통일원, 『'95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5), p. 275.

최근 북한은 표면적으로 성분정책을 완화시키고 복잡군중들을 포용한다는 김정일의 '광폭정치'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성분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성분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 또는 추가되는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주민의 성분 분류 세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기본계층과 복잡계층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민족자본가나 지주 등은 현재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별로 새로운 사회집단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이 통치자로서 모습을 드러낸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성분완화정책의 시달에 따라 당시의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부류를 폐지 내지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이같은 성분정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의 성분정책 완화지침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성분정책으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북한이 1987년에 제작·상영한 영화 『보증』은 실제로 북한에서 차별적인 성분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물론 이 영화는 김정일의 성분완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차별적 성분정책을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한국에 가족을 둔 한 노동자가 성분문제로 각종 불이익을 겪으면서 사회적·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성분분류작업을 통해 북한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사전에 색출하여 이들의 반당적·반혁명적 행위를 진압하고 반동계급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출신성분에 따라 구분된 소집단은 의식주 배급에서부터 사회적 이동 및 법집행, 여행허가증 취득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북한의 전주민은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감시대상)의 3계층으로 분류된다. 핵심계층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으로 전체주민의 약 28%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김일성·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과 약 20만명(인구의 1%)으로 추산되는 고급간부들, 그리고 나머지 26~27%의 중하급 간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항일혁명투사와 그 가족, 한국전쟁시 피살자와 전사자의 유가족들이다. 북한은 핵심계층의 자녀들을 위해 각종 특수학교와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고급간부들은 호화주택에 살면서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최신 유행품 등을 소유할 수 있다. 자가용, 개인전화도 소유하고 있고, 외국출판물도 구독하며, 외국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살면서 당·정·군간부 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특혜를 받고 있고,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혜를 누리며 봉건적 세습신분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표 3> 3계층 51개부류 분류표

| 3계층 | 51개부류 |
|------|---|
| 핵심계층 |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당·정·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반일투쟁에서 희생된 자의 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6·25당시 비전투원으로 희생된 자의 유가족), 혁명인텔리(8·15이후 북한이 양성한 인텔리), 6·25당시 피살자 가족, 6·25당시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인민군 현역장병의 가족), 영예가족(6·25당시 부상한 상이군인) |
| 기본계층 | 중·소상인, 수공업자, 소공장주, 하층接客업자, 중산층接客업자, 무소속 남한출신, 월남자 가족(제1부류),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 가족(제2부류), 월남자 가족(제3부류), 중국귀환민, 8·15이전 인텔리, 안일·부화·방탕한 자, 접대부 및 미신 숭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
| 복잡계층 | 8·15이후 중소기업가·부농·상공업자에서 전락된 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행위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복무자, 체포·투옥자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개인재산을 완전 몰수당한 자본가 |

* 1970년 당시 주민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분류한 것임
 <출처> 통일원, 「'95 북한개요」, p. 268.

기본계층은 북한체제의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일반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체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하급간부나 기술자로 진출하고 있으며, 극도로 제한된

수입과 배급식량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대부분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는 이들은 불충분한 보건 혜택 속에 특별 허가없이도 평양을 여행하지 못한다. 이들중에서 일부는 핵심계층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복잡계층은 계급적 적대자들과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집단이다. 복잡계층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7%를 차지한다. 이들은 과거 지주 및 자본가 가족, 일제시 공직자, 종교인 가족 및 부역자 가족 출신 등으로 대학진학, 입당, 군장교 등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박탈된다.

출신성분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성분정책은 기본계층의 사회적 진출을 억제하는 불리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성분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부류는 역시 복잡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복잡계층에는 당원자격을 박탈당한 자, 간부에서 철직된 자, 체포 및 투옥자 가족, 정치범 출소자, 경제사범, 반당·반혁명종파분자 등 북한의 권력투쟁에서 희생당하거나 소외된 엘리트와 관료들이 포함된다.

귀순자 이순옥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분기별로 초급당비서, 부비서, 세포비서 등이 성분심사를 하고 있으며, 성분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표 4> 참조). 일반적으로 당원, 노동자, 사무원, 전사자가족, 영예군인 등은 그 기준에 따라 핵심군중이나 기본군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혁명인테리는 기본군중 또는 복잡군중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 4> 성분 분류표

| | |
|------|---|
| 특별계층 | 혁명열사유가족·애국열사유가족(1~2%) |
| 핵심군중 | 노동당원, 전사자가족(전사가 확인된 경우), 영예가족, 후방가족, 고농, 빈농, 사무원, 노동자 |
| 기본군중 | 노동당원, 사무원, 노동자, 영예가족, 전사자가족, 남한출신(의용군입대자), 신인테리 |
| 복잡군중 | 인테리, 남한출신(입북자·피난민), 포로귀환병, 월남자가족, 중·소상인·수공업자 출신, 중국귀환민 출신, 과거 집대부·미신송배자 가족, 유학자·지방유지 출신, 경제사범, 구인테리 |
| 감시대상 | 과거 지주·중소기업가·부농 가족, 과거 친일·친미행위자 가족, 과거 적기관복무자 가족, 종교인출신 가족, 출소자, 출당자, 철직자, 체포·투옥자 가족 |

* 귀순자 이순옥의 증언에 의거하여 작성.

복잡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고용, 교육, 주거, 의료혜택, 형사처벌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강제이주를 통한 격리수용의 대상이 되는 독재대상, 항상 동태를 감시당하는 고립대상, 집중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체제 순응적인 대상으로 교육하는 포섭대상 및 교양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표 5> 복잡계층 분류표

| | |
|-------------------|--|
| 독재대상 | 독재대상자는 현재 북한체제와 제도를 전복하려는 부류로 이들은 일반 주민들과 분리시켜 소위 '안전지대'로 불리우는 산간고지와 탄광지대 등 특수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있다. |
| 고립대상 | 고립대상자는 상당히 위험한 대중으로서 일단 유사시에는 남한에 동조 내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들이며 일반군중에 공개하여 집단 감시케 한다. |
| 포섭대상 및 교양대상 | 포섭대상자들은 일부 동요계층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탈정도가 경미하여 체제 · 이념에 다시 순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류이며, 교양대상자들은 사상교양을 강화하면 전향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보는 유동적인 부류이다. |

북한은 정치적 신분에 따라 교육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당사자의 실력이나 본인의 의사와는 거의 상관없이 지망대학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중앙당 부장, 정무원 부장 등 김정일의 측근이나 소위 간부 자녀는 무시험 특별입학이 허용된다. 귀순자 박수현(1993.10 입국)은 김일성 · 김정일의 지시로 입학이 결정되는 고위간부의 자녀들이 '교시받은 학생', '지시받은 학생' 또는 '말씀받은 학생' 등으로 불린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김일성종합대, 김책공대 등 주요대학의 입학 예정자는 직계 준비속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의 입학 예정자는 직계 준비속 4촌까지 성분조사를 받는다. 성분조사 과정에서 작은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된다. 입학이 취소된 남학생은 군대에 입대하여 7~10년간 복무하여야 하고, 여학

생은 생산기업소로 배치된다.

연좌제 등 출신성분에 따른 대학입학 통제실상은 많은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실제로 대학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정밀한 신원조사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입학이 허용된다. 귀순자 김성(1990.6 입국)은 자신이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전기간 동안 전교 1등을 했지만 1979년 3월초에 있었던 대학시험에 파견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가 다니던 학교 교장과 어머니가 재직하던 학교 교장이 대학교 모집처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학생의 외삼촌이 1946년 12월경 월남을 한 ‘10호대상’(월남자 가족)이기 때문에 파견장이 안나갔다”는 것이다. 또한 귀순자 임영선(1993.8 입국)은 1988년 4월 ‘군관’(장교)이 된 후 총정치국 간부에게 대학진학을 위해 뇌물을 상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성분이 좋지 않으니 대학진학을 포기하라는 언질을 받은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

연좌제에 의한 통제실상은 이산가족들에 대한 적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은 전체인구의 25~30%를 차지하는 방대한 집단인 이산가족들을 ‘월남자’로 분류하여 복잡계층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조상들의 과오, 일제 때나 한국전쟁 때 있었던 과오를 가지고 아직도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귀순자 정재광은 1975년 동창인 ‘김룡각’(당시 고등중 3년)의 가족이 부친의 6·25당시 치안대 가담사실로 인해 자강도 용림군으로 추방되었다고 증언하

였다.

복잡계층은 수용소·교화소 등에서 출소한 이후에 더욱 엄격히 감시·통제되고 있다. 귀순자 서병림(1996.5 입국)은 요덕 수용소에서 출소한 후 항시 보위부의 정보원에 의해 감시당했으며, 정보원은 자신의 동태를 정기적으로 보위부에 보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 출소자들을 경계·차별하고 있으며, 북한당국은 동일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배급을 차별 적용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장애인들에 대한 박해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직 국제적인 규약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1993년 세계 NGO포럼은 '장애인들에 대한 기회 균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유엔회원국들에게 국제규약의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1993년 「비엔나선언」에서도 육체적·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한 기회 균등 보장을 촉구하였다.

세계에는 약 5억 장애인이 있는데, 북한에도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장애인들을 강제 이주시켜 이들을 집단 관리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평양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평양을 국제도시로 꾸미기 위해 장애인들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게 지방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하여 평양시내에 거주하던 신체장애자·정신병자와 그 가족들을 지방으로 강제이주

시켰다.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에서도 장애인들을 산간 오지나 외딴 섬으로 추방하였다.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귀순자들 또한 장애인들이 불구의 정도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거주를 제한받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가 하면 신체적 특징에 따라 혹독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은 난장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난장이를 색출하여 특수지역으로 추방하고 있으며, 난장이가 유전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가족들과 함께 '여진족형 마을'이라고 불리는 함경남도 산골의 작은 벽촌마을에 집단 수용하고 있다. 난장이들은 그 수가 점차 줄어 들고 있는데, 당국은 난장이들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이들간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맹인들도 소재지 이상 대도시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마을을 조성하여 집단 거주토록 하고 있다. 귀순자 윤웅(1993.10.11 입국)은 평양에서는 병어리, 귀머거리까지 지방으로 전원 추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귀순자 윤성철(1996.3 입국)은 장애인들이 영구 파임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만 당의 승인하에 평양 등 외국인이 방문하는 특정지역을 제외한 일반 거주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고, 귀순자 오수룡(1995.3 입국)은 난장이인 '김기화'가 함북지방 산골지역으로 추방당하였다가 거세당한 후 귀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귀순자 정재광도 1978년경 모란봉구역에서 불명의 안전원이 평양에서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16세 가량의

반신불수인 아들을 독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같은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인 방문객들은 평양 등 대도시에서 장애인들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여성차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B규약)」은 제3조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남녀의 평등권을 강조하고 있다. 1979년 12월 유엔총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남녀간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들을 취해왔지만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매우 심각하다. 우선 가정에서의 북한여성의 위치를 보면, 사회주의체제에서 표방하는 사회주의 남녀평등과 실제의 삶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북한은 기존의 유교적·전통적 가족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혈연적 귀속성이 강하므로 사회주의 혁명에 장애가 되며, 봉건적 가족관계는 남성우월적 제도로서 여성을 정치·경제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속에서 그들에게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북한은 초기의 전근대적 가족질서의 단절을 목표로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1970년대 주체사상의 등장 이후 가족관계에서 전근대적인 전통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외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평등한 가족질서를 표방하여 왔으나,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부권이 강조되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또한 폭넓은 금혼의 범위, 부성추종의 원칙, 넓은 가족부양의 범위, 경로사상의 표현 등이 1990년 「가족법」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그리고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는 모두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깊게 잔존해 있기 때문에 북한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사회참여를 하면서도 근로의 과중한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가족 내의 전통적인 역할관계, 즉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철저히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부부간의 역할분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북한여성의 상황은 “본래 녀자의 본분은 어린애들을 기르는 일”이라는 김일성의 언급과 “요리란 녀성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이며 녀성들의 타고난 의무이다”라는 여맹의 규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간주되는 성폭력 실태를 귀순자들의 증언으로 살펴보면, 입당 및 취업을 미끼

로 한 여성에 대한 강간과 성폭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당 간부 등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하직원인 여성들을 유혹하여 성폭행을 한 뒤 그 대가로 당원 자격을 주는 등의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의 경호조직인 호위총국 제5과가 여성들을 선발하여 위안여성조직(일명 ‘기쁨조’)으로 특별 관리한다는 점에서도 여성을 성과 향락의 도구로 인식하는 풍토를 엿볼 수 있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도 일상적이며 이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장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 처벌 및 비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없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순결의식을 강조하고 개인의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성폭행을 여성의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기대할 수 없다.

북한사회는 공식적으로 결혼전의 금욕을 표방하여 혼전 성행위와 간통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투옥 또는 처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군에 입대하면 제대할 때까지 결혼이 금지되기 때문에 남녀간의 ‘부화’(불륜)사건은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로 인한 혼인의 임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과거에는 임신한 여성이 인민병원에서 중절수술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했기 때문에 ‘부화사건에 연루된 여성’으로 구분되어 처벌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여성이 임신사실을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등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980년대 초반 김정일은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의사들이 신분을 묻지 말고 무조건 시술해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의 중절수술 및 불임시술과정은 여성의 건강한 보건상태를 제대로 유지시키기에는 미흡한 형편이다. 여성에 대한 보건규정 및 실제사업은 모성보호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산전·산후휴가를 150일로 공식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여성들 중에 휴가를 찾아 쓰는 사람은 없다. 휴가 반환을 당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서 영웅적인 행동으로 일반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성근로자들의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상당소와 산원을 설치하여 여성의 건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부인병의 예방과 치료, 임신부의 건강보호와 치료, 신생아에 대한 질병치료와 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란 용이하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의료사업도 실제적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한 예로서 북한에는 세계 최대규모의 산부인과 병원으로 알려지는 「평양산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인은 거의 평양산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조산원이나 이웃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여성에 대한 차별은 산업현장에서도 임금격차와 직종간의 불평등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북한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공식화하고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성별, 연령별,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

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성의 평균 임금은 월 70원선으로 계층별 임금수준의 하위에 속한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의한 것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낮은 계급, 사회적으로 경시되는 직종, 보다 손쉬운 작업장에 비숙련노동자로 집중 배치되어 그에 따른 낮은 보수를 받는 직종분리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1979년 9월 김일성은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에서 “로동을 고착시키며 전문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대를 이어 한가지 직종에 정통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직종간의 이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노동력 구조가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직종은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섬유산업이다. 또한 농촌협동농장 등에서는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지배인이나 관리위원장의 비율이 높지만 관리직 전체에서의 여성비율은 현저히 낮다.

명목상으로는 노동력 배치시에 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것으로 선전해 왔지만, 여성을 적당한 직장에 배치한다는 식의 배려적인 조치가 실제로는 여성의 직업을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층에 편중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하자면 84호 내각결정과 남녀노동력 재배치과정에서 제시된 배치의 기준은 여성을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이 풍부하며 체질적으로 연약한 녀성들의 적성”에 맞게 배치하고, 남성을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여성들을 특정 직종(흔히 여성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것으로 간주되는 직종)에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성별 직종분리를 심화시켜 왔다. 그리하여 여성은 경공업부문과 단순사무직, 서비스(상업편의봉사)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은 여성문제 해결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는 남자로 형상하지만 농민은 언제나 여성이 벼단을 안고 있거나 낫을 들고 있는 것으로 형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의 일면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다.

북한은 일찍이 1958년 7월 19일에 공포한 “인민 각 경제부문에 여성들을 더욱 인입시킬데 대하여”에서 교육 및 보건부문에 여성비율을 평균 60% 이상, 기타에는 30% 이상으로 제고시키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반드시 여성들을 배치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 및 보건부문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또한 여성노동력을 개별적 특성에 맞게 배치하겠다는 내각결정은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이 중화학공업의 중점 육성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남성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여성노동력은 ‘가볍고 쉬운 일’에 적합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전문직 비율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직종의 제한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63년 북한내 29만 4천명의 전문가·기술자 중 여자는 4만 3,000명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으나 1989년에는 총 135

만여 명 중 37%에 달하는 50만여 명이 여성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종별로 살펴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직종분리 현상이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여성 노동력은 경공업(70%), 인민교사(35%), 농업부문(60%)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3. 자유권

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제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는 평등과 함께 인권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요소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요소이다. 자유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방어적 공권임과 동시에 초국가적인 인간의 권리임을 의미한다.

자유는 자연법상 인간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서 국가는 자유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못하며, 모든 국가는 자유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자유권의 보장은 초헌법적인 것으로 인류보편의 원리이다. 또한 이는 입헌주의적 헌법의 최고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헌법개정의 내용적 한계가 된다.

거주이전 · 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옮기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인간존재의 본질적 자유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자유로운 인간교섭의 장을 마련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장은 개인의 인격형성에도 기여한다. 개인의 인격형성과 인간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유이다.

북한은 주거와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통제를 위하여 여행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위관리들을 제외한 북한인들은 자유로운 여행을 거행할 수 없다. 예컨대 1980년대에 들어와서 평양에 거주하는 여러 명의 북한인들은 그들을 방문한 미국인 여행자들에게 자기들은 당국의 허락없이 기차나 버스편으로 시외지역으로 여행할 수 없으며,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려면 여행에 필요한 통행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능력과 기호에 따른 주거지 선택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가 없음은 물론, 당국의 허가없이 주민들은 자의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다. 주거지를 허가없이 옮기면 공민

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과 식량배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제56호에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사람은 사회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호에는 “모든 인민들은 가족이 아닌 일시적 손님이나 여행자를 숙박시키려면 역시 사회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여행자가 유숙지를 떠날 때 주인은 그에게 유숙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여행자는 집에 돌아가면 이 증명서를 공안당국과 직장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이동과 여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생산과 노동을 강조하여 여행을 곧 노동력상실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여행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해이해지기 쉽고 정보교환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여행이 불가능하며,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공민증, 신분증, 신임장, 출장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러한 증명서류를 소지한다고 하더라도 여행범위는 크게 제한된다. 지방주민이 평양으로의 여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회나 행사참가, 대학입학 등 특별한 자격이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성분이 확실해야 한다.

귀순자 김창화와 어성일(1987 입국)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의 여행신청은 14일전에 해당 단위의 직장장에게 제출하여 1차로는 노력동원과 사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2차로 해당 지역 사회안전부 증명서 발급과에 3일전에 여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위험분자, 감시자, 동향불순 등록자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보위부 종합과에서의 대조·확인과정을 거친 후에야 해당 직장 초급당비서를 통해 여행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민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사회안전부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증에는 귀향일시가 기재되며 귀향 4일전에 여행지 역전 분주소에 신고해야 승차권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타지에 있는 부모·형제, 친지 등이 사망했을 경우 제시간에 장례식을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은 여행중에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모든 직장성원에게는 일정한 작업량이 부과되어 있고 여행으로 인해 그 작업량을 완수하지 못할 때에는 성적평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성적평점이 나쁘면 태만자로 분류되고, 이는 배급, 자녀들의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이주를 시키고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불만자들에게 행하는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자강도와 양강도 등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그리고 최근 나진·선봉경제특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키는 것은 보편화된 정책이다.

귀순자 안명진(1993.9 입국)에 의하면, 1992년 10월 “비사회주의 요소를 없애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평양시는 직장, 지역단위로 사회안전부원, 국가안전보위부원, 모범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비사회주의 제거 그루빠’를 조직하여 당지시 위반자, 당정책 불평불만자, 근무태만자들을 집중 색출하여 지방으로 강제 추방했으며, 색출자 발생시에는 인민반 전체의 책임을 물어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최근 식량난이 가중되자 북한당국은 식량을 구하기 위한 여행에 대해서는 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다녀온 방문객들은 평양시내에서도 식량을 구해 보따리를 들고 가는 광경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중국으로부터 도착한 열차에서도 식량을 들고 가는 승객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귀순자 최동철의 증언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추석·한식 등에만 여행증명서 없이 타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식량 구입을 위한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여행이 상당히 늘고 있다. 식량배급이 몇 달씩 지연된 지역의 사람들은 해당 직장·기업소에서 식량배급 지연된 상황이 기재된 「식량배급카드」를 구해 여행증명서 대신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 · 출판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외에 개인의 알권리, 언론기관에의 접근과 그 이용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권 등은 물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도 포괄한다.

북한은 1992년 헌법 제67조에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은 비판이나 정보 제공 등 본래의 기능은 도외시키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주의의 일방적인 선전과 주민선동에만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북한주민 모두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즉 언론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할 때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언론은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자이며 선동자인 동시에 조직자이며 교육자로서만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북한 언론은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도원리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오로지 언론은 그같은 교시를 당이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북한의 방송 역시 계급투쟁의 ‘사상적 무기’ 가운데서도 “가장 예리하고도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무기”로서 기능하게 된다. 즉 김일성이 지적하였듯이 방송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선전선동수단의 하나”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리고 방송의 임무는 “전체 인민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미제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수들과 견결히 싸우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는 데 있다.

이같이 북한의 언론은 개인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 기능, 개인보호 기능, 정부감시 기능, 문화전달자적 기능, 오락·광고 기능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노선의 정당화 기능, 인민감시·고발 기능만을 수행하면서 인권침해의 동조자, 은폐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및 각 민주국가의 헌법이 공히 언론의 자유를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출판물 역시 사상교양의 전달수단으로서 노동당이 모든 출판물을 직접 관장하며 검열·통제하고 있다. 출판물은 공산주의 사상을 교양하고 혁명수행을 위한 선전선동자로서 조직자적 역할만을 수행하며, 당성, 계급성, 인민성, 혁명성을 전제로 한 당의 정책선전의 수단이 되고 있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즉 모든 출판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을 관철해야 하며, 혁명적 원칙 등 이론적·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김일성의 우상화, 유일사상의 체계화, 김일성·김정일 부자세

습체제의 확립, ‘우리식대로 살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참여에 매진해야 한다.

헌법 제67조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출판물은 노동당의 대변자로서 대중선동, 대중조직, 대중비판 및 폭로의 기능만을 가지며, 김일성·김정일 치적이나 정부선전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출판물의 내용은 반드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제를 지지하고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을 관철하며 혁명적 원칙 등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의 출판은 이와 같은 원칙에 합당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뿐이다.

어떤 작품을 쓰던지 간에 최종적으로 당 선전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만일 북한주민이 이와 같은 검열기준에 위배되는 것을 출판할 경우, 북한당국은 형법 제46조의 ‘반동선전선동죄’라는 독소조항을 이용하여 사형, 전재산 몰수, 강제 노역 등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반동선전선동죄는 당과 국가로부터 인민대중을 이탈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국가 및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치적 범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출판물에서 노동당이나 김일성 부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의 모든 신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부자에 관한 기사는 신문의 1면에 게재되며 김부자의 이름은 별도의 굵은 활자로 인쇄된다. 모든 기사의 내용은 주민들에게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주지시키는 데 목적

을 두고 있으며, 당에 대한 비판이나 기본적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전무하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북한은 통신수단의 통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으며, 사회안전부는 이를 3개월에 한 번씩 검열하고 있다. 만일 봉인이 뜯겨져 있으면 한국방송이나 외국방송을 허가없이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TV의 경우에도 휴전선 일대에서는 채널을 고정시켜 놓았으며, 국경지역에서는 중국의 TV방송까지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외국언론의 접근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1996년 3월에 발표된 미 국무부의 「'96 각국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북한관련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고, 특히 “서방기자들의 북한방문을 주의깊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 국무부는 이미 「'93 각국 인권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이 일본 언론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북한에 비판적인 기사를 싣고 있는 러시아 언론인의 접근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을 취재하려는 외국언론인들에게 북한당국과 안내원들은 우호적인 기사를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때로는 “보고 들은 대로만 쓰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선전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간첩행위로 간주된다. 가장 극적인 예로 시인이자 번역가인 알리 라메다(Ali Lameda)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베네주

엘라의 공산주의자로 1966년 평양의 한 기관으로부터 번역자로 초청받았다. 그는 북한의 선전내용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선전의 경우에는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가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6년 이상 독방에 감금되었다.

이처럼 북한주민들의 외부방송 청취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세계의 정세변화에 무지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능력과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욕구를 갖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언론역할을 하고 있는 유언비어, 즉 ‘비통’(비밀통신)을 통해 국내사정 및 외부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사회주의혁명의 완전한 달성을 위해 복무하는 중요한 사상적 무기이다. 즉 문학예술을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예술은 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요한 이념적 동원 매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 이후부터 북한의 문예정책은 문예작품창작에서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준수, ‘당성·계급성·인민성’ 원칙 관철 등,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는 요구를 정면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문예작품의 내용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한 ‘혁명전통물’, ‘전쟁물’, ‘사회주의건설물’, ‘조국통일물’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히 내세웠

다. 문학예술이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문학예술이 당의 요구에 의한 계획생산이어야 하고, 창조과정에서 당의 지령과 통제를 받아야 하며, 출판 및 공연에서 당의 엄격한 검열을 거쳐 당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6년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북한사회를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문예분야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즉 ‘주체문예이론’을 내놓게 되었다. 주체문예이론은 사회주의 문예이론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당성 · 노동계급성 · 인민성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당의 유일적 지도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논리하에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이러한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주의를 체현한 ‘공산주의자의 절대적인 전형’으로서 김일성을 직접 형상화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김일성을 절대화 · 우상화함에 따라 그의 가계 전체를 신성한 것으로 신격화할 요구를 내세우게 되었다.

그런데 김일성이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형상화가 어느 한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집체창작’을 강요하게 되었다. 창작작업을 물질생산과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당의 정치사업과 혁명적 조직생활의 결합을 강조하게 되었다. 정치사업이란 쉽게 말해 사상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혁명적 조직생활이란 「4·15창작단」과 같

은 문예인들을 집단화·조직화하여 집체창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성격을 지니는 북한 문예정책의 실현과정은 무자비한 통제성을 보이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당 중앙위원회 문화예술부에서 직접 담당하며 명목상 사회단체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노동당의 산하단체인 문예총을 통하여 진행된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통제는 우선 그들의 창작 및 공연 활동에 대한 계획의 하달로부터 시작된다. 노동당은 각 예술분야와 작가 예술인들에게 창작계획을 연, 분기, 월별로 작성, 제출할 것을 강요하며, 또 이 계획은 주제별 할당의 범위에 반드시 준해야만 한다. 주제별 할당은 확고히 고정되어 있는데, ‘혁명전통 주제’(과거 김일성 일파의 반일투쟁 업적을 날조·찬양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내용) 작품 30%, ‘전쟁 주제’ 작품 30%, ‘사회주의건설 주제’ 작품 20%, ‘조국통일 주제’ 작품 20%로 되어 있다.

해당 동맹단체에서는 제출된 계획을 종합하여 당 중앙위원회 문화예술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는다.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 및 공연활동은 이 계획에 무조건 의거해야 하며 각 동맹지도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산업지구·공장·기업소 및 농촌으로 파견된 작가 예술인들(해방작가라고도 칭함)과 직장을 가진 작가 예술인들(문학예술총동맹, 각 출판기관, 당·행정기관에 현직을 두고 있는 자)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들 모두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과

통제를 위하여 각 동맹별로 분기에 1회 ‘당생활총화회’를 소집하며 1년에 1회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총회를 소집하여 작가 예술인들의 활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업을 제시해 준다.

작품 출판 및 공연에 대한 통제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통제된다. 이 통제야말로 작품출판 및 공연의 현실화에 앞선 최종적인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당은 출판 및 공연계획을 직접 통제한다. 출판과정에 대한 통제 · 감독은 문예총을 비롯한 해당 동맹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공연 단체에 대한 일체의 통제 · 감독은 정무원 문화예술부와 공연 담당 부문 사회단체에서 이중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은 대체로 작품의 회부과정, 작품의 검열과정, 작품의 출판 및 공연과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작품의 회부과정은 제출된 작품을 두고 편집부 또는 공연단체에서 작가와 편집원간의 검토를 하는 과정인데, 편집부 및 공연단체에서는 작품에 대하여 작가 예술인들과 함께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서 작품의 사상, 예술성을 두고 편집부에서 작가에게로, 작가로부터 다시 편집부에서의 3~4차례 이상 원고수정을 거치게 된다. 편집부 및 공연단체에서 채택된 원고는 정무원 출판총국 검열국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검열은 매우 엄격하게 수행되는 바, 부분적으로 몇 곳만 수정 의견이 제출되어도 작가에게 반환하여 수정시킨 다음 다시 제출하게 한다.

검열에 통과되어 검열인을 받아야 비로소 출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는 미술작품이나 음악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다. 모든 소설, 시, 희곡, 무용극, 미술작품, 음악작품 등에는 검열인이 반드시 찍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의 투쟁업적을 날조 찬양하는 혁명전통작품'에 대해서는 지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즉 북한지도층의 비위에 맞는 작품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가장 큰 검열기준이 된다. 잘못된 것을 통과시켜도 책임을 지지만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품을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부결시켜도 책임을 지게 된다.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이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형태로 행해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다.

북한헌법 제67조는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결사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집단적 소요로 간주된다. 1987년 형법만 보더라도 제103조는 반국가적 목적이 없더라도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혹심하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105조에는 “사회적 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은 가맹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당의 외곽조직으로 존재하며 대중의 사상교양 선도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시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 교육기관,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선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어느 조직에라도 가입하게 되어 있어, 노동당은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상호감시, 비판, 계도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사상과 집단행동을 통제하고 있다.

1996년도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정부의 허가없이 대중집회를 열 수 없다. 정부가 만든 조직 외에 알려진 것은 없다. 이웃간 모임이나 동창회와 같은 비정치적 모임조차도 금지한다. 각종 직업적 동맹이 이들 구성원에 대한 정부통제의 수단으로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부 불만을 가진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집회·결사를 행하고 있으며 체포되면 중형을 받고 있다. 귀순자 윤웅은 1992년 4월 함경북도 청진경기장에서 개최된 「4·15 축구경기」 관람 도중 청년 1명이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 김정일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자유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전단 300여 매를 살포하다

가 현장에서 국가안전보위부원에게 체포되어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당하여 즉사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윤웅은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이 유학생들을 소환하여 사상검토를 한 후 전국 각지의 대학 등에 이들을 분산 배치하였는데, 1991년 5월 김일성대학에 배치된 학생들이 출신 유학국가별로 연계되어 반체제활동을 주도하다가 국가안전보위부에 전원 체포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 당시 그가 다니던 청진 광산금속대학에 배속된 체코 유학생 출신 ‘김동국’(당시 30세)이라는 학생도 이 사건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귀순자 정재광도 1980년대에 김일성대에서 경제정책 비판 등을 담은 투서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였고, 1983년도 수확부 주도의 투서사건에는 교원도 연루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의 『백과전서』는 “결사의 자유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정치생활의 주인으로 참가하며 결사의 자유는 근로인민대중에게 부여된 확고한 헌법적권리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명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직 당의 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집회나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결사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단체는 서구식 의미의 이익단체나 압력단체가 아니라 조선노동당규약 제9장

제56조에 나타나 있듯이 조선노동당의 강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을 연결해 주는 인전대’로서만 가능하고 있다. 여성조직, 종교결사, 노조, 정당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과 결사는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며, 북한당국은 이들 조직을 통해 노동당원과 후원자를 양성한다. 독립적인 기관이나 결사의 존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조선노동당은 각종 대중조직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다. 사회단체들의 주목표는 노동당을 보좌하고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는 일이다. 또한 이들 사회단체들은 주민들에 대한 일차적인 통제 기능 외에 북한당국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운동, 예를 들어 천리마운동 등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운동, 김일성·김정일의 생일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서의 집단시범, 행진 등에 있어서 주민동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상·종교의 자유

정신생활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사상의 형성과 그 전달, 양심과 신앙의 유지, 학문의 연구 등은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정신적·사회적 활동의 자유가 체제 자체의 존립과 그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당국은 주체사상 이외의 어떠한 사상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근거하여 수령(김일성·김정일)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과 그 창시자인 수령 이외에는 숭배대상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모든 형태의 종교 조직화를 봉쇄하는 동시에 북한주민의 사상 및 양심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김일성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숭배는 단순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엄격한 통제와 감시조직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하나의 체계를 요구한다. 이 체계속에서 어떠한 반대이념, 이견, 외부권위에의 호소도 용납되지 않는다.

북한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맑스의 언명에 따라 건국 이래 종교탄압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즉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은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 억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도구로 리용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무계급사회인 북한에서 종교는 무의미하고 더구나 주체사상이라는 '완벽한 종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종교는 존재의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주민들은 오직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판단·행동해야 하므로 개인적 양심과 사고는 억제되고 있고,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숭

배는 가히 종교적인 차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무부의 『'96 각국 인권보고서』는 “주체사상과 김일성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숭배는 국가종교(state religion)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일성 · 김정일에 대한 숭배행위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소위 북한의 ‘10계명’인 10대원칙은 북한사회내에서 정치범과 사상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북한의 모든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궁극적인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10대원칙이 발표된 1974년부터 이 원칙은 헌법이나 다른 어떤 법보다도 북한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범죄규정에도 적용되는 실제상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대원칙은 10개의 원칙에 각 원칙마다 3~10개의 세부조항을 담고 있다.

제1조 제1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전체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3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제5항.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제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여도 비상사건화하며 이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제6항. 수령님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위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게재한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화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당의 기본구호 등을 정중히 취급하고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제9항.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시, 당의 정책을 비방증상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반당적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화묵과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제10항. 수령님의 교시와 지도자동지의 지시,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교류를 반대하며 날카롭게 투쟁함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10대원칙'은 북한주민의 말 한 마디, 표현 하나 까지도 통제하고 제어하는 거대한 규범이다. 이 규범을 어긴 사람들은 정치범 또는 사상범으로 지목되어 처벌된다. 10대원칙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범·사상범으로 몰아부친 후 그에 맞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컨대 인민학교 2학년(9세)의 어린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김부자의 얼굴에 연필로 낙서를 했다는 죄로, 또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했다는 죄로 인해 전가족이 행방불명되는 사례도 이같은

10대원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편 북한당국은 10대원칙에 따라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간직하기 위해 생명까지 버리도록 강요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도 지속하고 있다. 1991년 평양 근로단체출판사에서 발간한 『혁명적 락관주의에 대한 이야기』(안창환 저)에서는 김일성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지킨 박영덕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박영덕은 서해바다로 조업을 나갔다가 배가 파산되어 가라앉을 운명에 처하자 “수령님의 초상화를 비닐보자기에 정성껏 싸고 또 짠 다음 자기 몸에 무거운 연추를 달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그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로동신문』(1993.4.28)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불타지 않게 꺼내 오려고 작업장에 들어갔다가 불에 타서 사망한 두 젊은 여성의 죽음을 가리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어 실천한 아름다운 소행”이라고 극찬하였다.

가영환동무가 일하는 동에서 살았던 주순희, 서룡화 동무들은 위급한 순간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초상화를 보위하기 위하여 꽃다운 청춘을 바치었다……이 소행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데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지닌 사상정신적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주순희, 서룡화 동무들의 소행에 대하여 보고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영생의 영예를 안겨주시었다.

‘10대원칙’ 제5원칙의 제1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원칙의 1항은 “정치적 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칠줄 알아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10대원칙’ 제3조 6항에 따라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인간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상의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강요하는 극도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과 종교에 대한 기본인식에 따라 과거 많은 종교인들이 성분불량자로 간주되어 무자비하게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직전과 전쟁 중 많은 종교인들이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실종되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민족적·반혁명적 적대의 대상이 됨으로써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고, 특히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간주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하였다.

1958년부터 시작된 중앙당집중지도사업으로 종교인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불교의 경우 400여 개의 사찰 가운데 60여 개의 사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으며, 1,600여 명의 승려와 3만 5,000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기독교의 경우는 1,500여 개의 교회와 30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고, 천주교의 경우 3개의 교구와 5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천

도교의 경우도 12만여 명의 신도가 자취를 감추었다.

김일성은 1972년 사회안전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 버렸고 그밖의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 역시 북한헌법에는 명시되어 있다. 1972년 헌법은 신앙의 자유와 아울러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제68조 1항에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삭제함으로써 형식적이거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제68조 2항에서 “누구든지 종교를 빙자하여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당국이 허용하는 종교의 자유가 갖는 제약 내지 한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88년 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립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외부에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월 15일에는 불교의 성도절(成道節) 기념

법회를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전국 사찰에서 가졌다. 그리고 1991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북한종교단 일행은 과거 종교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북한당국이 많은 종교인들을 탄압했음을 솔직히 시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에는 1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와 50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종교인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당국의 조작발표는 국제적으로 '종교가 없는 나라'라는 낙인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성당, 사찰은 해외 종교인, 관광객 등 방문객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대외선전용 시설일 뿐이다. 이에 대해서 미국무부의 『'96 각국 인권보고서』는 “최근에 북한정부는 외교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종교조직의 형성을 촉진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귀순자 오수룡은 종교를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며, 과거 평북 선천에 많은 기독교도들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은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아울러 수십년에 걸친 북한의 종교탄압정책으로 인해 일반주민들은 종교인들을 무지몽매하거나 정신이상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모든 귀순자들은 북한에 종교인은 존재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정치범수용소 등 통제구역에는 과거 종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축된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인근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

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1988년 9월 신축된 평양 만경대 구역 건국동 소재 봉수교회의 경우를 보면, 평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 참관시에는 만경대구역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당에서 엄선한 40~50대의 남녀 수백명이 위장예배를 보고 있다.

사생활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명에·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 활동과 생활을 형성하고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법적 안전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북한은 헌법 제78조에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침해불가를 법적으로는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은 실생활과 거의 무관하다. 북한이 인식하는 사생활 보호권은 서구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 사생활에 관한 도청이다. 일반주민뿐만 아니

라 심지어 고위 정보장교의 주택 및 자동차에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당국은 엄격한 상호감시체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북한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사생활 감시에 따른 공포분위기에 대해 자주 말한다. 지배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정치에 관해 거론·비판하거나 당이 결정해 준 한계 밖에 있는 사항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주택단지 내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 받는 경우가 드물다. 가족들 사이에도 시사적인 문제에 관한 생각을 주고 받는 일은 흔하지 않다.

북한은 사생활 침해에 공안조직망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안전부 소속 숙박검열대는 무단 숙박과 간통 등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각 가정을 방문하며 검열을 수행한다. 무단 숙박을 검열한다는 목적으로 예고없이 검열대가 방문하여 집을 뒤지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북한당국은 전인민들의 사생활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당정책을 관철시키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 '생활총화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호 비판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 1회씩 실시되는 집단학습제도이다. 북한주민들은 생활총화시간에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 가정생활, 부부관계까지도 낱알이 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화재나 불의의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근로자들은 출근할 때 인민반장에게 집열쇠를 맡겨야 된다. 인민반장은 불시에 가정을 방문하여 각 가정에 대한 위생 검열, 초

상화 검열, 김일성 부자 관계도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군, 구역 간부들이 호구조사를 나올 경우 집주인의 안내없이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15~20여 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은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가정의 비위사실을 공개 비판토록 강요하고 있다. 귀순자 정재광은 인민반장이 각 가정을 항시 방문할 수 있고, 사상동향이나 가정사정을 감시·통제할 뿐만 아니라 노력동원·생활총화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인민반장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로서 주민들의 생활이 철저히 통제되고 집단주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나라이다. 사생활 통제를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억압기구들이다.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북한헌법 제11조)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노동당은 절대적인 영향력과 지도력을 행사하는 권력의 중추이며 국가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이다. 노동당은 거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되어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인민대중들은 노동당이 결정한 노선과 정책을 준수하면서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피라밋식 위계질서와 당구조하에서 하급당조직이나 하급당원들은 상부의 결정과 지시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다. 당

원들은 모든 기관, 단체, 직장에서 핵심적인 정치요원으로 기능하고, 일반주민들을 감시·통제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으로 주민을 동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하급당조직을 보면, 최하 기층조직으로는 당원 5~30명으로 구성되는 당세포가 있다. 당세포는 당원생활의 거점이며 당주위에 대중을 결집시키고 대중속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당의 전투조직이다.(당규약 41조) 당세포조직은 주로 생산단위를 바탕으로 초급당조직, 부문당조직, 시·군당조직 등으로 확대된다. “모든 당조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당규약 11조)는 원칙에 따라 당정책 수행여부를 감시·통제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당원과 인민대중들의 생활 및 사상교양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집행해 나간다.

한편 당기구 중 당간부와 당원들을 비롯하여 정당 및 사회단체, 전체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하는 부서는 노동당 비서국 조직지도부이다. 1974년부터 김정일이 장악하기 시작한 이 부서는 5개부로 나뉘어 국가 전기관과 해당분야의 당조직을 ‘3선(당조직계통, 행정계통, 보위부계통)·3일보고 통제체제’를 통해 지휘·통제하는 바, 구체적인 임무는 당생활 지도와 간부들의 인사를 관장하며 간부들의 사생활을 파악하는 등 두 가지이다. 또한 노동당 비서국 선전선동부는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간부와 주민들을 재무장시키고 일체의 잡사상을 차단시키는 사상개조사업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상

적 통제기구이다.

주석의 직속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일성·김정일체제 유지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국가보위부는 1974년 2월 '사상 부문일꾼 강습회'에서 김정일이 작성해 발표했다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 대칭되는 10가지 범법규정을 마련하여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 기구는 소위 반당·반체제 주모자 색출·검거, 특정지역내 잠입 간첩 색출,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국경경비와 치외법권 지역 감찰, 일명 '종파분자' 및 정치범들의 특별관리 등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다. 또한 간부와 일반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유사시 변절자와 지지자를 선별하는 '사상사찰'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노동당도 국가안전보위부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며, 사회안전부는 업무수행에 있어 국가안전보위부에 절대로 협조해야 한다.

사회안전부는 해방 직후부터 일재잔재와 지주세력을 청산하는 데 앞장섰고, 그후 남로당계, 연안파, 소련파 등의 숙청에 최선봉 역할을 담당했다. 1961년 4차 당대회 이후에는 독립된 부서로서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노동당의 직명'으로 정치사찰을 담당하여 왔다.

사회안전부는 국가치안을 담당한 프롤레타리아독재기구로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북한체제유지를 위한 대주민사찰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즉 이 기구

는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체의 요소를 적발, 제거하고 전체 주민을 김일성·김정일 1인 독재체제하에 순종케 하기 위한 주민탄압기능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사회안전부는 정무원의 한 부서로서 중앙기구로는 사회안전부와 부직속기관, 도에는 사회안전국과 도직속기관, 시·군에는 사회안전부, 각 리단위에는 리분주소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 공장, 기업소, 군에도 안전지도원이 파견되어 있다.

4. 참정권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여 공직에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국민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또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자기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어느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아울러 투표는 공정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북한은 김일성 추모의 일환으로 3년째 최고인민회의나 당대회 및 각종 선거 등 일체의 참정권 행사를 중단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1994.7) 이후 2년 6개월 동안 어떠한 공

식적인 선거행위도 일절 치르지 않고 있다. 러시아방송에 의하면, 이는 '애도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6년도에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지방 인민위원회 선거 등도 연기되어 주민들의 참정권은 유보되었다.

1992년 개정된 북한헌법 제6조에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6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만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에게 주어져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선거는 단지 대내적으로는 노동당에 대한 인민의 신임을 확신시키고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고시하기 위한 선전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과 등록·투표방법, 연좌제에 의한 선거권 박탈 등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하다.

이에 대해서 미국무부 『'96 각국 인권보고서』는 “자유선거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모든 경우 정부는 각 단위 선거에서 단지 한 명의 후보만을 인정한다. 북한정부 통계에 의하면 99% 이상의 투표율에 노동당이 인정한 후보에 대한 100%의 찬성율을 보인다고 한다. 300만 노동당원의 대부분은 당의 소수엘리트가 만든 규칙을 지키는 데 힘쓴다”고 보고하고 있다.

후보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의해 지명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피선거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 북

한은 『민민전방송』(1996.6.13)을 통해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이 의회선거제 복수후보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 정권을 ‘반동’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고 주장하면서 복수입후보제와 경쟁선거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북한은 복수입후보제를 통해 “우익반동들이 사회주의 정권에 끼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며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 정권은 점차 약화되고 나중에는 반동들에게 정복당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주권기관 선거를 경쟁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치를 수는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귀순자 오수룡의 증언에 의하면, 선거위원회는 선거 30~40일전에 구성된다. 선거위원회에는 담당 보위부원 및 안전원, 각 공장기업소 대표 2명, 인민반장 등이 참여한다. 1개 선거구당 필요한 선거담당원은 각 기업소나 인민반 등에서 선출하고, 1개 선거구당 보통 5~6개의 인민반, 즉 120~130세대가 소속된다. 선거위원회가 구성되면, 사회안전부의 선거인명단과 동사무소의 명부를 대조한다. 그리고 공민증을 수거하여 이들 명단과 대조하여 주민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각 인민반에서 선거인명단을 공개한다.

투표는 구역마다 선거를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보통 당일 오전 10시 정도면 어느 정도 완료된다. 귀순자 오수룡의 증언에 의하면, 인민반장 등은 새벽부터 구역을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선거참여를 독려한다. 선거불참은 ‘위대한 수령’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조차 없다. 타지역으로 출장가는 경우에는 미리 부재자 신고(출장신

고)를 하여 출장가는 지역에서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 출장자나 의식불명인 환자의 경우는 당세포나 부모형제가 대리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투표율은 거의 100%를 기록하게 된다.

선거당일날 투표장에는 기표함 입구와 출구에 보위원이 각각 1명씩 배치된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적혀 있는 일련번호대로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하게 되어 있다. 반대의사를 표명할 우려가 있는 복잡계층에 대해서는 열성당원이 앞뒤에 배치된다. 귀순자 장기홍(1991.11 입국)에 의하면, 찬성일 경우에는 용지에 아무 기표를 하지 않고 그대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되고, 반대일 경우에는 투표장에 비치된 펜으로 반대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기표도 선거담당원이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 기표는 나올 수 없다.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의 매선거마다 100%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Ⅲ.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1. 생존권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권 보장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면서 정부에 의한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권의 보장으로 일반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완전고용과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일성은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3~4년이 지나면 ……우리인민은 모두가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 4대목표(기와집, 고깃국, 비단옷, 쌀밥)’는 30년이 지난 1993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되풀이되었으며, ‘먹는 문제’의 결정적 해결과 주민생활의 향상은 1997년 신년사에서도 강조되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은 1960년대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2년 이래 매년 약 200만톤 이상의 만성적인 식량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부족한 식량을 해외수입으로 보충해 왔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외화부족의 가중으로 수요량

조차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과 중국 등 외부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식량난에 시달리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김일성은 오래전 “쌀은 곧 공산주의이다”라고 선언하고, 1984년부터는 종래의 ‘의식주’라는 용어를 ‘식의주’로 변경 사용할 정도로 식량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우리 정부는 1996년의 전반적인 기후상태와 최근 미국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북한에 체류중인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보고서, 방북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996년 북한의 총 곡물생산량을 370만톤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1995년 생산량의 345만톤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지만 평년작인 410만톤에는 모자라는 것이며, 북한의 정상적인 연간 총 곡물소요량인 약 670만톤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다.

1995~96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강타한 홍수피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부족현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유엔인도국(UNDHA)」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1996년 여름 대홍수로 인해 약 17억 달러 규모의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만채 이상의 가옥과 535개소의 교량, 88마일의 도로, 19개소의 저수지가 파괴되었고, 약 69만에이커의 농지가 유실되었으며, 116명의 사망자와 327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같은 피해내용은 북한당국에 의해 방송에 공개된 바 있다.

1996년 9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공식 원조요청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1996년 북한 수해피해 현황 및 식량공급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SPECIAL ALERT NO. 270)」에 의하면, 북한은 1996년 7월 황해남북도의 곡창지대를 비롯하여 강원도와 개성을 강타한 수해로 인해 1995년 전체 수확량의 9%에 달하는 곡물 피해(쌀 36만톤, 옥수수 9만 2,000톤)를 입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 추수기부터 1996년 추수기까지 북한이 도입해야 할 필요곡물량은 약 141만톤이었으나, 보고서 작성 당시까지 상업계약, 구상무역,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해 도입한 총 곡물량은 약 84만톤에 그쳐 약 62만톤의 추가 식량도입이 필요하였다.

이같은 식량부족으로 인해 하루 평균 600g이던 일반주민에 대한 배급량은 1996년도 들어 300g으로 낮추어졌으며, 추수 직전인 8월~9월경에는 일부지역에서 200g~250g까지 떨어졌다. 1996년 8월 북한을 방문한 토니 홀 미 하원의원과 유엔인도국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1996년) 또다시 대홍수를 겪은 북한은 현재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1996년 6월부터 정권수립후 처음으로 감자를 배급곡물로 활용하였으며,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식량공급의 자체 해결을 지시하였다. 이외에도 식량구입을 위한 지방당국과 중국·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물물교환을 허용하였고, 지방의 자체예산 집행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식량은 물론 「중앙배급체계(public distribution system)」를

통해 전달되는 대부분의 생필품도 1996년도에는 일반주민에 대한 배당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더욱이 의약품 부족, 치료시설의 낙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 6월 제2차 대북지원계획을 마련하고 1996년 7월부터 1997년 3월까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북원조액을 총 4,363만 달러로 결정하였다. 이 가운데 「세계식량계획(WFP)」을 중심으로 한 곡물 등 식량지원은 2,680만 달러로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유엔인도국을 통해 식량 및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였고, 중국은 개별적으로 1996년에 50만톤의 식량(무상지원 포함)을 지원하였다. 조총련은 쌀 1만톤을 전달하였고, 파키스탄도 쌀 5,000톤을 제공하였다. 「국경없는 의사회(MSF)」도 국제민간단체의 자격으로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하고 의료진을 파견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미 1995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한 바 있다. 1995년 북한당국은 식량사정이 날로 악화되자, 일본정부에 쌀 잉여분의 일정기간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쌀도 전제조건이 없으면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6월 북경에서 1차 남북한 「쌀회담」이 개최되었고, 회담 결과 한국정부는 북한당국에 15만톤의 쌀을 아무런 조건없이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1995년 9월부터 1996년 9월까지 1년

동안 14억 5,000만원(179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제공하였다. 이는 한국내 76개 단체와 75만명의 개인으로부터 모금된 금액을 밀가루, 분유, 식용유, 라면 등의 물품으로 지원한 것이다. 그리고 1997년 1월에는 밀가루 300톤과 겨울용 양말 1만 5,000켤레 등 1억 3,000만원(약 16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을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일본도 1995년 6월 30일 북한과의 1차 회담을 통해 무상 15만톤을 포함하여 30만톤의 쌀을 지원키로 합의하였고, 1995년 10월 3일에는 20만톤의 쌀을 연불조건으로 추가 제공키로 합의하였다.

이같이 심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당국은 엄격한 배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돈으로 식량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두 번씩 식량을 배급받아 생활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식량배급제는 「국가식량배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1952년부터 실시되었다. 일부계층에게만 적용되어 오던 식량배급제는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에 의거한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할데 대하여”가 발표되면서부터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식량배급제는 절대 공급부족인 식량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식량배급을 통해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무위도식자를 배제하고 노동의 신성함을 양양하며, 배급자 또는 지배자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

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표 6> 1인당 1일 식량배급량

(단위: g)

| 연 령 | 0~4세 | 5~14세 | 15세 이상 | | |
|------------------------------|------|-------|------------|-------------|-----------|
| | | | 일 반 노동자 | 중노동자 군 인 | 병· 노약자 |
| 배급기준량 | 300 | 500 | 700 | 800 | 300 |
| '73이후 전쟁비축미 월 2일분 공제 | 260 | 433 | 607 | 695 | 240 |
| '87이후 절약미 10% 공제(식량사정악화시) | 234 | 390 | 547 | 624 | 234 |

<출처> 통일원, 『'95 북한백서』, p. 289.

노동자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의 양은 주로 직종과 성분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작업성격에 따라 많은 활동과 체력 소모가 요구되는 직종과 특수한 일이나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하루 800g 또는 그 이상의 양곡이 배급된다. 둘째, 생존의 필수조건인 식량배급은 개인의 정치적 지위와 직업에 의해 결정되며, 각자의 성분분류에 따라 각기 등급으로 나뉘어 차등 적용된다.

물론 북한당국이 식량배급과 관련한 등급 구분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가장 높은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김일성의 가족과 특수 외빈이다. 세번째 높은 10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각료급 이상의 노동당 고위간부이며, 이들은 「10호상점」을 통해 식량을 배급받는다. 수감자 또는 최하위 등

급인 1등급으로 분류된 자는 생명유지에 훨씬 미달되는 하루 200g 이하의 양곡만을 배급받았다.

북한주민들은 일반노동자 기준으로 하루 700g씩 계산된 식량을 15일에 한 번 배급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1973년 이후 전쟁비축용, 조국통일저축미, 절약미, 애국미 등의 명목으로 매월 배급표에서 5~10일분의 식량을 공제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특히 1995년과 1996년의 여름 대홍수로 인해 감량배급이 실시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배급이 몇 달씩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배급량이 감소하고 배급이 지연됨에 따라 대부분 북한주민들은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을 통해서 또는 농촌지역에 있는 친인척으로부터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고 있지만, 곡물이 절대 부족하고 사적 경제활동이 철저히 감시·통제되기 때문에 이것마저 여의치 않다.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출하는 북한주민의 증가와 일부 산간지역에서의 소규모 폭동발생 보도 등은 이같은 식량난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로 미루어 짐작할 때 북한주민들이 겪는 식생활에 대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북한주민에게 배급되는 곡물은 일반적으로 쌀과 옥수수 또는 밀을 섞은 혼합곡이다. 평양의 경우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이전까지 대체로 쌀과 잡곡의 혼합비율이 7:3이었으나 축전 이후에는 거꾸로 3:7로 바뀌었다.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는 5:5의 비율이었던 것이 2:8 또는 그 이하로 쌀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쌀을 선호하는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혼합곡에 포함된 쌀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

른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곡물의 절대부족에 따른 식량난 타개의 일환으로 북한당국은 특이한 대체식품을 개발하고 방송이나 각종 선전물을 통해 이들 식품의 조리방법을 선전하고 있다. 북한이 개발했다는 대체식품은 옥쌀, 남새밥, 혼합국수, 속도전 가루 등인데 이러한 대체식품의 주목적은 밥량을 부풀리는 데 있다. 따라서 이들 식품은 순간적으로 배만 부르게 할 뿐, 조악하고 거칠어 소화기계통에 부담만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통제를 위해 무단결근하는 자의 배급을 결근한 날짜만큼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직장에 나가지 않는 주민에게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식량을 배급하지 않는다. 또한 주민들이 항상 허기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용해 김일성·김정일의 생일 또는 기념일에 비축된 식료품을 주민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당기관과 행정기관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지도자에 대한 은덕과 고마움과 함께 충성심을 유도하고 있다.

1995년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문제」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동경대 교수인 하루히사 오가와(Haruhisa Ogawa)는 한 편지를 소개하였다. 북한에 살고 있는 북송교포가 북한을 방문한 상인을 통해 보내 온 그 편지 내용은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북한사회는 살아있는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은 줄어든 배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공

산품의 암거래 가격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쌀 한 상자에 85원, 옥수수 한 상자에 38원, 닭 한 마리는 200원, 신발 한 켤레는 150~200원, 사과 한 개에 10원 내지 20원 합니다. 노동자와 농부의 평균월급은 20원 내지 50원에 불과하니 얼마나 사정이 심각한 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리에는 도둑, 강도, 사기, 횡령 등이 횡행해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군대 및 경찰 전 병력은 전시태세를 갖추고 근거없이 주민들을 체포, 구금, 추방하는 등 북한사회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어디에 사회안전부 요원이 숨어 있는지 모르므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권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신체장애,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말미암아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빈곤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사회의 영원한 목표이며, 인류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인류역사상 최대의 참화였던 1·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를 권리로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노동보수제를 시행하는 북한당국은 근로자들의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보수를 분배하고 있으나, 노약자, 병자 등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비록 노동능력을 잃은 무의탁 노인들과 불구자들을 국가에서 무료로 돌보아 준다고 하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원칙하에서 국가가 예외로 인정하지 않은 무노동자의 제반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북한헌법 제56조에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볼 때 북한은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그리고 예방의학적 방침 등에 관련된 보건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72조에 규정된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에 기초하여 의료보호제, 사회보험제 및 사회보장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980년에는 「인민보건법」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의료기관의 확보율과 의료전달체계의 우수성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의학수준과 의료기술 및 보건부문 투자부족으로 인한 제약산업의 낙후로 무상치료의 권리보장은 형식적인 숫자놀음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보수의 1%를 공제하고 있다. 환자가 입원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보수의 20~40%를 공제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그리고 농장원의 경우 도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별도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평양의 의료시설은 집단진료 위주의 다른 지역 의료시설보

다 훨씬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난의 여파로 평양의 의료기관조차 필요한 상용약품이 부족한 형편이며, 의사들은 환자의 병을 완치시키는 데 관심이 별로 없다. 일반 환자에 대한 치료는 노동에 지장이 없을 만큼 치료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만성환자에 대한 치료는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환자를 일차 진료한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표 7> 북한의 의료시설 규모

| 유형 | 소재지 | 의사수 | 전문의 | 병상 | 주요 장비 |
|----------|-------------|-------|---|-----------|-------------------|
| 도의학 대학병원 | 도인민위 소재지 | 약200명 | 모든 과 | 800~1,200 | 기본진료 및 치료용 모든 장비 |
| 군인민병원 | 군인민위 소재지 | 약50명 |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실험과, 물리치료과, 결핵과, 간염과, 구강과, 고려치료과(14개과) | 100~200 | 엠브란스 X-선 현미경 |
| 리인민병원 | 리인민위 소재지 | 10명이내 |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산부인과, 고려치료과(6개과) | 5~20 | (규모가 클 때) X-선 현미경 |
| 진료소 | 산업장 협동농장 부락 | 1~2명 | | 1~2 | 청진기 등 |

<출처> 통일원, 『'95 북한개요』, p. 314.

귀순자 정재광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에는 북한전체를 담당하는 안전부병원과 평양을 담당하는 시안전부병원 등 두 곳의 사회안전부 관할 병원이 소재하고 있다. 이 두 병원은 사회안전부의 독자적인 외화벌이사업으로 인해 다른 병원보다 의약품 형편이 좋은 편이지만 안전부 고위간부 및 당·정 간부나 그 가족들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재광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병원의 경우 상비약조차도 구비하지 못해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의사들을 '진단서 의사'(치료는 않고 진단만 내리기 때문에 생긴 별명)라고 부르는 등 우회적으로 북한의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의사들을 통한 의약품 밀매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토론회에서 이를 비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의약품 부족현상은 북송교포들이 재일친척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품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의약품이라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같이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염·결핵·펠라그라(영양실조) 등 북한당국이 '42호 대상환자'라고 부르는 격리대상환자들이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단위마다 1개소이던 간염예방원·결핵예방원·42호병원을 각 군으로 확대·증설하여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근래에 와서는 환자를 위해 외화를 탕진하지 말라는 당국의 지시까지 내려와 외국에서 의약품 수입을 일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감기, 위장병 등은 민간요법으로 해결하고 있

으며 심할 경우에만 병원을 찾지만 입원생활은 불편하고 급식도 빈약하다. 환자가 변기청소를 비롯하여 병실을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는 보고도 있다. 농촌지역에는 폐결핵 환자가 많은데 약이 없어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민들이 해외친척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의약품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 많은데, 결핵약, 간염약, 항생제, 비타민이 주로 요청하는 약품이다. 북한주민들은 정신적 긴장과 지나친 노동 및 영양실조로 인한 위궤양, 불임, 신경병, 치질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

3. 환경권

환경권이란 인간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93년의 「비엔나 선언」은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과 폐기물들이 인간의 생명권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주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과 폐기물의 불법 덤핑을 규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존하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이 최대이윤이란 관점에서 이윤만 얻을 수 있다면 환경을 훼손하는 일을 꺼리낌없이 하는 반면, 비생산적 지출이라고 여기는 공해방지를 비롯한 환경보호사업에는 자금

과 설비를 투자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진정한 환경보호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는 북한식 사회주의제도를 실현시킬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북한은 사회주의제도 중에서도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창조적인 '주체사상'을 구현한 북한식 사회주의제도가 인민대중을 위한 환경보호사업을 철저히 실행하는 가장 우월한 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제도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 환경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모든 사업이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기본적 인권으로서 환경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78년 4월 18일 채택된 「노동법」과 1986년 4월 9일 채택된 「환경보호법」 및 1992년 4월의 개정헌법 등에서 근로자들의 문화위생적 근로조건과 자연환경 보호를 선언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그것도 기본적 권리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다.

북한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전역의 산림 황폐화, 공기·물·토양의 오염, 동·식물의 남획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건강

한 자연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훼손에 의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이 행한 각종 연설과 북한의 영화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대기오염 수준을 살펴보면, 북한의 대기오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함흥지구의 공해현상이다. 함흥지구는 북한의 대표적인 석유화학도시이다. 그중에서도 지역의 70%가 공장지대인 함흥시 홍남구역에는 홍남비료연합기업소, 홍남제약공장, 2·8비날론연합기업소, 홍남모방직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염소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공해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또한 1992년 12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지역을 촬영한 남북문제연구소의 영화 중 『다시 찾은 함흥』편 역시 홍남비료공장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해로 안개가 낀 듯 흐릿한 함흥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해문제 해결을 거의 해마다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한 김일성의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79년 6월 4일 “함경남도 당위원회와 중요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함흥에 올 때마다 화학공장들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완전히 없애도록 강조하였으나 화학공장들에서 아직도 유해가스냄새가 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듬해인 1980년 7월 10일에는 “함경남도 경제사업을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과업”이라는 연설을 통해 전체 당원과 인민들이 달라붙어 함흥지구의 공해현상을 막도록 지시했음에

도 불구하고 공장과 기업소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함흥시 내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당간부들이 공해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장과 기업소의 지배인들은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인체에 어떠한 해를 주고 있는지도조차 모르고 있다고 다시 비판하였다.

함흥지구의 공해현상이 그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1989년 8월 27일 “마전유원지를 잘 꾸릴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함흥지역의 공해현상을 막으려면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저 공해현상을 막자고 구호나 부르면서 소극적으로 달라붙거나, 공장과 기업소의 낡은 설비를 보수할 때 현 바지를 깎듯이 땀질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함흥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977년 4월 29일 “토지법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김일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청진주민들도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외 문평제련소와 원산화학공장 등이 위치한 원산, 김책제철소가 있는 제철도시인 청진,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황해제철연합기업소가 있는 송림, 유색금속공업지대인 나진 등도 대기오염현상이 심각한 지역이다.

공해현상은 북한의 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화 『폐허 위에 솟아난 조선』에서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는 평양, 함흥, 강계, 남포, 원산 등의 공장지역을 화면으로 보여 주면서 그들이 전후 폐허 속에서 현대적인 공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자랑하고 있다. 영화 『조국기행 함경북도』에서는 선철과

강철을 생산하는 김책제철소에서 솟아나는 매연을 볼 수 있으며, 영화 『조선의 새모습』에서도 공업화의 상징으로 공장에서 뿜어내는 검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수질오염 역시 심각하다. 김일성은 1989년 4월 20일 “평양시의 도시경영사업과 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평양시를 비롯하여 대동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잘 갖추어 놓지 않고 오수를 망탕 흘려보내기 때문에 대동강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수질오염을 지적하였다.

북한은 해양오염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북서태평양해양환경보존계획(NOWPAP)」의 제2차 전문가회의에서 「환경보호 및 토지관리총국(General Bureau of Environment Protection and Land Administration)」 명의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측 동해와 서해의 해양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로서 깨끗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만 함흥과 원산만에서 가끔씩 기름층이 형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당시까지는 해양오염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으나, 공업화가 진전되고 해상에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생물학적 집중화가 진행되면서 복잡한 문제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의주지역과 중국의 단둥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공장으로 인해 압록강 입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남북문제연구소가 촬영한 영화중 『원산지역을 찾아서』편은 원산공단과 인근 함흥공단에서 배출하는 폐수로 인해 바다가 크게 오염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6년 제7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대동강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36mg/l인데,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은 8.3mg/l이라면서 대동강의 깨끗함을 최초로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면서 자랑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전술한 1989년의 연설에서 “평양시의 도시경영사업에서는 상하수도관리문제, 오물처리문제, 공해방지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평양시 도시경영사업에서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하였다.

그외 북한의 남양, 회령 및 북한 제일의 철광산이 있는 무산 등과 중국의 도문시 등의 철광산, 제철소, 시멘트공장, 펄프공장, 화학섬유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및 도시폐수로 인해 두만강의 수질오염도 심각하다. 압록강 역시 북한과 중국 양쪽의 탄광, 시멘트공장, 그리고 도시에서 나오는 산업 및 생활폐수에 의해 식수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들 산업시설과 도시에서 나오는 폐수와 유독성물질은 단순히 강과 하천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해양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다.

북한의 수질오염의 심각성은 이미 1960년대에도 지적되었다. 김일성은 1962년 9월 5일 한 연설에서 “아직도, 광산, 탄광들에서는 나쁜 물을 강에 막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북한의 수질오염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일성은 또한 평양방직공장의 염색공장과 황해북도 신평광산에서 흘러드는 유독성물질 때문에 대동강에서 송어를 비롯하여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의 토양도 심각한 오염으로 몹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토양이 오염되고 황폐화된 원인은 우선 다량의 비료와 농약의 사용에서 찾을 수 있지만 부족한 식량의 증산을 위해 벼와 옥수수만을 계속 심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 식량의 양적인 증산을 위해 비료를 가장 잘 흡수하는 작물인 옥수수의 대규모 재배는 토양 황폐화의 주원인이 되었다. 또한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토양이 산성화되면서 지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농약의 다량살포로 인해 토양이 크게 오염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나타났다.

한편 광범위한 벌목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김일성은 일찍이 1958년 5월 11일 “광강도 당단체들의 과업”이라는 연설에서 “흔히 일제놈들이 나무를 망탕 찍어 썼다고 욕하지만 나라의 주인이 된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도 나무를 망탕 찍어 썼다”고 무단벌목을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1965년 5월 25일 “현시기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엄격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화전을 일구는 현상이 계속되어 “이번에 기차로 함흥에 가면서 보니 신성천에서부터 양덕고개일까지 골짜기의 산들을 거의 다 벌거벗겼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사태가 나고 대동강바닥이 높아지며 룡라도 같은 섬들이 자꾸 커집니다”고 산림파괴에 의한 토지유실을 비판하였다.

산림파괴는 북한주민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

서도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다락밭 건설이었다. 김일성은 1976년 10월 14일 “알곡 1,000만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알곡증산을 위해 다락밭 만들기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 수년내에 20만 정보의 다락밭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1989년 4월 20일의 연설에서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들기로 계획한 것은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망탕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들다가는 술한 땅을 못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다락밭 건설이 산림 황폐화의 원인임을 시인하였다.

다락밭 외에 뚝기밭도 산림파괴의 큰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배급이 지연되자 주민들은 식량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모두 산에 올라가 화전민의 경작방식대로 풀과 나무를 베고 무조건 밭을 만들어 옥수수를 심었던 것이다. 식량부족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행동을 당국도 제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증언이다.

산림남벌과 다락밭 및 뚝기밭 건설로 인한 산림 황폐화의 실태는 남북문제연구소가 촬영한 영화에서도 볼 수 있다. 『국토의 최북단 청진, 나진』편에서 평양에서 청진으로 가는 도중 차창 밖을 촬영한 장면들은 다락밭 건설로 인한 철로주변 야산의 황폐화와 이로 인한 산사태의 흔적, 그리고 땀감용으로 산림을 남벌하여 주택가 주변에 나무가 거의 없음을 잘 보여 준다. 또한 『두고은 고향 신의주, 영산』편에서는 다락밭으로

인해 산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를 뚜렷히 볼 수 있다.

북한은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1996년 11월 27일 「국토환경보호절」을 제정하고 매년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로 지키도록 선언하였다. 이는 북한이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전군중적 운동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노력동원을 유도하기 위한 대내적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최근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되고 국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인권문제로 다루어지는 추세에 대비하는 목적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오염과 파괴가 없는 인민의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선전에 불과하다. 그 선전의 허구 속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환경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생활현실 속에서도 환경의 오염과 파괴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4. 소유권

사유재산제의 핵심은 생산수단의 사유인가, 아니면 생존에 필요한 물적 수단의 보장인가에 있다.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재산권 보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느냐 않느냐에 있다.

북한은 헌법 제20조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21조에는 “국가소유권의 대상

에는 제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에는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이 포함되며, 나라의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키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 제22조에서 북한은 국가소유 다음으로 중요한 협동단체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며, 국가가 협동단체소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협동단체는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단체소유에 대한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제23조)시켜 국유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를 우선 보호하는 북한이지만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개인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헌법 제24조에서 북한은 개인소유를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 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제84

조)이며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개인재산은 국가와 협동단체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체계상 하위의 개념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에서의 개인소유마저도 국가의 통제와 경제난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당의 통제는 가정에서 쓰는 생활필수품의 구입에도 미치고 있다. 대개 물건은 월별로 인민반을 통해 할당되며, 품목은 생필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구매권의 배당은 인민반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물품부족으로 인해 이같은 물건조차 제 때에 배당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이 북한에서는 하층은 생필품조차도 국가의 통제와 물품부족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게 되기까지는 복잡하고 힘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필품과 마찬가지로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같은 고가품도 구매권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일반주민이 이러한 고가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 돈을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매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열성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구매권을 배정받기 위해 강제노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거나 당 간부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다.

북한은 세금을 폐지한 최초의 정부라고 자랑하곤 한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유일한 고용주로서 임금과 물가를 책정하고 이윤이나 잉여생산물을 모두 세입으로 취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생산물의 대부분을 국가에 바쳐야 하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세금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는 개인(여성)의 부업이 성행하자 이들을 가내작업반에 가입시켜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바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같은 과세에서 면제되는 유일한 사유재산은 개인의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 곡식 등의 작물뿐이다.

주민들이 소유한 제한된 사유재산조차도 국가가 준 것일 경향이 많다. 이 경우 과연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김일성·김정일이 선물로 하사한 세탁기, TV, 가전제품 등이 그것이다. 개인이 이런 물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은 충성심이 결여된 행동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합부로 다를 수 없다.

더욱이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전횡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평양에 세워진 김일성 기념동상을 도금하는 데 580kg의 금이 필요하자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특별징세를 부과했다. 일정량의 금을 공출하도록 지시받은 평양과 각 지역의 여성동맹은 소속 가정을 강압해서 할당량을 채웠다. 비록 북한당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등을 국가에 헌납하였다고 선전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제일 조총련동포들은 복송된 가족과 친척의 안위를 위해 북한에 돈과 물품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보내진 현금과 물품의 상당 부분은 공식적, 비공식적 명목으로 북한당국에 들어가고 있다. 더구나 북한당국이 헌납을 빙자하여 조총련동포가 북한과 합작으로 설립한 합영회사 중 2~3개를

물수했다는 보도도 있다. 결국 북한에서는 국가가 언제라도 개인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에는 주택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리 소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배정받은 주택이라 해도 주택부의 통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시가 내려오면 주택을 비워야 한다. 또한 국가소유인 주택의 수리 및 보수는 응당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에서는 자재가 없다는 핑계로 보수에 소요되는 자금과 자재를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런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비가 새도 속수무책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만 한다. 주택을 보수하려면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목재, 페인트, 모래 등)를 개인이 준비해 놓고 주택보수사업소에 기술 지원을 요청해야 보수가 가능하다.

북한의 모든 주택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는 물론 개인에 의한 주택건축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규격화되어 건축된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신분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대형식으로 배정받아 사용한다.

주택배정은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차별을 두며, 특호에서 4호까지 5등급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일반노동자들에게는 2~3호주택이 배정되며, 당 간부들에게는 40평 내지 60평 정도의 4호 및 특호주택이 배정된다. 4호 및 특호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15%를 차지한다.

최고급주택인 특호주택은 단독 고급주택으로 당 및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또는 인민군 소장 이상의 고위간부들에게 배정된다. 신형 고층아파트인 4호주택은 중앙당 과장급과 정무원 국장급, 인민배우, 공훈예술인, 대학교수, 기업소책임자 등에게 돌아간다. 또 중급의 단독주택과 신형 아파트인 3호주택은 중앙기관의 지도원이나 도급기관의 부부장 이상 또는 기업소부장 및 학교교장 등에게 배정된다.

2호주택은 일반아파트로 도급기관의 지도원과 시·군의 과장급, 기업소과장급, 학교교원과 천리마작업반반장 등에게 배정된다. 1호주택은 집단공영주택과 농촌문화주택, 그리고 구역 등으로 일반근로자와 사무원, 협동농장원, 농촌지역주민 등에게 배정된다. 1호주택은 전체 도시주택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배정받지 못해 1~2년 씩 별거를 하는 사례가 많으며, 일반주민들은 방 1, 부엌 1의 2칸주택에서 두 세대가 동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조립식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벽의 블록이 너무 얇아 사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집단주의적 주생활 양식으로 인해 일반주택 건축시 개인과 가족의 문화생활을 위한 고려는 배제된 채, 주택은 침식위주로 설계되며 생활공간도 집단의 공동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계층에 따라 주택규모와 시설물을 달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분상승 욕구를 고취시키고 당의 지시에 순

종하도록 하는 통제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같이 북한은 주민들의 주거공간도 일상적 감시와 동원 및 지휘·통제에 용이하도록 만들고 있다.

5. 근로권·휴식권

북한헌법 제70조는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나타난 노동에 관한 권리는 사실상 권리보다는 의무에 가깝다.

헌법 제29조에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업을 모른다는 것은 누구나 노동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열성과 창발성은 노동의 강도를 한층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라는 헌법 제30조이다. 이 조항에는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라고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강도높은 강제노동에 관한 명시일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83조에는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국민은 노동에 자발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82조에서는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함으로써 강요된 노동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정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4조 규정은 “생산장정의 높은 속도”를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노동을 요구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노동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집단노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주민의 의무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 로동법」(1978.4.18 최고인민회의 제정) 제1장 「사회주의의 로동의 기본원칙」, 제2조의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라는 명시와 제3조의 “사회주의 하에서 로동은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로동이다”라는 규정, 그리고 제4조의 “사회주의 하에서의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라는 규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로동법」 제2장의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라는 규정과 제3장 「사회주의 로동조직」, 제25조의 “사회적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나라의 노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것”이라는 규정, 그리고 제27조의 “로동 계획화는 로동조직을 바로 하며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기초”라는 규정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16세 이상은 누구나 노동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16살부터 몇 살까지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은 살아 있는 동안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분배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동할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한에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유노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노동조합 형태인 「조선직업총동맹」은 단체조직권이나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갖지 못하며, 노동당만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직업동맹은 단지 형식상 존재할 뿐이다. 1964년 6월 당 중앙위 제4기 9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기업관리에 대한 직업동맹의 '감독통제적 역할'이 폐지됨으로써 직업동맹은 당의 완전한 통제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직업동맹은 “조선로동당과 로동계급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당의 적극적인 방조자”로 규정되었다.

북한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노조활동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여 강력히 다스리고 있다. 형법 제59조에는 직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의 산업, 운수, 상업, 화폐유통, 신용제도를 파탄·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61조에는 직무를 태만하게 이행하는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징역종료후 4년간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정은 노동자

들의 자발적인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인 노동에 대한 금지조항은 없다.

한편 북한은 헌법 제71조에서 국민은 휴식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사회주의 노동법 제62조에도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노동법은 “모든 로동자들은 연간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휴가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장 정치조직의 선전선동과 압력에 의해 휴가를 반납할 수밖에 없으며, 김일성 부자의 생일이나 국가적 명절에만 1~2일 정도 휴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한다”는 노동법 제33조의 규정처럼 8시간 휴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본 일과 이외에 추가 노력동원, 각종 학습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혹사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노동사업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계획해 놓고, 초과 달성을 위해 천리마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속도전, 80년대 속도창조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간의 연장은 불가피하다.

6. 직업선택의 자유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장배치는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분별 수요대로 할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이며,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직장배치시 일차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당사자의 성분과 당성이라는 정치적 측면이며, 그 다음이 학력 및 자격, 활동력, 근무평점 등 종합적인 직무수행능력이다.

직업배치는 대체로 ‘무리(집단)배치’가 주를 이룬다. ‘무리 배치’란 당과 수령의 지시에 따라 공장, 탄광,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집단적으로 인원을 배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단배치에 따른 불만으로 만약 출근하지 않으면 배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을 수 없다. 귀순자 신광호(1990.10 입국)는 “무리배치가 되고 나면 고향에 갈 기회를 주지 않아 부모형제가 죽을 때까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시·군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배부하는 서류를 작성한 다음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장이 이에 대한 평정서를 작성해 학교의 정치담당 부교장에게 넘긴다. 그리고 정치부교장이 이것을 다시 졸업 약 3개월 전에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 제출하면 이 문건을 심사하여 직장을 배치하게 된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힘든 일

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해 탄광, 농장 등에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대군인들은 물론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을 이곳에 집단배치하고 있다.

대체로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기 3년전부터 신원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출신성분을 파악한다. 특히 성분이 나쁜 학생들, 즉 친척 중 유일사상체계를 위반 자가 있거나 한국에 친척이 있는 자, 한국전쟁때 월남한 가족 또는 북한에 반대하여 치안대에 가담한 집안, 지주집안 출신의 학생들은 농촌, 탄광 등 힘든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 간부의 자제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된다.

어떠한 직장에든 일단 배치된 후에는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건 맞지 않건 간에 직장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직장을 무단 이탈하면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없으며, 직장이 없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식량을 비롯한 모든 배급에서 제외된다. 북한은 이미 1953년 8월 31일 기업소 및 기관의 노동자, 사무원들이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노동력의 유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력의 완전 장악을 통해 계획경제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통한 주민들의 제도적 규제는 곧 심리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며, 또한 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7.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란 교육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적 조건의 정비(교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장학제도의 시행 등)를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북한헌법 제73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고 정치적·계급적 지위와 성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성분이 좋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 상급학교로의 진학희망자가 대학입학을 위한 국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해도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주요대학으로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 주요대학은 6촌까지, 일반사범대학은 4촌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입학 예정인원은 지역별로 책정되는데 성분이 좋고 간부가 많은 평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된다. 군 및 구역 행정위원회의 대학생 모집과는 군당 및 구역당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의 자녀들을 지명 추천한다. 최근에는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북송교포 자녀들이 이같은 지명 추천에 포함되기도 한다고 귀순자 김영성은 증언하였다. 북송교포들은 자녀의 대학입학을 위해 학교측에 일류 대학일 경우 방송차나 화물차, 이류 대학일 경우 몇 대의 칼라 TV를 기증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그들의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 발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해 왔으나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는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헌법 제43조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교육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사상적 요새' 점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인민의 인테리화'를 교육의 당면목표로 설정, 투자를 강화하여 왔다. 따라서 197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11년 무료의무교육제'나 1977년에 제정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공산주의적 인간교육을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은 정치사상교육과 기술교육 위주로 편성된다. 인민학교 4년 동안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린시절」, 등을, 고등중학교 6년 동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현행 당 정책」 등의 과목을

배우고, 이외에 방학기간에는 김일성·김정일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들을 답사한다. 또한 고등중학생들은 견학명목으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파견되어 1주일간 노동을 하여야 한다.

인민학교 4년 동안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 및 공산주의 사상교육과 관련된 교육시간은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가 발행한 인민학교의 국어 교과서의 경우, 국어 본래의 영역인 문법, 어휘, 문장 등 언어생활에 관한 단원은 33%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67%는 정치사상성을 강조하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어린이 동화책의 내용도 전체의 73.1%가 집단주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 주체성, 혁명의식 등 정치사상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실과 근면, 효도, 절약, 우정 등의 비이데올로기적 내용은 26.9%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의 아동교육은 교육시간 혹은 교육내용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

인민학교 1·2학년의 구체적인 교과과정은 국어를 비롯하여 수학, 체육, 음악, 도화공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공산주의 도덕의 7개 과목과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3학년은 자연, 4학년은 위생독본이 추가된다. 인민학교 1학년에 입학한 어린이에게는 제일 먼저 제1과 「보고싶은 원수님」을 배우면서 “원수님의 사진은 언제봐도 기뻐요. 우리 모두 보고싶은 김일성원수님”을 암기시키며, 제7과 「입학하는 날」과 제14과 「짧은 글짓기」 단원에서도 “아버님 원수님

을 모시고 입학날을 즐기는 우리의 마음은 훨훨 하늘로 날아 오를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짧은 글을 하나 지어도 아버지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을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 나타나게 지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4학년의 경우, 국어 제1과에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라는 단원에서는 “하늘 땅의 끝까지 따릅니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립니다. 수령님의 그 은혜 길이길이 전하며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립니다”라며 투철한 충성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이라는 과목에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활동을 미화한 이른바 ‘혁명전통교양’을 삼입함으로써 김일성이 인민학교 시절부터 남다른 식견과 투철한 혁명정신을 갖고 있었다고 주입하는 등 우상화 내용을 교육한다. 최근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 이야기」라는 교과목을 인민학교의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김정일 우상화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고등중학교부터는 주체사상에 대해 이론적인 기초학습을 시작한다. 고등중학교 교육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사상, 이론,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주체사상이론을 가르친다. 사상교육을 위한 학습과목이 고등중학교 교과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과목의 25%로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국어, 한문, 외국어, 역사는 물론

자연계 및 예·체능계 과목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위상화를 포함한 정치사상 교육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념교육의 비율은 훨씬 높다. 실례로 고등중학교 1~3학년 국어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총 75개 단원 중 정치사상성을 주제로 한 단원이 54개로 72%를 차지하며, 그 중 김일성과 그 가계의 위상화를 주제로 한 단원이 42개 단원으로 78%를 차지한다. 고등중학교 고등반부터는 사로청 조직에 가입하여 당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학습한다.

한편 학생들에게도 ‘자원노동’이 요청되고 있다. 북한은 이론과 실천을 병행한다는 교육방침을 설정하고 ‘일하면서 배우자’라는 구호를 내세워 실습활동을 장려하는 등 인민학교 어린이들조차도 노력동원에 이용하고 있다. ‘농촌지원’, ‘경제건설’, ‘좋은 일하기 운동’, ‘꼬마계획’, ‘선전대활동’, ‘자연개조사업’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하여 아동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꼬마계획’에서는 폐품수집, 노력봉사 활동 등을 통해 ‘소년호 열차’ ‘소년호 비행기’ ‘소년호 땅크’ ‘소년호 트랙포트’ 헌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밖에 학기중에는 김일성 전적지 답사를 실시하고, 방학 중에는 농촌일손돕기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다.

북한의 아동학습에는 소년단활동과 같은 조직생활과 단체생활이 필수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민학교 2학년에 들어서면 모든 어린이는 소년단에 가입,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 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소년단에 대해 김정일은 “<소년단원들은 당의 참된 소년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이 소년단원들 앞에 내세우는 전투적 구호이다. 소년단원들은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당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아동·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고무시키고 있다.

고등중학교와 대학교 학생은 1년에 1개월의 노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노동은 대개 야간의 건설작업과 미숙련 작업, 그리고 모심기와 수확 등의 농사일이다. 학생들은 여기에다 추가로 1년에 약 150일을 ‘자원자’로 일해야 한다. 이같은 자원학생들에게 김정일은 공사기간의 단축을 위해 ‘70일 전투’를 설정하기도 했다. 또한 ‘속도전 청년돌격대’로 하여금 철도, 전력과 기타 건설공사에 종사케 하면서, 1988년 북한당국은 정부수립 40주년 기념일 이전에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일 전투’를 선포하기도 했다.

IV.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실태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정치범수용소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수용소를 ‘OO호 관리소’라고 부르고 있으며, 주민들은 ‘통제구역’, ‘특별독제대상구역’, ‘이주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등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이 정치사상범을 수용하기 위해 많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을 탈출한 체험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국제사면위원회(AI) 등 권위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가정치보위부 정보원으로 일하다가 1982년 귀순한 김용준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정보는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하여 탈출한 강철환·안혁, 회령수용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탈출한 안명철, 1980년대 중반 국가안전보위부 경비대원이었던 최동철 등에 의해 추가로 제공되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한국전쟁 당시 노획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집단수용소를 해방 이후 194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해방 직후에는 악질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이 수용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치안대 가담자가 수용되었다.

이같은 수용소가 오늘날과 같은 정치범 유배소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56년 이른바 '8월종파사건' 이후이다. 북한당국은 연안파 등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처형을 면한 종파사건 연루자 및 그 가족들을 산간벽지에 집단수용시켜 특별 관리함으로써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함과 동시에 반김일성 분자들의 세력 확산을 막고자 하였다.

이후 북한은 1966년부터 1년간 주민재등록사업을 통하여 100만 노동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전주민을 3계층 51부류로 나누는 과정에서 적대계층의 일부를 수용소에 수감시켰다. 당시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 중 종파분자 및 반혁명분자 약 6,000명은 인민재판에 의해 처형되었고, 처형에서 제외된 1만 5,000여 세대 종파연계자 및 가족 7만여 명은 내각결정 제149호에 의거하여 산간벽지에 설치된 149호 대상지역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은 이들과 특별히 분리되어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었다.

초창기에는 수용소 면적이 한국의 면단위에 해당하는 1개 리 정도에 그쳤으나, 1973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 활동이 시작되면서 수용소와 수용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80년 노동당 6차대회를 통해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한 이후 세습체제를 반대한 당·군·정 간부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최소한 4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1982년에는 8개 정치범 수용소에 약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사회와 격리된 채 종신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이후 1980년대 말 동구의 붕괴로 자유와 개혁의 바람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더욱 늘어났으며, 수용인원도 약 20만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같은 수용소는 나치 독일제국하의 아우슈비츠나 구소련의 시베리아 유형장을 능가하는 가혹한 인권유린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상 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치사상범의 대상 및 처벌

북한은 정치사상범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하여 정치적으로 숙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 죄목을 붙여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한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되살리려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강한 독재를 실시합니다”고 언급함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정적들이나 사회주의 건설에 비협조적인 자들을 정치사상범으로 몰아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현행 북한형법상 정치범을 처벌하기 위한 죄명으로는 ‘국가전복음모죄’, ‘반동선동선전죄’, ‘조국반역죄’ 등이 있다. 제

44조의 국가전복음모죄는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로 반당·반김 일성 분자들이 이 죄목에 해당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유배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이 자신의 비판자나 정적제거시 등 조항을 적용하여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수감한 인원이 1만 5,00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제46조의 반동선동선전죄는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를 징계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는 주로 해외정보유입을 차단하고 내부동요를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초기에는 북송교포 및 월북자와 남북억류자들 중 불평분자들을 처벌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동구 및 구소련 붕괴 이후 내부 단속을 위하여 해외유학생 및 해외근무자나 출장자 중 해외실정을 주위에 유포한 자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적용되고 있다.

제47조의 조국반역죄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일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최근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국외 탈주자가 늘게 됨에 따라 동 조항에 의해 처형되거나 혹은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수용되는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북한은 정치사상범을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 제44조로부터 55조까지 12개 조항에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심의와 재판절차를 밟아서 교화소에 보내고 있으나, 정치사상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에서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죄가 없더라도 무혐의 방면은 없다. 그리고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현황 및 운영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및 자강도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정치범수용소의 전체 규모와 정치범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함경북도 회령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귀순한 안명철(1994.10 입국)은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농장지도국) 산하에만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었으나, 중국 국경에 인접하여 위치가 탄로난 함북 온성군 2개소와 평양에 인접하여 비밀탄로의 우려가 있었던 지역 등 5개소는 폐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10개이었던 정치범수용소가 평남 개천의 「14호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관리소」, 함북 회성의 「16호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관리소」 등 5개소로 통폐합되었고, 전체 수용인원 약 20만명도 이곳으로 재배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수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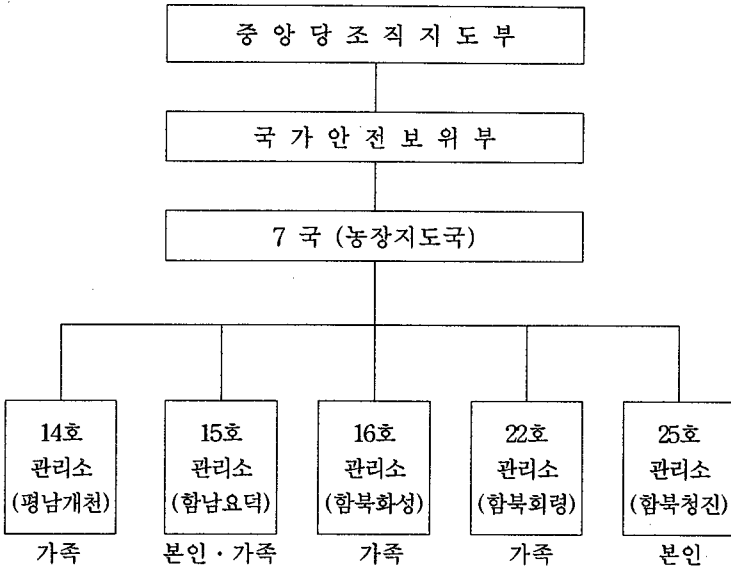
설이 폐쇄되고 수감자들이 기존의 수용시설에 분산 배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이들 수용소들이 대부분 오지나 탄광지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승호리수용소」(1991년 1월 폐쇄)의 경우처럼 비밀탄로와 노출 방지를 위해 지하감옥 형태로 설치된 곳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어 그는 「승호리수용소」와 함북청진의 「25호관리소」는 정치범 본인만이 수용되는 1급 정치범수용소라고 밝혔고, 이외에도 국가안전보위부 '3국' 내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여론이 높아지자 이창하 조선인권연구협회 서기장은 1995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국제사면위원회 조사단을 초청하여 「사리원교화소」를 방문케 하였다. 북한당국은 국제사면위 조사단원에게 방문 당시 북한의 전체 죄수는 800~1,000명이며, 이들은 3개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정치범 240명은 「형산재교화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귀순자들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구역'이다.

<표 8>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현황



해산된 수용소

| 명칭 | 위 치 | 해산일시 | 해 산 이 유 |
|-----|--------------|----------|------------|
| 11호 | 함북 경성 관모봉아래 | '89년 10월 | 김일성 별장건설 |
| 12호 | 함북 온성 창평로동지구 | '87년 5월 | 국경인접, 비밀탄로 |
| 13호 | 함북 온성 종성로동지구 | '90년 12월 | 국경인접, 비밀탄로 |
| 26호 | 평양 승호구역 화천동 | '91년 1월 | 평양인접, 비밀탄로 |
| 27호 | 평북 천마 | '90년 11월 | 이 유 불 명 |

* 귀순자 안명철의 증언에 따른 수용소 현황표임.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북한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의 수용자들에게는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출소시에는 수용소 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치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데 이를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이들은 강제수용소에서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하층 생활을 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이 되어 직업, 여행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이 출소후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10년 가중된다.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중 함남 요덕의 「15호관리소」만이 유일하게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수용소는 15호관리소 내의 혁명화구역뿐인 셈이다.

혁명화구역에는 대체로 북한의 엘리트와 조총련 간부와 인연이 깊은 북송교포나 그 가족들이 수용된다. 북한당국은 이

들을 수용소에 수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가한 뒤 사회에 복귀 시킴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순응케 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사상범들은 모두 종신수용소에 수감된다. 귀순자인 안명철과 강철환의 증언에 의하면, 종신수용소에 수감된 사람 중 극히 일부는 종신수용소에서 혁명화구역으로 이감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의 경우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되면 다시는 사회로 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이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수용소 조직 및 규모

각 수용소 규모는 보통 50~250km² 정도이며, 각 수용소에 는 약 5,000여 명 내지 5만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

수용대상의 선정 및 관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관 할지도부 지도하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7국 내의 각 수용소에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소장 예하에 정치부, 보위부, 관리부, 경비부, 후방부 등이 조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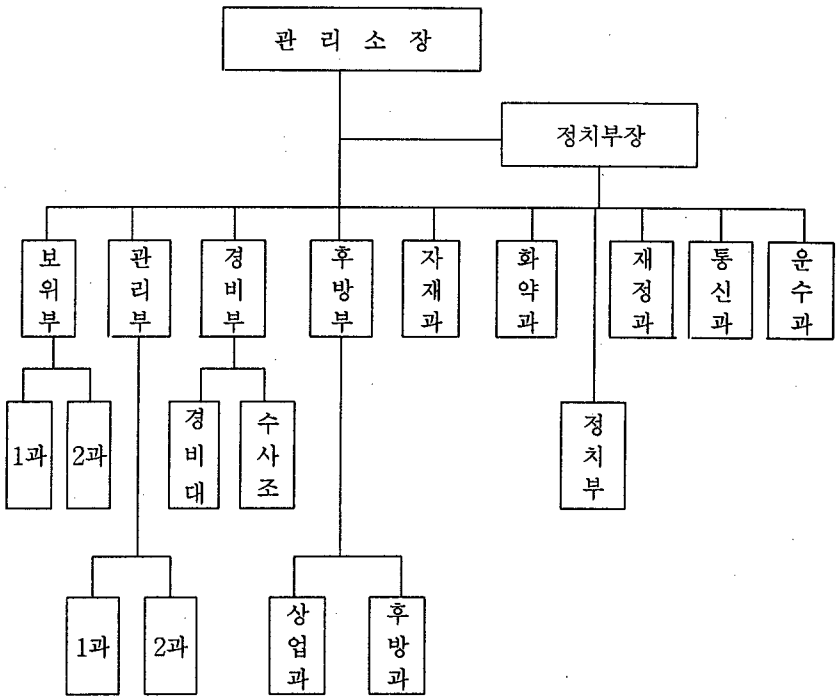
정치부는 보위부원, 경비부대의 사상동태 및 비리를 감시 하거나 처벌하는 부서이며, 보위부는 수용자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고 이들 중 악질분자들(도주, 살인, 불평분자 등)을 색 출하여 처형하거나 또는 보다 강도높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리부는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여 각 수용소에 주어진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경비부는 수용소의 외곽경비 업무와 함께 수용소 내부에서 폭동이나 소요 발생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외에도 보위부원과 경비부원들의 식량이나 부식을 공급하는 후방부와 특별독재대상구역 안에 필요한 건설용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과, 탄광에 필요한 화약을 제공하는 화학과 그리고 재정과, 운수과, 통신과 등이 조직되어 있다. 이들 부서 중 수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보위부와 경비부이다.

수용소 경비 실태

각 수용소에는 외곽경비를 위하여 3~4m 높이로 이중삼중의 철책선과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조망을 따라 1km 간격으로 약 7m 높이의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다. 감시망 루에는 AK자동소총과 수류탄 및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경비병이 지키고 있다. 이와 아울러 경비부의 중무장한 경비대원은 군견과 함께 수시로 외곽순찰을 하고 있으며, 경비취약 지역에는 경비대원이 24시간 매복되어 있다. 따라서 탈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간혹 열악한 수용소 환경을 참지 못하고 탈출하다가 체포된 자들은 재판도 없이 공개총살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진다. 수용소내에서 공개처형되는 숫자는 매년 1개소당 약 15명~20명 정도이다. 탈출하다가 체포된 자들은 반드시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되는데, 이는 다른 수용자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표 9> 수용소 조직표



* 북한에서는 수용소라는 표현 대신 '관리소'라고 표현하며 정치범을 '이주자'로 부른다.

** 동 조직표는 안명철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것임.

수용대상 및 절차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는 반혁명분자 색출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장한다. 수용대상자는 각 지역의 담당보위부 지도원이 색출하며,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심사만으로 수용이 결정된다. 평양의 용성구역 마람지구에 있는 「마람비밀초대소」가 대표적인 정치범 색출기관이다. 색출대상자에는 주로 반당·종파분자, 반혁명분자 등 김일성·김정일체제 위해분자를 비롯해서 과거 지주, 종교인, 친일파 및 김정일 후계체제 반대자, 해외탈출기도자와 그 가족 그리고 불순북송교포 등이 포함된다. 동구 공산권국가들의 붕괴 이후에는 해외실정을 잘 아는 유학생과 해외근무자 및 출장자 중 주민에게 외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유포한 자가 색출 대상에 많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수용자도 많다. 예를 들면 고려호텔 안내원이었던 '김명준'은 외국방문객의 짐을 운반해 준 대가로 약간의 사례비를 받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간첩혐의로 마람초대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간첩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북한당국은 '조국배반죄'라는 죄명을 씌워 그를 요덕수용소에 수용하고 3년간 강제노동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외에도 1995년 2월 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94 각국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김일성 사진이 실린 신문위에 앉았다는 죄명으로 체포되

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도 있다.

귀순자 김광호(1987.3 입국)는 인민반의 주민통제정책으로 겪은 피해에 대해 증언하였다. 김광호 부부는 인민반 반장에게 열쇠를 맡기고 출근을 했다가 당에서 내려 온 유일사상검열성원의 점검을 받게 되었다. 검열성원과 인민반장은 모든 가정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와 도서를 점검하였고, 김광호의 집에서 아이의 오줌에 젖어 훼손된 『로작』이라는 책을 발견하였다. 이 책의 맨 앞장에는 김일성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검열성원은 김일성 사진을 잘못 간수했다는 죄명으로 김광호 부부를 고발하게 되었고, 결국 김광호의 가족들은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북한에서는 “이 세상 힘들어 못 살겠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상점에 비누 한 장, 치약 한 개 파는 것이 없으니 이 곳이 상점이나”라는 식의 항의 한 마디만 해도 정치범으로 몰려 수용소에 수감된다. 1992년 10월 평남 순천소재 배급소에서는 식량배급을 받지 못한 여자 한 명이 “왜정시대보다 못하다”는 고함을 지르고 주위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여 집단 항의사태로 발전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사회안전부에 의해 해산되었으나, 그 여자는 당일 밤 가족과 함께 행방불명되었다.

어떤 이유로든 일단 정치사상범으로 낙인찍히게 되면 일체의 재산을 몰수당한 후 야간에 전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이송된다. 아무런 사전통보나 재판절차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척까지도 그들이 어디로 왜 끌려가는지 모르는 경

우가 많다. 설사 안다고 해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화를 두려워 하여 당국에 항의하거나 보다 더 상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어느날 이웃이 야간에 없어지게 되면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끌려 간 것으로 추측만 할 뿐 더 이상 이들의 행방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극도의 공포 정치로 인해 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체제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다.

수용자 대우 및 일과

정치사상범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 등도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친지들의 면회나 서신연락도 금지되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된다.

일상적으로 수용자들은 새벽 5시반까지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한 후 보위부원과 작업감독으로부터 인원점검을 받는다. 인원점검시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심하게 구타당하며, 3회 이상 지각할 경우에는 월지급 식량에서 하루분을 공제당한다. 작업은 조단위로 할당량이 주어지는데 5명이 1조가 되어 저녁 9시까지 진행한다. 저녁 10시부터 2시간 정도는 김일성 부자에 관한 덕담을 하거나 찬양노래를 부르면서 보낸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간 정도인데 각자 지참한 강냉이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저녁 6시경에 담당 보위

부원이나 감독, 인민반장 등이 당일 할당된 작업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목표에 미달된 경우 연장작업을 지시한다.

단체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소 내에서는 일체 상호방문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작업과 학습시간 이외에는 2명 이상 짝지어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다. 주간에도 통행증이 있어야 수용소내 마을 간의 이동이 가능하며, 만약 수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없어드는 경우 즉시 비상종을 쳐서 수용소 전체에 알리고 수색을 한다. 통행이 완전 금지되는 밤 10시 이후에 이동하다가 순찰자에게 적발되면 1개월간 중노동에 처해지며, 3회 이상 적발당할 때에는 수용소내 유치장에 수감된다.

통금 이후에는 보위부원과 작업현장감독 3~4명이 조를 짜서 매일 순찰하면서 가택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시 이외에도 보위부는 수시로 위장 수용자를 침투시켜 정치범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있다.

수용자의 식생활

북한의 일반노동자는 700g의 양을 기준으로 노동의 강도에 따라 쌀과 잡곡이 섞인 배급을 받고 있으나,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감된 정치범들은 더 강도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의 배급을 받는다. 가족세대의 경우 성인 1인은 주식으로 1일 장냉이 550g을 배급받고 있으며, 부식물로는 약간의 소금과 주 1회 정도 도토리로 만든 된장을

한 숟가락 정도 배급받고 있다. 그러나 작업을 태만히 했다고 판정되면 그 정도에 따라 수시로 배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한 달의 반 정도는 산나물이나 나무열매 또는 풀뿌리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

수용소에서 죄를 지어 독신중대에 수감된 수용자에 대한 주·부식은 더욱 열악해서 1일 강냉이 360g과 소금만이 제공된다. 작업 태만시에는 90g을 더 공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돼지나 소구유통 속에 남아있는 사료찌꺼기를 먹기도 하며, 심한 경우 쇠똥 속에 박혀 있는 강냉이나 콩 등을 씻어 먹기도 한다. 그리고 영양 보충을 위해 개구리와 개구리알 또는 쥐, 뱀 등을 눈에 띄는 대로 잡아먹기도 한다. 귀순자 강철환과 안혁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들이 1년 정도 수용소생활을 하고 나면 영양실조로 인해 몸무게가 평균 15kg 이상씩 줄어든다고 한다.

봄철이 되면 산나물이나 버섯이 수용자들에게는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긴요한 식량이 되는데, 도시에서 온 정치범들은 경험부족으로 인해 독풀이나 독버섯을 잘못 먹고 온몸이 통통 부어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수용소의 주거환경 및 생활상

독신자들은 주로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 세대는 흙벽돌, 판자, 거적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 살고 있다. 방바닥과 벽은 흙을 이겨 만들기 때문에 실

내에는 먼지가 많다. 지붕은 판자위에 거적을 덮어 만들고, 방바닥은 피나무 껍질로 다다미를 깔아 만든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에는 보온이 제대로 안되는 등 수감자들의 주거환경은 마치 원시인들의 생활환경과 흡사하다.

수용소 내에서는 자가발전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용량이 미미하여 각 가정마다 전구 한 개만 달게 하고 있다. 그나마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만 전기가 공급되고 있고, 전력이 약해 불을 켜도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빛이 희미하다. 그러나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소는 상급에 속하며, 어떤 수용소는 전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식사시간에만 광솔로 불을 밝히기도 한다.

수용소 내에서는 모두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데다 시설도 부족하여 아침에는 수십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용변을 보아야 하고, 화장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강냉이잎, 콩잎, 호박잎, 칩잎 등을 화장지로 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료공급도 충분치 않아 취사용 이외에 난방용 연료는 거의 공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겨울에는 온가족이 한 데 모여 몸을 비비며 추위를 쫓느라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으며, 추운 날에는 동사자도 발생한다. 식수도 하천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의복 공급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 가족세대에게는 수용기간 중 모포 1장과 상하 누빈 동복 1벌만이 지급된다. 작업복은 3년에 한 벌씩 지급되나 독신자들에게는 이것마저도 공급

되지 않기 때문에 수감당시 입고 갔던 옷을 출감될 때까지 기워가면서 입는다. 신발은 1년 6개월에 노동화 1켤레씩 지급되고, 겨울신발인 솜동화는 5년에 1켤레씩 지급된다. 양말이나 속내의는 일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여름철에는 맨발로 노동을 한다. 겨울에는 천조각으로 얼굴·팔·다리를 감아 생활하고 있으며, 동상으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사람도 있다.

수용자 대부분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노동으로 폐렴, 결핵 감염 및 후진국에서나 생기는 펠라그라병 등의 질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으나 모두 예외없이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다. 고환염이나 치질에 걸린 사람들도 작업장에 동원되는데, 이들은 엉덩이를 양손으로 벌려 잡고 견거나 오리걸음으로 걷다가 숨이 차 주저 앉기도 한다. 이 경우 걸음 속도가 늦다고 구타까지 당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작업반장은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정되는 수용자들을 중환자가 수감되는 요양소로 보내는데, 이들은 치료해줄 의사나 약이 없기 때문에 단지 격리 수용되어 방치된다. 이같이 방치되어 죽는 사람이 매년 1개 수용소당 약 40명~50명에 이르고 있다.

수용소내 집단학살 및 처형 현황

정치범수용소내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집단학살이 있었다는 점이다.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1986년 10월 함북 온성의 12호관리소에서 정치범들이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용소내 보위원 가족마을을 습격하여 보위원 가족 수백명을 살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국가안전보위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경비대 1개 대대 병력을 출동시켜 봉기가담자를 포함하여 청장년 약 5,000여 명 이상을 사살하였다.

특별독재대상구역의 열악한 환경과 고통 등을 이기지 못하고 탈출하다 체포된 자, 보위부원에게 반항하거나 보위부원을 구타한 자는 반드시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하거나 총살한다. 강철환·안혁·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이같은 처형과 작업 중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원은 매년 1개소에 수백명에 달한다. 강철환의 증언에 의하면, 폐쇄된 승호리수용소에서는 1개월에 300여 명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공개처형 대상자가 발생하면 통상 1~2일 감금해 두었다가 처형 당일 아침 10시경 작업장에 있는 수용자들을 전원 집합시킨 뒤 처형하고 있다. 통상 보위부원 2명이 처형대상자를 나무 말뚝에 세우고 눈과 가슴, 다리 부분을 포박한 다음 처형자의 눈을 형겁으로 가리고 입에는 재갈을 물린다. 관리소장이 처형식을 선포하고 약 5분에 걸쳐 죄를 설명한 후 형법 몇 조에 의거하여 총살형에 처한다고 선언하면,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보위부원 3명이 자동소총으로 머리와 가슴과 다리 부분에 각각 3발을 발사하여 처형한다. 그리고 시체는 가마

니에 말아서 인근 야산에 매장한다.

귀순자 안명철에 의하면, 공개처형은 공포심을 조장하여 수용자들을 순종케 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처형이 너무 잦아 정치범들이 ‘면역’이 생긴 데다 처형이 정치범들의 반발심과 분노만을 유발함에 따라 1984년부터는 공개처형보다는 비밀 처형을 많이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비밀처형 대상자에는 보위부원의 비리를 알고 있는 자, 탈출기도자, 살인기도자, 불평불만자, 임신한 여자 및 관련 남자 등이 포함되며, 비밀처형의 집행은 통상 보위1과가 담당한다. 처형방법으로는 총으로 사살, 몽둥이나 돌로 타살 등 잔인한 방법이 선택된다.

한편 귀순자 안명철은 국가안전보위부 3국 관할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비밀처형과 함께 수용소 의사들에 의해 일본의 731부대나 나치 수용소에서 자행되었던 것과 유사한 생체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증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납북억류자 실태

북한은 휴전 이후 1955년 5월 28일 대성호와 어부 10명을 강제 납치하여 억류한 이후 현재까지 총 407명의 어부를 납치하여 억류하고 있다. 가깝게는 1995년 5월 30일 제86우성호의 어부 8명(납북도중 3명 사망)을 강제 납북하였다가 1995년 12월 26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1970년 6월 5일 납치한 해군 I-2정 승무원 20명 전원을 선박과 함께 억류하고 있으며,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여객기와 함께 납치한 승무원과 승객 중 12명을 억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79년 4월 노르웨이에서 납치한 한국인 교사 고상문과 1995년 7월 중국 연길에서 납치한 순복음교회 안승운 목사를 강제 억류하고 있다. 이같이 북한에 납치되어 아직까지 억류되어 있는 사람은 총 442명(사망자 포함)에 이른다.

강제 납북된 사람들 중 일부는 KAL기 스튜어디스였던 성경희, 정경숙과 같이 대남방송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납북억류자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알려졌는데, 1994년 7월 30일 국제사면위원회(AI)는 「북한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특별보고서를 통해 납북억류자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동 위원회가 발표한 정치범 명단에 따르면, 1990년

당시까지 「승호리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49명의 정치범에는 26명의 재일교포와 11명의 납북 또는 월북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1995년 12월 AI는 1993년과 1994년에 이어 북한에 관한 세번째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부록에서 63명의 정치범 명단을 목록으로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그간 AI가 발표한 정치범 명단 중 조호평과 시바타 고조(한국명 김호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의 수감사실을 부인했으며, 수감사실을 인정한 두 사람마저도 모든 가족과 함께 탈출 도중 사살되거나 열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AI에 답변했다. AI가 발표한 명단 중에는 최연단, 이성남, 최경호 등 러시아 등지로부터 송환된 탈북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북한당국은 이들의 송환사실도 부인하였다. 그러나 AI는 이들이 수감되었거나 탈출죄 등의 죄명으로 사형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납북된 사람들 중에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 등에 강제 배치되어 대남공작원을 훈련시키는 교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귀순자 안명진은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훈련받는 동안 한국에서 납북된 교원 60여 명으로부터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비롯하여 생활실상 및 생활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이들 교원 중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납북억류자도 상당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6년 9월 24일 적십자회 성명을 통해 1995

년 7월에 납북된 안승훈 목사가 강요에 의해 납치된 것이 아니라 '의거입북'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6년 9월 13일 중국정부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안목사 납치범 중 1명인 이경춘에 대해 "불법 감금 및 불법 출경죄"로 징역 2년과 강제추방형을 판결하였다. 즉 중국정부는 안목사 사건이 북한측에 의한 납치사건이었음을 공식 확인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 사건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북한측에 안목사의 즉각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아직도 안목사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표 10> 납북억류자 및 월북자 수용현황

| 성명 | 전직 및 입북경위, 수감 실태 |
|-----|---|
| 강중석 | 서독광부. 1971년 북한 정보원에 의해 강제납북. |
| 고상문 | 전 수도여고 교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연수중 여권분실을 신고하러 한국대사관을 찾던 중 택시기사의 착오로 북한대사관에 들어갔다가 북한 공관원에 의하여 강제 납북. AI가 승호리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발표한 직후 북한은 1994년 8월 「평양방송」을 통해 고씨가 자진 월북하여 지리학연구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고씨 가족이 유엔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북한은 고씨가 북한에서 재혼하여 살고 있다는 회신내용을 유엔을 통해 1995년 고씨의 가족들에게 통보해 줌. 그러나 정부는 북한측 답변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고씨의 송환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 김보겸 | 택시기사.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강제 납북. |
| 노준우 | 농부. |
| 신숙자 | 간호원. 남편 오길남을 따라 1985년 11월 북한대사관을 통해 월북. 평양 창광거리에서 살다가 1986년 11월 오길남이 북한을 탈출하자, 딸 2명과 함께 요덕수용소에 수감. 1988년 1월 부터 1989년 2월까지 요덕수용소내 결핵 요양소 간호원으로 일함. 북한당국은 수감사실 부인. |
| 염규환 | 제약회사 직원. 1981년 국제회의 참석차 일본에 출장갔다 조총련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 납북. |
| 유성근 | 주서독 한국대사관 노무관. 1971년 4월 서베를린을 여행하다 북한 공작원에게 강제 납북됨. 당시 부인 정순섭씨와 두 딸 경희(7살), 진희(1살)양도 함께 납북. |
| 이장수 | 조병욱과 함께 월북. |
| 이준광 | 육군 중령. 진급 누락에 불만을 품고 월북. |
| 이치수 | 농부. |
| 정종도 | 재미 과학자. 인도네시아를 여행중 북한 공관원에 의해 강제 납북. 북한당국은 1989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
| 조병욱 | 해군 수송기지창 근무원. 1976년 10월 월북. |

* 국제사면위 보고서 및 귀순자 증언에 의거하여 작성.

3.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북송교포들을 방문한 사람들과 귀순자들의 증언,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의 북한인권보고서에 의하면, 북송교포와 그 가족들은 북송과 함께 형편없는 음식과 의복·주택을 제공받았고, 이들의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중노동에 배정되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아시아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송된 교포들은 북한관리들에 의해 멸시적인 어조로 ‘귀포’, ‘재포’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북송교포들은 현재까지도 주민들로부터 경멸적인 대접을 받고 있다. 이같은 처우 때문에 일부 북송교포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자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일부는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북송교포와 ‘일본인 처’의 인권문제는 북·일 수교협상의 진행과 맞물려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고, 국제사면위원회(AI) 등 국제인권단체 등은 실종된 북송교포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같이 북송교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그간 활동해 오던 「일본인 처 자유왕래 실현운동회」, 「일본인 처 자유왕래 촉진 의원연맹」 등에 이어 1993년 이후 북한의 민주화와 북송교포 인권개선을 위한 민간인권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도쿄), 「구원하라! 북조선

민중·긴급행동 네트워크」(RENK : 오사카) 등이 대표적인 단체이다.

북송교포 현황

재일 한국인의 북송은 1959년 8월 일본적십자와 북한적십자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거하여 1959년 12월 처음 시작되었다. 북송교포들의 비참한 삶도 1959년 12월 16일 하오 북송선 제1선이 청진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 1984년 7월까지 187차에 걸쳐 일본인 처 6,630여 명(이 중 1,830여 명은 일본국적이었다)을 포함한 일본거주 한국인 9만 3,000여 명이 북한당국과 조총련에 의한 민족주의적인 호소와 '지상낙원'이라는 거짓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갔다.

북한당국은 북송 당시 일본인 처들이 2~3년에 한 번씩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돌아오거나 방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오히려 많은 북송교포 일본인 처들의 소식은 단절되었다.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처형당했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유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 복송교포 연도별 추이

| 연 도 | 계 | 복송교포 | 수반가족 | |
|------|--------|--------|-------|-----|
| | | | 일본인 | 중국인 |
| 1959 | 2,942 | 2,717 | 225 | |
| 60 | 49,036 | 45,094 | 3,937 | 5 |
| 61 | 22,801 | 21,027 | 1,773 | 1 |
| 62 | 3,497 | 3,811 | 186 | |
| 63 | 2,567 | 2,402 | 165 | |
| 64 | 1,822 | 1,722 | 99 | 1 |
| 65 | 2,255 | 2,159 | 96 | |
| 66 | 1,860 | 1,807 | 53 | |
| 67 | 1,831 | 1,723 | 108 | |
| 71 | 1,318 | 1,260 | 58 | |
| 72 | 1,003 | 951 | 22 | |
| 73 | 704 | | | |
| 74 | 479 | | | |
| 75 | 379 | | | |
| 76 | 256 | | | |
| 77 | 180 | | | |
| 78 | 150 | | | |
| 79 | 126 | | | |
| 80 | 40 | 38 | 2 | |
| 81 | 38 | 34 | 4 | |
| 82 | 26 | 24 | 2 | |
| 83 | 0 | | | |
| 1984 | 30 | | | |
| 합 계 | 93,340 | | | 7 |

* 1985년 이후에는 복송사업에 의한 집단 복송은 없었음.

** 내역의 공백은 정확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임.

북송교포의 생활실태

북송교포에 대한 처우는 북한당국과 조총련에 의한 선전과는 다르게 초기부터 가혹한 것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경험·능력·희망과는 관계없이 노동당이 정한 거주지와 직장에 강제 배치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송교포라는 이유로 노동당 입당이 불허되었고, 입당의 지름길이었던 인민군 입대를 거부당했다.

또한 북송된 교포들은 훌륭한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거나 북한당국에 돈이나 물품을 제공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주민성분분류시 대부분 동요계층 혹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1981년 1월~4월까지 북송교포 요해사업을 실시하여 북송교포에 대한 성분을 세분화하고 항시 동향을 감시하여 왔다.

북송교포의 생활수준은 평양과 지방 거주자 간에 차이가 크고, 일본 및 해외 거주 친척의 '바라지'(돈이나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지방의 경우 강제수용소에 수감되거나 행방불명, 처형된 사람을 제외하고도 60~70% 이상의 북송교포들이 일본에 거주하는 친척이 없어 생활수준이 보다 나은 북송교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북한주민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북송교포들의 자녀들도 엄격한 규제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일본인 방문자가 북송교포 김원조에 대해 보고한 바에 의하면, 김원조는 대학입학 승인

을 담당한 위원회가 내린 불공정한 결정에 관해 김일성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한다. 그의 견해로는 그가 당과 관계가 없고 위원회에 대한 그의 가족의 기부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위원회가 그의 입학원서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그는 반혁명분자라는 혐의를 받아 공안부대에 체포되어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그 후 귀국한 교포들은 그의 소재를 찾았으나 허사였다. 그가 강제노동수용소에 억류되어 있거나 벽지형무소에서 처형되었을 것이라고 북송교포들은 믿고 있다.

이같은 북송교포들의 인권유린 실태는 방문자들에 의해 조금씩 외부로 전달되었다. 어느 한 재일교포가 북송된 친척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친척들은 자신들의 억눌린 삶을 다음과 같이 털어 놓았다고 폭로하였다.

우리는 살아 있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는 시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모든 자유를 빼앗겼다.……만일 내가 지역경계를 넘어가고 싶으면 배속되어 있는 농업연구소의 주재원에게 정식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런 일은 아주 불가능하다.……생활은 일종의 지옥인 셈이다. 밀이나 콩으로 만든 묽은 죽으로 며칠간은 버틸 수 있다. 물만 마시며 계속 일한 나 날도 있었다. 나는 노예로서 살도록 강요받았다.……그래서 나는 풀, 뱀, 개구리 등을 먹어 보기도 했다.……처음에는 설사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익숙해졌다.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서울: 고려원, 1990) 중에서>

이들의 이러한 실태가 일본으로 알려지자 북송자의 수도 격감하게 되었다(<표 11> 참조). 그리고 북송교포들은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점차 불평 불만의 목소리와 정치적 발언을 높여 갔다.

이에 따라 초창기 감시만 하던 북한당국은 북송교포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1995년 귀순한 오수룡의 일가족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1960년 말부터 일제 단속을 시작했고, 소원이나 항의를 제기한 북송자들을 수용소에 수감 내지는 공개처형시켰다고 한다. 또한 북한 내에서 정치적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입지가 약했던 북송교포들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귀순자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체포되어서 처형된 사람과 사망한 사람 외에도 현재까지 강제수용소에 수감 중인 북송교포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송교포와 현금 강요

북한당국은 조총련간부나 상공인의 북송 가족을 ‘인질’로 조총련을 제어·통제하고 ‘자금원’(현금)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북송자의 재일 가족들에게도 입당, 진학, 거주지·직장 배정을 ‘미끼’로 현금모집이나 물자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북송교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보내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트럭, 엔진, 경공

업기계, 기타 장비같은 물건을 보내기도 한다. '기부'로 인해 북한의 친척들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거액을 현금하면 평양으로도 이주가 가능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시아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송교포 중 어떤 사람은 국가에 재정적으로 거액을 기부한 덕택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된 경우도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정치범 석방과 북송교포와 재일친척들을 상봉시켜주는 대가로 재일 가족·친지들에게 거액의 기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당 간부나 국가안전보위부원들이 적극 부추기고 있다고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이나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치범 석방을 위한 '기부' 금액은 5천만~1억여 엔정도 한다. 또한 귀순자 진광호에 따르면 북송교포들이 재일 친척과 상봉하기 위해서는 5천만엔 이상의 현금이나 물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외에도 북한당국은 김부자의 생일 등 국가행사 등으로 지출의 증가가 예상될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송금을 자주 받는 북송교포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각종 훈장 등을 수여하는 대가로 현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북한당국이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상봉을 조건으로 거액의 현금 강요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북송일본인 여성들의 생활실태

재일 조총련의 북송사업으로 한국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건너 갔다가 현재까지 한 번도 재일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일본인 처' 문제는 북·일간의 수교논의 초기 단계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여 일본의 '과거 보상' 문제에 버금가는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1959년부터 82년까지 북송된 93,000명 중 6,637명은 일본인처들이며 1,828명은 일본국적 소유자들이다. 북한은 당시 일본적십자사와의 북송협정에서 2~3년만에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동안 실행하지 않았다.

북송된 일본인 처들은 북한의 비인도적인 폐쇄정책과 성별 차별로 인해 유형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재일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곤궁과 부자유, 질병의 고통을 알 수 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들 편지의 주내용은 식료품, 의류, 문구류, 의약품 등 생필품 요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생필품 지원 요청은 북한에서의 어려운 생활고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들의 편지에는 생필품 지원 요구 외에 일본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송금 요청은 단순히 일본인 처들의 개인적 필요도 있겠지만 북한당국이 대외채무와 외화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북송 일본인 처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인 처들이 가족·친지뿐만

아니라 약간의 지면이 있는 일본인들에게까지 일본돈이나 물품을 보내달라고 사정하는 편지들을 많이 보내왔다는 사실들은 이같은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갑자기 편지를 보내어 아저씨, 아주머니는 누군가 하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는 요시에의 딸 구미꼬입니다. 아실런지요.....여러분이 입던 헌 것이라도 좋으니 양복 상의, 바지하의, 춘하추동 무엇이든 좋으니까 보내 주십시오.....돈은 정월전에 꼭 30만엔 보내 주세요. 소포로 보내 주세요. 소포는 어른과 아이들이 입을 것 옷감이라도 좋습니다.....돈도 금년에는 30만엔, 내년에는 그보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보내 주세요. <1990년 8월 20일 구미꼬로부터>

또한 이들 편지들은 공통적으로 제일 가족들과의 상봉과 귀향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었다. 예컨대 북한적십자회를 통해 일본적십자사에 조회된 가족 안부문의가 1990년 1년 동안 만도 771건이나 되었다.

이들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일본에서는 1974년 4월 「일본인 처 자유왕래 실현운동회」가 결성되었다. 이 모임에는 2,000여 가족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공산당을 제외한 164명의 의원들이 「일본인 처 자유왕래 촉진 의원연맹」을 발족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일본인 처 자유왕래 실현운동회」(회장 이케다 후미코)는 1988년 1월부터 일본공산당을 제외한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들의 후

원 아래 식료품, 의류, 문구류 등의 생필품을 북송 일본인 처들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동 단체가 매년 450~600여 상자의 구호품을 보낸 결과 일본인 처들이 일본에 보내 오는 감사의 편지의 수도 늘기 시작했다. 편지 중에는 “30년만에 설탕을 맛보게 해주어 고맙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후미코씨라고 하는 분은 대체 누구십니까? 정말 고맙습니다.……우동, 통조림, 설탕은 설날 먹으려고 숨겨 두었습니다. 30년만에 처음 대하는 것들입니다. 옷도 없어진 것이 많습니다. 바지 2, 원피스 1, 슈미즈 1, 스커트 2, 연장 등도 없습니다. 옛은 5개 있었습니다.……이제부터 보내실 때는 절대로 우편으로 부쳐서는 안 됩니다. 세금이 너무나 비싸 찾을 수가 없습니다.……미제와 남조선 것은 전부 압수되니 넣지 말아주십시오.
<1989년 11월 황해북도 은파군에서 스키 다케노 올림>

이와 같은 편지의 내용은 북송 일본인 처들이 제일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북한에 구호품을 발송한 첫 해인 1988년 약 70%가 물품을 받았다고 답장을 보내왔으나 1990년 이후로는 답장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이케다는 “북한당국이 서신연락조차 막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련·동구의 자유화물결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1990년 9월말 평양을 방문한 일본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 전부수상과 만난자리에서 “일본인 처들의 방일을 환영한다”고 발언하였다. 또 1991년 1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제1차 수교본회담에서 북한측 수석대표인 전인철은 “희망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방일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했고, 김용순은 95년 6월 20일 방북한 이노키 간지 참의원 의원에게 북일국교 정상화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북한거주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문제에 대해 “친족방문의 형태라면 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유연한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해 북한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 북송 일본인 처들의 방일문제가 북일수교의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본은 북송 일본인 처들의 고국방문의 약속을 북한이 이행해 나가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구소련에서도 소련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해외이주를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하였으며, 동독도 가족·친지들의 해외여행을 허용하였다. 북한이 거듭 약속한 바와 같이 북송 일본인 처의 고국방문이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북송교포 정치범수용소 수용실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북송교포의 현황과 실태를 보고하는 자료는 정치범수용소에 함께 수용되었던 귀순자의 증언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면위원회가 「승호리수용소」 등에 수감된

북송교포의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요덕수용소」(15호관리소)에 수감되었다가 최근 귀순한 강철환과 안혁의 증언에 의하면, 요덕수용소에 많은 북송교포가 수용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1974년 초 약 100여 세대 600여 명이 처음 수용된 이후 매년 약 100~200세대씩 증가되어 1987년에는 ‘구읍 및 입석지구’의 북송교포 수용 마을에만 일가족 수용자 약 800여 세대 5,000여 명과 범죄자 300여 명 등 5,30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한다.

북송교포들 역시 정치범으로 몰려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끌려올 때는 아무런 재판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간에 강제 연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들이 어느날 마을에서 없어지게 되면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측한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북송교포들은 대개 간첩혐의나 일본 및 남한 상황 등 외부사정을 북한주민들에게 유포하여 내부교란을 획책했다는 죄명으로 잡혀 오게 되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들의 죄명을 모르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는 보위부원들은 이들을 ‘반쪽발이’라고 냉대를 하고 북한주민 출신 수용자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하고 있다. 북송교포들은 다른 수용자들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어지는 데다 열악한 수용소 환경에 북한주민 출신보다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율이 높다고 한다.

국제사면위원회와 귀순자들을 통해 파악된 북송교포 수용자의 명단은 <표 12>와 같다.

<표 12> 북송교포 수용현황

| | |
|-------------|---|
| 성명 | 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실태 |
| 강대용 | 생존불명. |
| 강덕현 | 일본밀항후 북송. 아들(강명일, 강명학) 생존. |
| 강수호 | 출소. 북한당국은 1991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
| 강용수 | 노동교양소로 이동. |
| 강태휴 | 1977년 행방불명(조총련 교토본부 상공회 회장, 귀순자 강철환의 조부). 아들 강지명(강철환의 부) 영양실조로 사망. 아들(강화정, 강복남, 강창남), 손자(강미호) 생존. |
| 고대기 | 생존불명. |
| 고철립 | 조총련간부 아들. 1977년부터 수용소생활. 父 행방불명. |
| 고 흠 | 조총련간부(교토본부 간부). 妻·아들(고철공, 고철영, 고철배, 고철립)·딸1 생존. |
| 곽승일 | 母(일본인) 수용소내에서 행방불명. 父(조총련간부)·妹(곽성혜, 곽성아)생존. |
| 곽철 (곽종구) | 조총련 오오사카 정치부 부부장. 弟(곽영호)·妻(신성옥)·아들(곽성일, 곽성균)·딸(곽향숙, 곽인숙, 곽지숙) 생존. 父는 켈라그라병으로 수용소에서 사망. |
| 권봉학 | 조총련 중앙간부. 노동교양소로 이동. |
| 김금치 | 가족 나고야 거주. |
| 김병훈 | 노동교양소로 이동. 북한당국은 1969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
| 김성치 | 조총련간부. 14년 동안 수용소 생활, 출소후 자살. |
| 김애량 | 남편 행방불명. 아들(백덕수) 생존. |
| 김순란 | 남편(조총련 교토본부 간부) 행방불명. |
| 김영길 | 오페라 가수. 북한당국은 1986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

| 성명 | 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실태 |
|-----|--|
| 김옥량 | 남편(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딸(허민향, 허민애, 허민희) 생존. |
| 김점명 | 일본밀항후 복송. 월남참전용사. |
| 김진호 | 1990년 현재 생존확인. 북한당국은 1977년 출국했다고 AI에 답변. |
| 김천해 | 일본공산당 중앙위원. 북한당국은 1969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
| 민영일 | 조총련 니이가타본부 부위원장(조직부장). 폐결핵으로 사망가능성. 북한당국은 1973년 출국했다고 AI에 답변. |
| 민홍식 | 父(조총련 오사카본부 간부) 1976년 행방불명. 母·弟(민권식) 생존. |
| 박강태 | 복송 이후 신의주에서 기자로 활동. |
| 박기영 | 학자. 妻(일본인)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딸(박순옥) 폐결핵과 영양실조로 사망가능성. |
| 박기현 | 조총련 교토본부 조청위원장. 1976년 피검후 행방불명. 妻 사망. 맏아들 행방불명. 아들(박태운)·딸(박명숙, 박남숙, 박유숙) 생존. |
| 박 무 | 사망가능성. 북한당국은 만수대 창작사 지도원으로 평양에 거주하고 있다고 AI에 답변. |
| 박상기 | 김재원(합흥 경영위원회) 등과 1년간 수용소 생활중 간첩혐의로 행방불명. |
| 박순달 | 남편(조총련 오사카본부 간부) 행방불명. 아들(현룡, 현덕룡)·딸(현인순, 현정순, 현덕순) 생존. |
| 박순대 | 妻(일본인)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아들(박주식)·딸(박영미) 생존. |
| 박은철 | 일본공산당 간부. 북한당국은 1973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
| 박재호 | 父(조총련간부) 행방불명. 母·弟 생존. |
| 박태종 | 母 일본 교토 거주. |
| 배영삼 | 자살. 妻 영양실조로 사망. 아들(배정철, 배정광)·딸(배영화) 생존. |
| 변주미 | 도로건설단으로 복송되었던 다른 교포들과 함께 수용. |

| 성명 | 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상태 |
|-------------|--|
| 서영칠 | 출소. |
| 서일선 | 父(조총련 중앙위 간부) 행방불명. 母·妹(서혜원, 서혜옥, 서혜숙) 생존. |
| 서정복 | 일본밀항후 북송. 간첩혐의로 수용. |
| 성신희 | 父(조총련 상공인) 행방불명. 母·妹(성명화, 성경란, 성정화, 성정미) 생존. |
| 성호일 | 父(조총련간부) 행방불명. 母(일본인) 영양실조로 사망. 弟(성의호, 성영호)·妹(성현숙, 성영숙) 생존. |
| 손재석 | 출소. |
| 손정 | 父(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母·弟(손구, 손령)·妹(손정옥) 생존. |
| 손정의 | 妻·아들(손천기)·딸(손천해) 생존. 일본에 있는 처가도움으로 출소. |
| 송관호 | 조총련 니이가타출장소장. 북한당국은 1988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
| 송귀익 | 노동교화소로 이동. |
| 신묵 | 사망가능성. |
| 신재화 | 북한당국은 1975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
| 신학식 |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처(중국교포)·아들(신용범)·딸(신도연, 신채연, 신서연, 신수연) 생존. |
| 안암준 | 조선신용조합협회 간부. 1990년 현재 생존 |
| 안이준 | 생존불명. |
| 안홍갑 | 조총련간부. |
| 안홍복 | 母(교도본부 여맹위원장) 체포후 행방불명. 조모·삼촌 일본 거주. |
| 엄기성 | 父(조총련 교도본부 간부) 1975년 피검후 행방불명. 母·弟(엄기영) 생존. |
| 오철신 | 교포2세. |
| 오현 (김시택) | 1990년 현재 생존. |
| 윤덕우 | 1976년 행방불명(조총련 교도본부 위원장). 妻(고명옥) 사망. 아들(윤상렬)·딸(윤영희, 윤정희) 생존. |

| 성명 | 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실태 |
|-----|--|
| 윤신의 | 아들(윤충남, 윤충성) 생존. |
| 이대철 | 이태출(女)일 가능성. 노동교양소로 이동. |
| 이명수 | 조총련 교도본부 간부.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妻(김조이) 생존. |
| 이상천 | 1979년 행방불명(조총련 상공인). 妻(임춘산)·아들(이우, 이성우, 이천우) 생존. |
| 이춘용 | 독신귀국. 후에 가족을 조국방문단으로 유인, 妻(이춘화)·아들(이세봉, 이철해, 이성해) 생존. 딸(이미화) 일본 동경 거주. |
| 임팔구 | 妻(일본인)·아들(임덕원, 임화원) 생존. |
| 장덕순 | 딸과 의사. 남편(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아들 3 생존. |
| 장 덕 | 일본밀항후 복송. |
| 장백일 | 父(조총련 교도본부 상공회) 1977년 행방불명. 母 생존. |
| 장병렬 | 사망. |
| 장혜영 | 부모 생존. |
| 정길송 | 레슬링 세계선수권 보유자. 妻·아들 생존. |
| 정우택 | 조총련 중앙외무 부부장. 노동교화소로 이동. 사망가능성. |
| 정진일 | 일본 가라테 선수.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아들(정태봉) 생존. |
| 정철진 |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妻·아들(정일봉) 생존. 딸(정영미)은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
| 조삼랑 | 아사. |
| 조성기 | 학자.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妻(일본인)·딸(조성미, 조성애) 생존. |
| 조인철 | 대학재학중 피검. |
| 조종갑 | 1990년 현재 생존. |
| 조진환 | 父 행방불명. |
| 조호평 | 북한당국은 국제사면위원회(AI) 조사방문시(1995. 4) 조호평일가가 1974. 10 탈출 도중 사살되었다고 답변. |
| 천태중 | 아들(천홍의, 천홍태) 생존. |

| 성명 | 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상태 |
|-----|--|
| 최경림 | 남편과 이혼후 수용소생활. 아들 1 생존 |
| 최성우 | 김일성 생일축하단으로 복송. 父 행방불명. 兄·弟 생존. |
| 최종원 | 일본인(오키나와 출신). 조총련 간부의 양자로 복송. |
| 최철호 | 父(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母·婦(신수임)·弟(최성진, 최순희, 최정순)·아들 3·딸 1 생존 |
| 한영덕 | 父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母 생존. |
| 한학수 | 1976년 행방불명(조총련 오오사카본부 교육회장). 妻 사망. 아들(한성민, 한성우) 1986년 2월 출소. |
| 허정숙 | 父(역사학자) 사망. 母(일본인)·弟(허영숙) 생존. |
| 홍만득 | 영양실조로 사망. 妻·아들(홍룡원)·딸(홍정미) 생존. |
| 홍박선 | 妻(일본인). 출소. |
| 홍충일 | 父(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母·弟(홍충명, 홍충주, 홍충세)·妹(홍정미) 생존. |
| 황정옥 | 妻 사망. 아들(황영수, 황영호) 생존. |

* 국제사면위원회(AI)의 보고서와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거 작성.

4.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북한이탈주민 현황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주민)들의 수는 상당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에 소재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은 약 1,500명 정도이며, 이중 현재까지 우리 재외공관에 망명을 요청한 경우는 중복신청자를 제외하고 약 5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탈북주민들은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규모 등 정확한 실태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은 현지국 공안이나 북한 안전원에게 발각될 경우 강제송환당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난민’의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현지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북한주민의 가장 유력한 탈출지인 중국·러시아 정부는 이들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포된 탈북주민들을 북한당국에 인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탈북주민들은 현지국 공안과 북한 안전원들을 피해 은신하고 있으며, 소수의 경우 한국으로의 입국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탈출이 증가하고 탈북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

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면서 북한당국은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국경지대를 '전선지대'로 선포하는 등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중 가재도구를 장마당에 파는 사람을 탈출용 의자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탈북주민 체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과 현지 공관원 등 3~4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편성하여 탈북주민 색출·체포활동을 전개하면서 탈북주민들이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시키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통제체제의 강화와 함께 해외체류자를 소환·재교육시키고 있다. 북한은 1996년 초 현성일 부부 등 엘리트계층의 탈출이 잇따르자 고위층 자녀들과 유학생들을 긴급 소환하라는 지시문을 각지 공관에 비밀리에 하달하였다. 북한은 이미 1989년 10월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전 해외공관에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 연구원, 유학생을 소환할데 대하여"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북한당국은 송환된 탈북주민들을 비밀감옥에 강제수용하거나 공개처형하고 있다. 탈북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시와 보천군 등에 양강도 보위부가 관할하는 비밀감옥이 소재하고 있으며, 러시아·중국 등지에서 체포된 탈북주민들은 이곳에 수용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대부분 극형에 처해지고 있다. 이같은 정보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 배경

북한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탈북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계속된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1995~96년 수해로 인한 식량난의 가중은 주민들의 탈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식량배급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며, 일부지역에서는 아사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어 왔고, 유엔 등을 통한 국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과 전반적인 경제난은 국제사회의 구호나 경제원조와 같은 응급처방으로 단기내 회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아와 궁핍을 모면하기 위한 북한주민의 탈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난·식량난의 심화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은 탈북을 촉진시키고 있다. 조선족 보따리 장수와 해외교포들의 북한 방문, 해외유학생 및 해외파견자들의 북한 귀환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막연하나마 외부정보를 접하고 있다. 일부 북한주민들은 중국 및 한국의 발전상을 알고 있으며, 한국방송을 비밀리에 청취하는 주민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발전상은 북한주민들에게 체제비교의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외부정보의 유입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는 탈북에 대한 욕구를 더욱 증가시

킬 것이다.

셋째, 북한내 사회기강 해이와 사회일탈현상의 심화는 탈북현상을 촉진시키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돈이면 최고”라는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이 북한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사적인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뇌물수수, 경제범죄 등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 경제활동이 발각될 위험에 처한 경우 탈북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사회주의체제에 반하는 요소가 발견되면 체제단속을 위해 가혹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일탈현상과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는 이미 물리적 통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탈북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해외체류자 및 근로자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탈출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1996년초 현성일 부부, 차성근 귀순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난으로 인한 해외공관의 자금난과 공관원들의 궁핍한 생활, 마약 등의 밀수·밀매 및 위조미화의 제작·유통, 공관내 조직원들의 갈등 증폭 및 상호감시·밀고, 강제송환 등은 공관원들의 탈북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외화벌이사업 중 한국 상사원이나 선교사들과 접촉한 경우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북한당국은 해외체류자중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소환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중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파견된 해외근무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물리력만으로

는 통제하기 힘들다.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중국내 탈북주민은 1,000여 명 이상으로서 이들 대부분은 동북 3성(요녕·길림·흑룡강성) 거주 친인척을 근거지로 잡역이나 영농지원을 하면서 은신하고 있고, 소수는 홍콩·베트남·태국 등으로의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은 조교(북한국적의 중국거류민)에 의한 밀고 및 특무(북한의 정보원 내지 기관원)와 중국 공안당국의 색출활동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체포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1960년대초 비밀리에 체결한 「중국·북한 탈주자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가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강제송환된다. 『동아일보』(1996.12.26)가 입수한 「<길림성 변경관리조례>선전제강(提綱)」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1993년 11월 「길림성 변경관리조례」가 통과된 이후 1994~95년 동안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탈북주민 140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당국의 이같은 행위는 「난민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는 난민들의 추방이나 강제송환을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다.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론 이 규정은 난민이 그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거나, 특히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국가에 위협한 존재가 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난민협약」 33조 제2항). 그러나 탈북주민들은 북한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며, 송환될 경우 이들의 생명은 극도의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강제송환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이다.

강제송환된 탈북주민들은 ‘민족반역자’로 분류되어 사형에 처해지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 북한은 형법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는 행위를 ‘조국반역행위’로 규정(제47조)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규약 제12조 2항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되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러시아내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러시아내 별목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탈출한 북한주민들은 블라디보스톡,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러시아 국경지역을 전전하며 의류 등 보따리 장사를 하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이나 한국인 등의 도움을 받아 은신하고 있다. 러시아지역내 탈북주민의 경우 「유엔난민고등판

무관실(UNHCR)에 의한 난민지위 획득 등 제도적으로 국내 입국의 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러시아 지방당국의 관리들은 탈북주민들을 자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심지어는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고 있다.

북한노동자들이 구소련지역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당시 구소련의 당 서기장였던 브레즈네프와 북한의 김일성이 체결한 「별목협정」에 기초해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지역에 별목장이 설치된 이후부터이다. 한 때 2만 여명에 달했던 북한 별목공의 수는 현재 2,500~6,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별목장을 제외하고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근교의 광산, 건설현장 등에 많은 북한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다. 광산현장에서 건축노동자로 일했던 귀순자 윤성철은 1990년 당시 자신이 속했던 현장만 해도 11개 기업소에 2,000여 명의 북한노동자가 파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1996년 「국제사면위원회(AI)」 보고서는 노보르비르스크 근교의 광산에서 3,000여 명의 북한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는 탈북주민의 증언을 인용하였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의 작업현장 이탈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구소련 붕괴 이후인 1990년대 전후부터이다. 1990년 전후 목재생산량의 감소 및 노동력 축소에 따라 잉여 노동력을 작업장 밖으로 파견하여 소위 ‘외화벌이’나 ‘부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북한노동자들의 작업장 이탈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작업장 이탈이 증가하던 초기에는 주로 가혹한 노동조건과

별목장내 인권탄압이 이탈의 주요인이었으나, 외화벌이 노동자수가 증가하면서 다른 요인들도 이에 결합하였다. 노동자들은 러시아내에서 한국방송을 듣고 현대화·산업화된 한국 상품을 접하게 되면서 북한의 선전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은 외화벌이사업을 하면서 한국인을 접하게 되었고, 정기적인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작업장을 이탈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외화벌이 실적 부진, 장기간의 사업장 이탈, 한국인과의 접촉사실 등으로 처벌을 우려하게 되었고, 동료 노동자의 체포·송환 및 북한내 가족들의 처벌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북한체제를 완전히 이탈하게 되었다.

작업장을 이탈한 북한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탈북주민들은 북한 안전원의 지속적인 추적을 받고 있으며, 체포되어 송환되면 사형도 감수해야 한다. 과거 탈북주민들이 구소련경찰에 의해 체포되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비밀의정서」에 의거하여 북한당국으로 인계되었다. 이 비밀의정서는 1993년 러시아 최고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세르게이 코발료프에 의해 불법으로 선언되었다.

하지만 이같은 선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내에서 북한 안전원의 탈북주민 추적활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입법협정(1995.2 체결) 제14조 5항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 조항은 북한노동자들의 모든 사적인 또는 외화벌이 사업은 러시아 지방당국의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국제인권기구와 러시아당국에게 탈북주민들이 범법자라고 주장하면서 탈북주민들의 난민지위 확보와 은신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시베리아별목장을 탈출한 별목공에 대해 최초로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한국으로의 망명을 허용하였다. 유엔기구가 국제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탈출별목공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간 북한이 강력히 제기해 온 탈북주민들이 범법자라는 주장과 한국으로의 망명이 한국정부에 의한 납치라는 주장은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북한은 탈북주민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탈북주민문제가 심각해지자 탈북주민들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회유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체포활동을 강화하였다. 북한당국은 회유성 조치로서 탈출하여 귀환한 탈북주민들에 대해서 김정일이 미처벌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선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탈북주민들은 이같은 선전을 탈출주민들을 색출하기 위한 조치로만 인식하였다. 또한 1994년에 중앙당의 책임 아래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등지에 대규모의 체포조와 ‘국가안전보위부 그루빠’를 파견하여 탈출 가능성이 있는 자를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동시에, 탈북주민들이 많이 은신하고 있는 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탈북주민들을 현상수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당국의 추적활동 가운데 한 가지는 탈북주민들을 돕는 대상을 감시하는 일이다. AI는 이러한 감시대상 중 하나가

한국대사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안전원들은 때때로 현지인을 고용하여 탈북주민들을 돕는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당국의 목인 아래 탈북주민들이 은신할 만한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당국의 추적 활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2조 2항에 위배하는 것이다.

러시아 중앙정부는 탈북주민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거나 체류를 허가하는 조치를 꺼려 왔으며, 탈북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처리를 철저히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탈북주민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러시아가 1993년 2월에 가입한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과 배치된다.

러시아 지방당국은 탈북주민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탈북주민문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조차 보이고 있다. 예컨대 하바로프스크 출입국관리청은 탈북주민들을 본 적이 없고, 외무부는 탈북주민들이 자신들의 사법권하에 있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AI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와는 다르게 러시아 지방당국은 일부 탈북주민들을 송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

한편 AI는 대부분 러시아경찰들이 인종차별주의적인 태도와 폭력으로 탈북주민들을 대하고 있으며, UNHCR이 탈북주민들에게 제공한 신분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탈북주민들은 북한당국의 추적을 피해 다니면서도 러시아당국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AI는 러시아에 있는 탈북주민들이 국제법에 보장된 자신들의 권리들에 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지역인권단체가 거의 없으며, 아무도 탈북주민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탈북주민들은 작업장을 탈출할 때 러시아경찰의 송환조치를 우려해 신분증(거주허가증)을 폐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의 부재는 오히려 송환의 근거가 되고 있다. AI는 1993년 러시아여성과의 혼인을 신고하려 했던 '최경호'라는 탈북주민이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송환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탈북주민들이 체포되면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안전원에 인계된다. 귀순자 윤성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안전원은 임의대로 작성한 서류(대부분 한국으로 탈출기도, 한국방송 청취 등의 죄명 기재)에 강제로 날인시킨 후 탈북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고 있다. 강제송환은 파견된 국가안전보위부원이나 안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서류와 함께 출신지역 도정치부로 이송된다. 북한으로 이송할 때에는 탈출하지 못하도록 다리에 깁스를 하거나 족쇄를 채운다.

송환되는 과정에서 반항하게 되면 즉결 처형된다. 1996년 5월말 한국으로 망명하려다 러시아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당국에 넘겨졌던 탈북주민 1명이 송환현장에서 즉결 처형되었다. 러시아 연해주 나즈드라첸코 주지사는 “위조 한국여권으로 한국으로 망명하려던 탈북주민 3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들중 1명을 국경지역에서 북한당국에 인도하자 북한당국은

송환받은 1명을 즉결 처형했다”고 밝히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나머지 2명을 인도하지 않고 다시 데리고 돌아와 블라디보스톡 형무소에 수감했다”고 설명했다. AI는 북한당국에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했으며, 9월에는 러시아내의 탈북주민 인권현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발표함으로써 탈북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였다.

탈북주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은 형법 제47에 의거하여 탈북주민들을 ‘민족반역자’로 간주하고 사형에 처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예컨대 AI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 8월 북한에 송환된 ‘송창근’이라는 탈북주민이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탈북주민들의 처형근거가 되는 북한형법 제47조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1996년 2월 “1995년에 이 조항이 개정되었다”고 AI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AI는 개정된 조항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북한당국에 요청했으나 들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탈북주민들은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다. AI는 ‘김선호’라는 탈북주민이 송환 도중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 도시인 벨로콜스크에서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다고 밝히고 있다. 귀순자 윤성철은 송환 도중 족쇄를 찬 채 탈출에 성공하였다. 또한 탈북주민들은 북한당국에 의한 체포·송환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러시아감옥에 수감되기도 한다. 그리고 형기가 만료될 즈음이면 새로운 범행을 자행하기까지 한다. AI는 탈북주민 중 일부가 송환되지

않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몰도바 소재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벌목장내 북한노동자 인권실태

러시아내 작업장은 북한주민들이 선망하는 일자리이다. 러시아내 북한노동자들은 북한내 일반노동자들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있고, 북한에서는 구입하기 힘든 생활용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혹독한 노동조건을 알면서도 러시아로 파견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선발과정에서부터 각종 비리는 만연해 있다. 담당부서들은 ‘당성이 투철하고 처자가 있으며 부부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선발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처음부터 공정가격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뇌물은 일반화되어 있다. 귀순자들이 제시하는 뇌물액수는 북한내 일반노동자의 1년치 월급을 상회한다.

부패한 관료주의의 폐악은 선발과정에서 그치지 않고, 작업장내 보직 및 징계, 체류기간 연장 등 인력관리와 외화벌이 및 보급 등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안전부원들은 노동자들의 구급, 송환 등을 결정하는 생사여탈권을 지니고 있어 가장 많이 뇌물을 챙기고 있다. 안전부원들은 구류장에 수용된 범죄자까지도 뇌물을 제공하면 방면하고 있다.

러시아내 작업현장, 특히 벌목장의 노동조건은 가혹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매년 150명

당 1명꼴로 별목공이 사망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체그도민 중앙병원에서 20여 년간 북한노동자를 진료해 온 체레파노프 외과과장은 “(이 병원의) 북한인 입원환자는 연간 10~15명이고, 그 중 반수는 목재에 깔려서 입원했다”고 말하였다.

별목공중에는 열악한 의·식·주와 작업환경, 중노동, 위생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해 영양실조, 피부병, 결핵, 간염 등에 걸린 환자가 많다. 별목장내 병원에는 치료시설이나 약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별목공들은 현지 약국에서 직접 약을 구입하여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북한측 의사가 시체부검과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1994.3.28)는 한 달에 10명꼴로 사망하는 북한 별목공에 대해 러시아 검찰과 내무부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서한을 러시아 인권위원회가 옐친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러시아내 북한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러시아 주간지 『모스크바뉴스』가 1991년 3월에 최초로 체그도민 별목장내 별목공의 인권실태를 보도하면서부터이다. 그후 국내외 여러 언론기관 및 단체들이 시베리아별목장의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있다. 이같은 보도를 종합해 보면 별목공들은 러시아 행정권의 통제밖에서 군대보다 더 엄격한

관리하에 힘든 벌목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2년 5월 영국 ITN방송은 시베리아벌목장 내에 존재하는 20여 개의 사설감옥과 사형(私刑)제도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 의하면 이들 감옥에서는 정식 수사당국의 결정이나 판결없이 북한 관리부의 독자적 판단하에 강제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아에라』지(誌)에 의하면 러시아 인권위원회측은 시베리아벌목장내의 ‘특별건물(감옥)’의 설치와 검찰의 승인 없는 북한 관리부의 벌목공 수용을 항의한 바 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인권위원회측의 항의에 대해 북한은 “이 건물은 ‘재교육’ 장소이며, 죄를 범한 사람은 6일~6개월간 이곳에 수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적인 불법감금은 러시아내에서의 외국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다.

벌목장 내에서 발생하는 자의적인 구금 및 고문은 이곳에 파견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 의해서 자행된다. 구류장은 1993년 현재 대표부, 연합기업소, 각 사업소에 20여 개 존재했던 것으로 귀순자들은 증언하였다. 이곳에는 체제비판자, 당·간부 지시위반자, ‘무직업자’(일을 제대로 앓고 노는 사람)나 범법행위자, 탈출시도자 등이 몇 개월씩 구금된다. 죄질이 가볍거나 벌목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상개조후 석방되지만, 죄질이 무겁거나 탈출할 가능성이 있으면 북한으로 송환된다. 특히 탈출시도자 등 중범죄자는 가혹한 구타와 고문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5월 AI는 북한에 대해 시베리아별목장에 구금되어 있는 북한 별목공을 모두 석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러시아당국에 대해서도 국제인권기준과 러시아국내법을 적용하여 북한 노동자들이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AI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의 경우 북한을 탈출한 별목공 가운데 최소한 19명이 북한당국에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고, 15명이 한국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는 이들 중 일부가 다른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는 시도만으로 감금되었기 때문에 양심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으로 송환됨으로써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별목공들이 송환되지 않도록 러시아당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 최고회의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시베리아별목장의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함을 확인하고 작업장내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북·러간 임업협정을 폐기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1995년 2월 24일 북한과 러시아는 별목공에 대한 여행의 자유, 별목장 공개의 의무화, 근로조건 개선 등 북한 별목공들의 인권보호조항을 담은 진전된 내용의 임업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별목협약」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이 북한당국에 의해 탈북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됨으로써 탈북주민들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부 록

빈 면

1. 남북 및 남북억류자 현황

| 구분 | 계 | 어부 | KAL | I-2정 | 기타 |
|----|------|------|-----|------|----|
| 남북 | 3738 | 3662 | 51 | 20 | 5 |
| 억류 | 442 | 407 | 12 | 20 | 3 |

- * 상기 통계는 제3국을 통한 미확인 남북억류자는 미포함
- ** 상기 통계는 사망자도 포함

2. 연도별 남북억류자 현황

| 연도 | 억류자수 | 누계 | 연도 | 억류자수 | 누계 |
|------|------|-----|------|------|-----|
| 1955 | 10 | 10 | 1971 | 16 | 324 |
| 1957 | 2 | 12 | 1972 | 66 | 390 |
| 1958 | 23 | 35 | 1973 | 6 | 396 |
| 1964 | 16 | 51 | 1974 | 28 | 424 |
| 1965 | 22 | 73 | 1975 | (1) | 425 |
| 1966 | 2 | 75 | 1977 | (1) | 426 |
| 1967 | 43 | 118 | 1979 | 1 | 427 |
| 1968 | 131 | 249 | 1980 | (1) | 428 |
| 1969 | 21 | 270 | 1987 | 13 | 441 |
| 1970 | 38 | 308 | 1995 | 1 | 442 |

* () 수치는 미확인 사항임

3. 해상납북억류자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1 | 대성호 | '55.5.28 | 김순귀 | 47 | 경기 용진 |
| 2 | " | " | 김장현 | 44 | " |
| 3 | " | " | 박표만 | 41 | 황해 해주 |
| 4 | " | " | 유의택 | 42 | " |
| 5 | " | " | 유장화 | 49 | 경기 용진 |
| 6 | " | " | 윤성우 | 41 | 황해 해주 |
| 7 | " | " | 이산음 | 41 | " |
| 8 | " | " | 정태현 | 41 | " |
| 9 | " | " | 조종일 | 40 | " |
| 10 | " | " | 황득식 | 42 | 경기 용진 |
| 11 | 해룡호 | '57.11.9 | 마승섭 | 44 | 강원 고성 |
| 12 | 덕길호 | '57.11.9 | 김성주 | 48 | 경남 통영 |
| 13 | 명규호 | '58.4.28 | 박동근 | 33 | 전북 남원 |
| 14 | " | " | 홍복동 | 20 | 경기 용진 |
| 15 | 평화호 | '58.4.29 | 김영복 | 20 | 경기 부천 |
| 16 | " | " | 박영근 | 32 | 강원 고성 |
| 17 | 다복호 | '58.4.30 | 김명선 | 47 | 경기 연백 |
| 18 | " | " | 김창현 | 32 | 평북 철산 |
| 19 | 풍영호 | '58.4.30 | 한진용 | 24 | 경기 부천 |
| 20 | 신흥호 | '58.4.30 | 박세운 | 19 | 경기 강화 |
| 21 | 신복2호 | '58.5.14 | 장순중 | 18 | 경남 삼천포 |
| 22 | 신명호 | 58.11.7 | 송상인 | 49 | 함남 |
| 23 | " | " | 송성락 | 52 | 강원 고성 |
| 24 | " | " | 신광필 | 37 | 함남 |
| 25 | 금구호 | '58.11.7 | 박동준 | 49 | " |

| 번호 | 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26 | 금구호 | '58.11.7 | 이용택 | 46 | 함남 |
| 27 | " | " | 허 준 | 45 | " |
| 28 | 어성호 | '58.12.6 | 김범주 | 18 | 강원 고성 |
| 29 | " | " | 김여훈 | 18 | " |
| 30 | 하영호 | '58.12.6 | 김명은 | 46 | 경북 울릉 |
| 31 | " | " | 김윤택 | 34 | 강원 고성 |
| 32 | " | " | 엄광섭 | 46 | 경북 울릉 |
| 33 | 금능호 | '58.12.6 | 김개락 | 28 | 함남 |
| 34 | " | " | 윤승범 | 42 | 강원 홍천 |
| 35 | 광영호 | '58.12.6 | 김원로 | 53 | 강원 고성 |
| 36 | 보승2호 | '64.3.1 | 곽중효 | 36 | " |
| 37 | " | " | 곽형주 | 32 | " |
| 38 | " | " | 권오동 | 34 | " |
| 39 | " | " | 박태길 | 31 | " |
| 40 | " | " | 송은석 | 48 | 미상 |
| 41 | " | " | 이종윤 | 34 | 강원 고성 |
| 42 | " | " | 임귀복 | 47 | " |
| 43 | " | " | 최동길 | 17 | " |
| 44 | " | " | 최문길 | 23 | " |
| 45 | " | " | 최석용 | 43 | " |
| 46 | " | " | 최준수 | 39 | " |
| 47 | 강화호 | '64.7.19 | 박기정 | 26 | 경기 강화 |
| 48 | " | " | 한상준 | 28 | " |
| 49 | 부영호 | '64.7.29 | 문성천 | 38 | 황해 장연 |
| 50 | 신성2호 | '64.10.16 | 김광호 | 22 | 경남 밀양 |
| 51 | " | " | 유한복 | 20 | 경기 평택 |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52 | 광명호 | '65.5.8 | 최동기 | 41 | 경북 |
| 53 | 대영호 | '65.5.31 | 이정웅 | 22 | 경기 용진 |
| 54 | 승리호 | '65.10.29 | 나용열 | 28 | 인천 동구 |
| 55 | " | " | 현근화 | 33 | 강원 |
| 56 | 용복호 | '65.10.29 | 김분임 | 61 | 경기 강화 |
| 57 | " | " | 문정숙 | 25 | " |
| 58 | 용미호 | '65.10.29 | 정영남 | 38 | " |
| 59 | 춘곡호 | '65.11.15 | 정창규 | 35 | 경남 통영 |
| 60 | " | " | 천태옥 | 34 | 경북 영덕 |
| 61 | 명덕호 | '65.11.20 | 김경수 | 18 | 강원 명주 |
| 62 | " | " | 김성만 | 32 | 강원 양양 |
| 63 | " | " | 김장원 | 16 | 강원 속초 |
| 64 | " | " | 김정구 | 19 | 경북 영덕 |
| 65 | " | " | 이병기 | 16 | 강원 고성 |
| 66 | " | " | 이창영 | 18 | 강원 명주 |
| 67 | " | " | 주인복 | 46 | 강원 고성 |
| 68 | " | " | 최영중 | 17 | " |
| 69 | " | " | 한동순 | 26 | 경북 영덕 |
| 70 | 덕삼호 | '65.11.20 | 서봉래 | 43 | 강원 고성 |
| 71 | 대양79호 | '65.11.26 | 김태운 | 50 | 미상 |
| 72 | 행영호 | '65.11.30 | 김종옥 | 28 | 강원 양양 |
| 73 | " | " | 서석민 | 18 | 경남 거제 |
| 74 | 영농호 | '66.1.26 | 황창섭 | 54 | 미상 |
| 75 | 대성호 | '66.6.24 | 박팔만 | 17 | 전남 해남 |
| 76 | 천대11호 | '67.4.12 | 김대곤 | 27 | 경북 경주 |
| 77 | " | " | 김상수 | 30 | 미상 |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78 | 천대11호 | '67.4.12 | 김영일 | 23 | 경남 삼천포 |
| 79 | " | " | 김장훈 | 31 | 경북 경주 |
| 80 | " | " | 김홍일 | 25 | 경남 산청 |
| 81 | " | " | 남북이 | 36 | 경북 영덕 |
| 82 | " | " | 이정식 | 34 | 미상 |
| 83 | " | " | 장길용 | 27 | " |
| 84 | " | " | 장영식 | 33 | " |
| 85 | " | " | 정학명 | 37 | " |
| 86 | " | " | 진정팔 | 26 | 경북 영일 |
| 87 | " | " | 최명환 | 34 | 전남 완도 |
| 88 | " | " | 최종등 | 25 | 경남 거제 |
| 89 | " | " | 최효길 | 29 | 미상 |
| 90 | 창성호 | '67.5.23 | 윤경구 | 18 | 충남 서산 |
| 91 | " | " | 홍승균 | 16 | 충남 태안 |
| 92 | 승용호 | '67.5.28 | 이선일 | 17 | 전북 옥구 |
| 93 | 태영호 | '67.5.29 | 김옥준 | 25 | 충남 서산 |
| 94 | " | " | 최창의 | 19 | 충남 태안 |
| 95 | 풍복호 | '67.6.5 | 문경식 | 16 | 전북 군산 |
| 96 | " | " | 최원모 | 57 | " |
| 97 | 부성3호 | '67.6.15 | 김봉수 | 27 | 서울 용산 |
| 98 | 정진호 | '67.7.22 | 이기출 | 18 | 경북 칠곡 |
| 99 | 어성호 | '67.11.3 | 오원섭 | 41 | 강원 고성 |
| 100 | 거성호 | '67.11.3 | 이진영 | 25 | " |
| 101 | 금윤호 | '67.11.3 | 김자준 | 37 | " |
| 102 | " | " | 박규채 | 36 | 경남 남해 |
| 103 | " | " | 박락선 | 28 | 강원 고성 |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104 | 금윤희 | '67.11.3 | 이창식 | 29 | 강원 고성 |
| 105 | " | " | 이태수 | 32 | 강원 명주 |
| 106 | " | " | 장재천 | 26 | 강원 고성 |
| 107 | 해양호 | '67.11.3 | 김상준 | 23 | 강원 고성 |
| 108 | " | " | 김성재 | 39 | 강원 삼척 |
| 109 | " | " | 마기덕 | 26 | 경남 창원 |
| 110 | " | " | 박능출 | 37 | 경남 거제 |
| 111 | " | " | 홍순권 | 19 | 강원 명주 |
| 112 | 청진호 | '67.12.20 | 김남현 | 27 | 강원 고성 |
| 113 | " | " | 김성호 | 29 | " |
| 114 | " | " | 기양덕 | 29 | " |
| 115 | " | " | 오명복 | 29 | 강원 명주 |
| 116 | " | " | 이정해 | 48 | 강원 속초 |
| 117 | " | " | 이춘식 | 30 | 강원 고성 |
| 118 | 광명호 | '67.12.25 | 한해진 | 40 | 강원 고성 |
| 119 | 경호 | '68.1.6 | 김주철 | 29 | 강원 동해 |
| 120 | 홍익호 | '68.1.6 | 양상을 | 41 | 강원 명주 |
| 121 | 행덕호 | '68.1.11 | 박복택 | 21 | 경남 충무 |
| 122 | 기성호 | '68.3.10 | 서수중 | 27 | 강원 속초 |
| 123 | 창영호 | '68.4.17 | 강명보 | 18 | 경남 통영 |
| 124 | " | " | 김학래 | 26 | 강원 양양 |
| 125 | " | " | 김홍록 | 16 | 강원 고성 |
| 126 | " | " | 이영석 | 18 | 경남 남해 |
| 127 | " | " | 이옥진 | 43 | 전남 여수 |
| 128 | " | " | 이태용 | 49 | 강원 양양 |
| 129 | " | " | 정장백 | 19 | 강원 고성 |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130 | 종진호 | '68.4.27 | 김용봉 | 17 | 강원 고성 |
| 131 | " | " | 윤무출 | 38 | " |
| 132 | " | " | 임규철 | 25 | 강원 강릉 |
| 133 | " | " | 정연태 | 27 | 강원 삼척 |
| 134 | 신진호 | '68.5.9 | 김정일 | 32 | 강원 명주 |
| 135 | " | " | 오성재 | 37 | 서울 성동 |
| 136 | 대성호 | '68.5.23 | 김홍균 | 24 | 강원 명주 |
| 137 | " | " | 임병혁 | 40 | 강원 양양 |
| 138 | " | " | 한기돌 | 14 | 강원 명주 |
| 139 | 춘덕3호 | '68.5.29 | 김재구 | 21 | 전남 목포 |
| 140 | 성운호 | '68.5.29 | 김명학 | 47 | 경북 울진 |
| 141 | " | " | 김수근 | 32 | 경북 영일 |
| 142 | " | " | 박만복 | 43 | 강원 명주 |
| 143 | " | " | 이상원 | 42 | " |
| 144 | " | " | 장창수 | 35 | 강원 강릉 |
| 145 | 순덕호 | '68.6.1 | 공문익 | 37 | 경기 강화 |
| 146 | 부길호 | '68.6.6 | 김경두 | 34 | 전남 여천 |
| 147 | " | " | 김길오 | 32 | 전남 완도 |
| 148 | " | " | 김일오 | 26 | 전남 여천 |
| 149 | " | " | 박명옥 | 16 | " |
| 150 | 영신호 | '68.6.6 | 고주봉 | 30 | 전남 영암 |
| 151 | " | " | 김이배 | 31 | 전남 진도 |
| 152 | " | " | 오판철 | 32 | 전북 장수 |
| 153 | " | " | 최동진 | 20 | 충남 보령 |
| 154 | 덕산호 | '68.6.6 | 고종현 | 21 | 경기 부천 |
| 155 | " | " | 김용길 | 18 | 전남 해남 |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156 | 덕산호 | '68.6.6 | 서종술 | 37 | 경기 부천 |
| 157 | " | " | 이선주 | 26 | 충남 당진 |
| 158 | " | " | 이일남 | 27 | 경기 부천 |
| 159 | 풍년호 | '68.6.8 | 고준수 | 25 | 강원 고성 |
| 160 | " | " | 김병호 | 17 | 경남 김해 |
| 161 | " | " | 김영옥 | 13 | 강원 고성 |
| 162 | " | " | 김용기 | 19 | 경북 예천 |
| 163 | " | " | 신성옥 | 26 | 강원 삼척 |
| 164 | " | " | 박형중 | 15 | 전남 고흥 |
| 165 | " | " | 이운길 | 13 | 강원 고성 |
| 166 | " | " | 전인만 | 15 | " |
| 167 | " | " | 조문호 | 33 | " |
| 168 | " | " | 주재근 | 25 | " |
| 169 | " | " | 최동일 | 26 | 전남 완도 |
| 170 | 영신호 | '68.6.12 | 김도경 | 23 | 전남 목포 |
| 171 | " | " | 서용식 | 27 | 전남 영광 |
| 172 | 해양호 | '68.6.16 | 김광운 | 36 | 경기 부천 |
| 173 | 취영호 | '68.6.17 | 김광근 | 24 | 경기 용진 |
| 174 | " | " | 손은주 | 22 | 경기 부천 |
| 175 | " | " | 손철순 | 19 | 경기 용진 |
| 176 | 복성6호 | '68.6.17 | 김영구 | 21 | 경기 강화 |
| 177 | " | " | 유병춘 | 31 | 인천 동구 |
| 178 | " | " | 홍상표 | 20 | 경기 강화 |
| 179 | 성북2호 | '68.6.21 | 김창현 | 45 | 인천 중구 |
| 180 | " | " | 심광식 | 28 | 전북 군산 |
| 181 | 경흥호 | '68.6.23 | 김진경 | 37 | 경기 용진 |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182 | 경흥호 | '68.6.23 | 오남문 | 30 | 서울 |
| 183 | " | " | 이기준 | 27 | 경기 용진 |
| 184 | " | " | 이일환 | 41 | 인천 중구 |
| 185 | 경북호 | '68.6.29 | 김대만 | 25 | 전남 광주 |
| 186 | " | " | 이상은 | 21 | 경기 강화 |
| 187 | " | " | 차종석 | 22 | 전남 신안 |
| 188 | 금용호 | '68.7.2 | 고종환 | 16 | 북제주 우도 |
| 189 | " | " | 김남호 | 18 | 강원 양양 |
| 190 | " | " | 김명희 | 13 | 경기 가평 |
| 191 | " | " | 김용수 | 15 | 강원 고성 |
| 192 | " | " | 윤능산 | 17 | 북제주 우도 |
| 193 | " | " | 윤두찬 | 39 | 전북 완주 |
| 194 | " | " | 이은권 | 42 | 경남 울산 |
| 195 | " | " | 주영삼 | 17 | 강원 속초 |
| 196 | " | " | 함태천 | 29 | 강원 고성 |
| 197 | 신양호 | '68.7.2 | 곽도상 | 13 | 충북 영동 |
| 198 | " | " | 김용권 | 19 | 경남 통영 |
| 199 | " | " | 박성문 | 25 | 강원 고성 |
| 200 | " | " | 장 면 | 14 | " |
| 201 | " | " | 황두호 | 18 | 전북 남원 |
| 202 | 창명호 | '68.7.2 | 김철규 | 14 | 강원 고성 |
| 203 | " | " | 선우석 | 52 | 서울 성동 |
| 204 | " | " | 이종범 | 47 | 강원 고성 |
| 205 | " | " | 이춘만 | 31 | 서울 성동 |
| 206 | " | " | 유강열 | 32 | 강원 고성 |
| 207 | " | " | 조규영 | 13 | " |

| 번호 | 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208 | 백구17호 | '68.7.4 | 윤귀남 | 21 | 전남 진도 |
| 209 | " | " | 이영철 | 27 | 전남 신안 |
| 210 | 태양호 | '68.7.10 | 김진영 | 48 | 경남 울주 |
| 211 | " | " | 조석원 | 15 | 전북 김제 |
| 212 | 만복호 | '68.7.10 | 강봉운 | 64 | 강원 고성 |
| 213 | " | " | 박홍식 | 17 | 경북 영덕 |
| 214 | " | " | 장진구 | 13 | 강원 고성 |
| 215 | " | " | 최승복 | 13 | " |
| 216 | " | " | 최원수 | 16 | 경북 영일 |
| 217 | 가덕호 | '68.7.10 | 김상운 | 35 | 충북 보은 |
| 218 | " | " | 박종업 | 55 | 강원 고성 |
| 219 | " | " | 이해준 | 34 | 충남 부여 |
| 220 | " | " | 전석구 | 24 | 강원 인제 |
| 221 | 덕성호 | '68.7.12 | 김남국 | 20 | 전남 진도 |
| 222 | " | " | 김춘식 | 26 | 전남 신안 |
| 223 | " | " | 여인억 | 46 | 인천 중구 |
| 224 | " | " | 이양진 | 23 | 전남 신안 |
| 225 | 대복1호 | '68.8.6 | 김재욱 | 47 | 강원 고성 |
| 226 | " | " | 한택선 | 35 | " |
| 227 | " | " | 황명삼 | 25 | 경북 울릉 |
| 228 | 덕수2호 | '68.8.7 | 강명화 | 25 | 경남 남해 |
| 229 | " | " | 김광수 | 25 | " |
| 230 | " | " | 김인철 | 17 | 경남 충무 |
| 231 | " | " | 엄기만 | 12 | 강원 속초 |
| 232 | " | " | 장을선 | 49 | 충북 청주 |
| 233 | " | " | 정한수 | 37 | 경남 진양 |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234 | 용명호 | '68.10.30 | 함기남 | 20 | 강원 고성 |
| 235 | 해진호 | '68.10.30 | 김종우 | 27 | 경북 월성 |
| 236 | 영창호 | '68.10.30 | 김이득 | 22 | 경북 영일 |
| 237 | " | " | 임재동 | 29 | 경남 거제 |
| 238 | " | " | 진기봉 | 22 | 강원 강릉 |
| 239 | 어재호 | '68.10.30 | 전만수 | 27 | 강원 고성 |
| 240 | 양진호 | '68.11.7 | 고순철 | 29 | 강원 명주 |
| 241 | " | " | 이영기 | 22 | " |
| 242 | 동일호 | '68.11.7 | 이태운 | 25 | 경북 영덕 |
| 243 | 해승호 | '68.11.7 | 김동주 | 22 | 강원 명주 |
| 244 | 준호 | '68.11.7 | 문원표 | 46 | " |
| 245 | 원일호 | '68.11.7 | 이기석 | 26 | " |
| 246 | 영덕호 | '68.11.8 | 안수선 | 21 | 경북 영덕 |
| 247 | 수진호 | '68.11.8 | 전도민 | 17 | 강원 양양 |
| 248 | " | " | 정연배 | 42 | 경남 진주 |
| 249 | 풍성호 | '68.11.8 | 김종순 | 22 | 강원 고성 |
| 250 | 신흥2호 | '69.5.1 | 한종남 | 19 | 전남 진도 |
| 251 | 홍덕호 | '69.5.5 | 이광원 | 18 | 전남 신안 |
| 252 | 순호 | '69.5.10 | 이동우 | 27 | 충남 홍성 |
| 253 | " | " | 임판길 | 31 | 전북 옥구 |
| 254 | " | " | 정홍해 | 28 | 충남 보령 |
| 255 | 신성호 | '69.6.10 | 이덕표 | 37 | 충남 서천 |
| 256 | " | " | 정오석 | 30 | 전북 옥구 |
| 257 | " | " | 천문석 | 38 | 전북 부안 |
| 258 | " | " | 최두수 | 35 | 경남 남해 |
| 259 | 봉산21호 | '70.4.29 | 강병일 | 29 | 충남 당진 |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260 | 봉산21호 | '70.4.29 | 김태량 | 27 | 전남 완도 |
| 261 | " | " | 엄승영 | 34 | 경남 울주 |
| 262 | " | " | 정영철 | 15 | 전남 진도 |
| 263 | " | " | 최종을 | 19 | 전남 강진 |
| 264 | 봉산22호 | '70.4.29 | 박휘만 | 22 | 경북 포항 |
| 265 | " | " | 이재근 | 33 | 경남 울산 |
| 266 | " | " | 황석균 | 30 | 충남 태안 |
| 267 | 금강산호 | '70.6.22 | 권혁근 | 33 | 강원 속초 |
| 268 | " | " | 김홍동 | 14 | 강원 정선 |
| 269 | " | " | 오관수 | 28 | 광주 광산 |
| 270 | " | " | 이순봉 | 28 | 경북 울진 |
| 271 | 남일7호 | '70.6.30 | 김일영 | 36 | 경남 마산 |
| 272 | 만복1호 | '70.7.8 | 사명남 | 33 | 경기 용진 |
| 273 | 만복2호 | '70.7.8 | 최상일 | 36 | " |
| 274 | 무진호 | '70.7.8 | 민경신 | 33 | " |
| 275 | " | " | 변호신 | 33 | " |
| 276 | " | " | 장춘빈 | 47 | " |
| 277 | 휘영37호 | '71.1.6 | 김상대 | 28 | 경남 거제 |
| 278 | " | " | 김인천 | 27 | 경기 용진 |
| 279 | " | " | 김창덕 | 19 | 경남 거제 |
| 280 | " | " | 박길운 | 23 | 경남 남해 |
| 281 | " | " | 박동순 | 38 | " |
| 282 | " | " | 박정구 | 34 | 전북 군산 |
| 283 | " | " | 박천향 | 42 | 경남 남해 |
| 284 | " | " | 송옥천 | 29 | " |
| 285 | " | " | 정목살이 | 28 | " |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286 | 휘영37호 | '71.1.6 | 정세울 | 48 | 경남 거제 |
| 287 | " | " | 정완상 | 19 | " |
| 288 | " | " | 황영식 | 50 | " |
| 289 | 창동1호 | '71.5.14 | 김재수 | 26 | 강원 양양 |
| 290 | 해행1호 | '71.12.25 | 강홍기 | 39 | 전남 여천 |
| 291 | " | " | 김봉식 | 32 | 경남 통영 |
| 292 | " | " | 황영천 | 26 | 경기 가평 |
| 293 | 동진호 | '72.1.10 | 김정옥 | 26 | 전남 여천 |
| 294 | 안영35호 | '72.2.4 | 김계홍 | 57 | 전남 완도 |
| 295 | " | " | 김달영 | 36 | " |
| 296 | " | " | 김소웅 | 28 | 부산 영도 |
| 297 | " | " | 김철주 | 39 | 경남 남해 |
| 298 | " | " | 박달모 | 23 | " |
| 299 | " | " | 박장현 | 20 | 전남 여천 |
| 300 | " | " | 신태용 | 27 | 전남 보성 |
| 301 | " | " | 위춘환 | 35 | 전남 완도 |
| 302 | " | " | 이상륙 | 19 | 경북 영풍 |
| 303 | " | " | 이평일 | 44 | 전남 여천 |
| 304 | " | " | 전승철 | 22 | 부산 서대신 |
| 305 | " | " | 정동배 | 18 | 서울 종로 |
| 306 | " | " | 정태갑 | 33 | 경남 남해 |
| 307 | " | " | 최부영 | 19 | " |
| 308 | 안영36호 | '72.2.4 | 공순경 | 41 | " |
| 309 | " | " | 김동식 | 36 | 경북 칠곡 |
| 310 | " | " | 김두선 | 33 | 경남 남해 |
| 311 | " | " | 김석만 | 25 | 전남 보성 |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312 | 안영36호 | '72.2.4 | 김일봉 | 21 | 경남 남해 |
| 313 | " | " | 김임권 | 31 | " |
| 314 | " | " | 김휘남 | 23 | 전남 완도 |
| 315 | " | " | 동병순 | 18 | 경남 남해 |
| 316 | " | " | 배현호 | 29 | " |
| 317 | " | " | 박복만 | 40 | 경남 통영 |
| 318 | " | " | 박상국 | 26 | " |
| 319 | " | " | 이홍섭 | 32 | 경남 남해 |
| 320 | 금해11호 | '72.5.4 | 강여진 | 16 | 경기 용진 |
| 321 | 해영2호 | '72.5.12 | 김순식 | 48 | 경남 김해 |
| 322 | 유풍호 | '72.6.9 | 김정길 | 30 | 강원 명주 |
| 323 | " | " | 남무수 | 32 | 강원 평창 |
| 324 | " | " | 남정열 | 39 | 강원 속초 |
| 325 | " | " | 방승도 | 37 | 경남 창원 |
| 326 | " | " | 배민호 | 48 | 경남 진해 |
| 327 | " | " | 이수석 | 30 | 강원 속초 |
| 328 | " | " | 이원재 | 32 | 전남 해남 |
| 329 | " | " | 임창규 | 19 | 강원 명주 |
| 330 | " | " | 최성현 | 44 | 경북 경주 |
| 331 | 금성3호 | '72.8.14 | 김영식 | 21 | 경남 남해 |
| 332 | " | " | 송래규 | 35 | 경북 영일 |
| 333 | 일진6호 | '72.8.21 | 김대봉 | 31 | " |
| 334 | " | " | 이석룡 | 38 | 경남 거제 |
| 335 | 오대양61호 | '72.12.28 | 김옥률 | 17 | " |
| 336 | " | " | 김용철 | 45 | 경기 수원 |
| 337 | " | " | 김의준 | 25 | 경남 거제 |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남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338 | 오대양61호 | '72.12.28 | 김일만 | 17 | 경남 거제 |
| 339 | " | " | 김종원 | 47 | " |
| 340 | " | " | 김천구 | 39 | " |
| 341 | " | " | 김태준 | 17 | " |
| 342 | " | " | 박두남 | 38 | " |
| 343 | " | " | 박양수 | 14 | " |
| 344 | " | " | 박영석 | 34 | " |
| 345 | " | " | 박영종 | 22 | " |
| 346 | " | " | 박용갑 | 32 | 경남 남해 |
| 347 | " | " | 서석기 | 32 | 경남 거제 |
| 348 | " | " | 이공희 | 20 | 서울 영등포 |
| 349 | " | " | 이재명 | 34 | 경남 거제 |
| 350 | " | " | 최영근 | 49 | " |
| 351 | 오대양62호 | '72.12.28 | 강소동 | 29 | " |
| 352 | " | " | 박두현 | 35 | " |
| 353 | " | " | 서영구 | 38 | 부산 영도 |
| 354 | " | " | 안수영 | 37 | 전북 전주 |
| 355 | " | " | 유경춘 | 45 | 경남 거제 |
| 356 | " | " | 정건목 | 20 | 경남 남해 |
| 357 | " | " | 정도평 | 26 | 경남 거제 |
| 358 | " | " | 정형래 | 20 | " |
| 359 | 신진1호 | '73.7.27 | 김순남 | 25 | 경기 용진 |
| 360 | " | " | 김영희 | 47 | 미상 |
| 361 | " | " | 나기용 | 52 | 경기 용진 |
| 362 | " | " | 서득수 | 37 | 경북 상주 |
| 363 | " | " | 조순래 | 32 | 경기 용진 |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364 | 신진1호 | '73.7.27 | 조인우 | 18 | 경기 용진 |
| 365 | 수원32호 | '74.2.15 | 김근식 | 19 | 전남 진도 |
| 366 | " | " | 김생립 | 49 | " |
| 367 | " | " | 김월근 | 26 | 전남 광주 |
| 368 | " | " | 김용기 | 34 | 전남 진도 |
| 369 | " | " | 김용길 | 18 | 전남 완도 |
| 370 | " | " | 김종관 | 23 | 전남 해도 |
| 371 | " | " | 박경원 | 31 | 전남 진도 |
| 372 | " | " | 송민경 | 53 | 경남 남해 |
| 373 | " | " | 안병진 | 28 | 경북 상주 |
| 374 | " | " | 유용석 | 22 | 전북 완주 |
| 375 | " | " | 이대홍 | 20 | 경북 남해 |
| 376 | " | " | 이성용 | 28 | 전남 영암 |
| 377 | " | " | 이천석 | 28 | 경북 영덕 |
| 378 | " | " | 정유석 | 30 | 전남 고흥 |
| 379 | 수원33호 | '74.2.15 | 고광희 | 34 | 인천 북성 |
| 380 | " | " | 기노석 | 18 | 전남 무안 |
| 381 | " | " | 김용건 | 27 | 경북 군위 |
| 382 | " | " | 김재봉 | 21 | 전남 진도 |
| 383 | " | " | 김중식 | 27 | " |
| 384 | " | " | 김현남 | 24 | " |
| 385 | " | " | 박남주 | 36 | " |
| 386 | " | " | 박종주 | 45 | 인천 남구 |
| 387 | " | " | 백홍선 | 27 | 전남 장흥 |
| 388 | " | " | 임태환 | 44 | 부산 영도 |
| 389 | " | " | 장영환 | 27 | 경기 군포 |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390 | 수원33호 | '74.2.15 | 정중운 | 34 | 전남 진도 |
| 391 | " | " | 최복열 | 33 | " |
| 392 | " | " | 최영철 | 18 | 충남 청양 |
| 393 | 천광호 | '75.8.8 | 김두익 | 45 | 강원 원주 |
| 394 | 통영호 | '77.5.10 | 최장근 | 35 | 경남 충무 |
| 395 | 해왕7호 | '80.1.26 | 김환용 | 22 | 전남 완도 |
| 396 | 동진27호 | '87.1.15 | 강희근 | 35 | 경기 강화 |
| 397 | " | " | 김순근 | 44 | 전남 여수 |
| 398 | " | " | 김상섭 | 35 | 전남 고흥 |
| 399 | " | " | 김영현 | 22 | 부산 진구 |
| 400 | " | " | 노성호 | 25 | 충북 청원 |
| 401 | " | " | 박광현 | 38 | 경남 함양 |
| 402 | " | " | 양용식 | 27 | 전남 담양 |
| 403 | " | " | 임국재 | 32 | 경북 안동 |
| 404 | " | " | 정일남 | 30 | 전남 고흥 |
| 405 | " | " | 진영호 | 26 | 경남 합천 |
| 406 | " | " | 최종석 | 40 | 부산 사하 |
| 407 | " | " | 추영수 | 55 | 인천 동구 |

4. 해군 1-2정 승무원

| 번호 | 어선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408 | 해군 I-2정 | '70.6.5 | 권덕찬 | 22 | 전남 광주 |
| 409 | " | " | 김기강 | 28 | 강원 원주 |
| 410 | " | " | 김태중 | 23 | 경기 평택 |
| 411 | " | " | 도종무 | 22 | 경북 청도 |
| 412 | " | " | 맹길수 | 24 | 전남 해남 |
| 413 | " | " | 문석영 | 23 | 제주 |
| 414 | " | " | 박재수 | 23 | 경남 밀양 |
| 415 | " | " | 서금성 | 22 | 인천 동구 |
| 416 | " | " | 신영훈 | 24 | 서울 중구 |
| 417 | " | " | 이덕주 | 29 | 경남 진양 |
| 418 | " | " | 이재영 | 23 | 전북 정읍 |
| 419 | " | " | 임성우 | 37 | 경북 의성 |
| 420 | " | " | 전해열 | 21 | 경북 청도 |
| 421 | " | " | 정광모 | 23 | 서울 중구 |
| 422 | " | " | 정수일 | 41 | " |
| 423 | " | " | 정원석 | 24 | 부산 서구 |
| 424 | " | " | 조진오 | 23 | 부산 해운대 |
| 425 | " | " | 조태봉 | 34 | 경기 연백 |
| 426 | " | " | 최응호 | 25 | 인천 중구 |
| 427 | " | " | 함영주 | 24 | 서울 중구 |

5. 항공납북억류자

| 번호 | 항공기명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 |
|-----|------|-----------|-----------|----------|--------|
| 428 | KAL | '69.12.11 | 김봉주 | 33 | 충남 아산 |
| 429 | " | " | 성경희 | 28 | 서울 종로 |
| 430 | " | " | 유병화 | 42 | 서울 용산 |
| 431 | " | " | 이동기 | 53 | 강원 강릉 |
| 432 | " | " | 임철수 | 55 | 강원 양구 |
| 433 | " | " | 장기영 | 48 | 서울 종로 |
| 434 | " | " | 정경숙 | 28 | 서울 중구 |
| 435 | " | " | 제헌덕 | 43 | 서울 성북 |
| 436 | " | " | 조육희 | 48 | 경기 평택 |
| 437 | " | " | 최석만 | 42 | 서울 영등포 |
| 438 | " | " | 최정웅 | 32 | 강원 원주 |
| 439 | " | " | 황 원 | 38 | 인천 동구 |

6. 기타

| 번호 | 납북장소 | 납치일 | 납북자 성명 | 당시 연령 | 출생지(주소) |
|-----|-------|----------|-----------|----------|---------|
| 440 | 노르웨이 | '78.4.13 | 고상문 | 29 | 서울 성동 |
| 441 | 오스트리아 | '87.7.20 | 이재환 | 24 | 경남 마산 |
| 442 | 중국 | '95.7.9 | 안승운 | 50 | (서울 구로) |

民族統一研究院 發刊資料 目錄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
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
北亞 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 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
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
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협력이론을 중심으로-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96-27 한·일 안보협력 방안 연구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96-29 한·중 안보협력 방안 연구

<학술회의 총서>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문화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경제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4~1995

95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5~1996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第5卷 2號 (1996.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vol. 5 (1996)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研究(上)

94-02 統一文化研究(下)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96-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6-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북한인권백서 199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